

국제경제법학회 ·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BK21플러스
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공동 학술대회

자유무역협정(FTA)의 현황과 쟁점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2014년 4월 23일(수)13:30~18:00,4월 24일(목)09:00~18:00

장소: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전원 김관음행홀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동아대학교 **BK21** 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사업단

“자유무역협정 (FTA)의 현황과 쟁점”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 2014년 4월 23일~24일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전원 김관음행홀

주최: 국제경제법학회/ 동아대 BK21플러스 국제통상분쟁조정사업단

COLLOQUIUM

전체사회: 김대중 교수 (동아대, 학회 이사)

[2014년 4월23일 (수)]

◆ 13:30 - 15:30 1세션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산업별 영향

發表:

강지혜 (박사과정):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민감품목의 국제입찰 및 표준경쟁

조가혜 (석사과정):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제주 감귤산업의 육성방안

자오쉬 (석사과정): 중한 FTA체제가 중한 가전기업에 미치는 영향

리평 (석사과정): 한중 FTA가 농산물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박상수 (석사과정)/ 박서연(연구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의 대응방안

論評: 이학춘 교수 (동아대)/ 김대중 교수 (동아대)/ 박언경 교수 (경희대)

◆ 16:00 - 18:00 2세션 메가 FTA와 동북아의 미래

發表:

백외숙 (박사과정): 한·미 FTA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전략

김병규 (박사과정): 국제통상에서 미국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과 국제분쟁 잠재성 증가

문기욱 (석사과정): 일본의 TPP 교섭현황 연구와 시사점

하훤나래 (석사과정): 국제상사분쟁조정을 위한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論評: 이학춘 교수 (동아대)/ 김대중 교수 (동아대)/ 강준하 교수 (홍익대)

[2014년 4월 24일 (목)]

◆ 09:00 - 12:00 3세션 통상, 국제거래, 문화의 교차점

發表:

이진환(박사과정): 수입대두의 용도제한에 관한 연구

김미희(박사과정): 국제경제시장의 경쟁력을 겨냥한 지역특산물의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을 위한
사전평가모델 연구

정희영(박사과정): FTA가 한국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미용(석사과정):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최한나(석사과정)/ 최원석(연구교수): 국제거래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와 적용가능성

진옥음(박사과정)/ 이점순(연구원): The Effective Way to achie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論評: 피터 스트로퍼 교수 (동아대)/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

SEMINAR

전체사회: 강준하 교수 (홍익대, 학회 연구이사)

[2014년 4월 24일 (목)]

◆ 14:00 - 14:20 **개회**

개회사 : 김대원 교수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환영사 : 이학춘 교수 (동아대)

포 토 세 셴

◆ 14:20 - 15:50 **1세션**

좌 장: 김채형 교수 (부경대)

제1주제 : FTA체제하의 국가와 기업의 위기관리전략

-한미 FTA를 중심으로-

발 표 자 : 이학춘 교수(동아대)

토 론 자 : 박언경 교수(경희대, 학회 총무이사)

제2주제 : WTO협정과 FTA의 분쟁해결 관할권 경합

발 표 자 : 이길원 교수 (충남대)

토 론 자 : 윤성욱 교수 (동아대)

종 합 토 론

◆ 15:50 - 16:10 Coffee Break

◆ 16:20 - 17:50 **2세션**

좌 장: 김태운 교수 (동의대)

제3주제 : TPP 환경챕터 논의 동향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발 표 자 : 류예리 교수 (경상대, 학회 국제이사)

토 론 자 : 박지현 교수 (영산대, 학회 홍보이사)

제4주제 : Investment Dispute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FTA Era

-Investor State Challenges in NAFTA Chapter 11

발 표 자 : 김대중 교수 (동아대, 학회 홍보이사)

토 론 자 : 오선영 교수 (숭실대, 학회 국제이사)

종 합 토 론

◆ 17:50 - 18:00

폐회

COLLOQUIUM

전체사회:김대중(동아대, 학회이사)

1세션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산업별 영향

연번	발표자	발표주제
1	강지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민감 품목의 국제 입찰 표준 경쟁-----3
2	조가혜	한·중 FTA체결을 대비한 제주도 감귤산업의 육성 방안-----11
3	자오쉬	중·한 FTA체제가 중·한 가전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18
4	리평	한·중 FTA가 양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26
5	박상수/박서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방안-----3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민감 품목의 국제입찰 표준 경쟁

전자정부시스템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bidding standards competition of sensitive products in The
korea-china FTA

Focused on Single window of E-Government system

강지혜

목 차

I. 서론 : 문제제기	V. 결론 및 시사점
II. 자유무역협정(FTA)과 표준 경쟁	참고문헌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입찰 표준화 정책	Abstract
IV. 전자정부시스템 싱글윈도우를 통한 국제입찰 표준경쟁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전자정부시스템의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중심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LED 조명)의 對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 한국의 전자정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입찰 분야의 표준 경쟁 기반을 조성한다면, 한*중 기업의 상호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국제표준 경쟁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만큼, 한국의 강점인 전자정부를 표준으로, 우리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영문초록

In the futur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affect to sensitive items like LED Lights in korea. korean small business of Led Lights are not insufficiently competitive.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are difficult to bid into china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because of high entry barrier. In my view, It's hard to revise law of china government procurement. To put it another way, korea is competitive in E-Government system so It can be competitive in standards competition in The korea-china FTA. Consequently, It comes down to intensify Single window of E-Government System in The korea-china FTA. Single window of E-Government system will contribute to lower the barrier the entry of china government procurement.

주제어: 한*중 FTA, 싱글윈도우, 표준, 전자정부시스템, 국제입찰, 민감 품목, LED조명

I. 서론 : 문제제기

2014년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의 ICT 강국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현재 정보통신기술 경쟁력과 조달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다.

이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조달 협정 시, 전자정부 시스템의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전략을 통한 국제입찰의 표준 경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란 모든 수출입 및 통관 정보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를 하나의 단일기관에 제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동안의 한*중 정부조달 협정에 관한 연구가 정부 조달 법에 집중을 하였다면, 이 논문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통한 국제입찰의 표준 경쟁을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민감 품목(LED 조명)의 국제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의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정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시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판단한다.

II 자유무역협정(FTA)과 표준 경쟁

1. 한*중 표준화 정책 비교 분석

1) 한*중 자국표준의 국제표준화 정책

한국은 현재 KS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 표준화 부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표준 부합화율은 100%에 근접한 만큼, 자국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일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의 매년 국제기술위원회의 의장, 간사직의 활동도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2013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장을 맡게 됐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국제기구 수뇌부로 진출하는 중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¹⁾ 한국과 중국의 ISO 회원가입현황은 비슷하지만, 간사 수 비율을 보면, 한국이 현저히 뒤쳐져있다. 2013년 중국이 ISO 수장을 맡고 의장, 간사 수 비중을 넓히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국제표준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공업규격인 강제인증 CCC²⁾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커서 비관

1) 중국인 ISO도 접수, 中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http://www.ajunews.com/view/20130923000238> 09..Sep 2013

2)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5.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에서 해당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제

세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 산업 표준 규격인 KS를 ISO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상호 연계 네트워크 작업을 진행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표준인 CCC를 강제 인증으로 규격화 하여 국외기업의 중국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제표준 경쟁을 위하여, 기술표준 관련 표준특허 경쟁에 더욱 집중하여 투자하는 상황이다.

2) 전자정부시스템의 국제표준화

중국은 2012년 기준, 전자정부평가 78위, 온라인 참여 평가 24위로 한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중국 전자정부는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자정부평가지수만 보더라도 타 국가에 비하여 뒤쳐지는 상태이다. 현재의 중국의 전자정부 현황을 통해서, 한국은 전자정부 경쟁우위를 통한 표준 경쟁의 선점이 필요하다. 전자정부 수출은 국내 SI(System Integrator)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편의를 높일 수 있고, 정부 부처는 컨설팅 수입과 함께 국제표준을 정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³⁾ 따라서 부처별 전자정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이 전자 통관 시스템 보급을 확대 할수록,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국제 표준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⁴⁾

2. 한*중 FTA 민감 품목(LED조명)의 국제입찰 표준경쟁의 필요성

한*중 FTA 타결 시 민감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LED 조명 산업이다.

LED조명의 경우 수직 계열화가 잘된 대기업 일수록 경쟁력이 있고, LED 조명 공정의 하위 단계에 속하는 세트 조립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재 對 중국 LED 조명 수출입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LED조명의 HS CODE⁵⁾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LED조명은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가진 경우와 핸드폰 등의 악세서리류나 실내등의 경우 기타로 분류한다. 특정기능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LED 조명의 수출입 현황인 9405403000 가로등의 것으로 조회를 한 결과, 對중국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 상황에서, 한*중 FTA 정부조달협정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국은 조달시장이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對 한국 수출은 더욱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對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국내 LED조명 중소기업의 경

품 통관불가는 물론 벌금도 최고 480만원까지 내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CCC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

3) '전자정부시장 경쟁 심해 수출 주춤' 서울신문 2013-11-06 11면

<http://www.seoul.co.kr/news>

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국내 전자정부시스템 중 첫 국제표준 추진

<http://www.etnews.com/news19>, Aug 2013 필자 요약 정리

5)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네이버 지식백과] HS코드 [HS code] (두산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우 더욱 도산될 확률이 높다. 최근 중국 LED 조명 1위 기업인 킹선이 주요 모듈을 한국 파트너사인 디지시스에 공급하고, 디지시스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랜드그룹 유통망을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 진행 중이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킹선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진출을 위한 표준 경쟁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III부에서는 한*중 FTA와 국제입찰 표준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조달분야 예상 쟁점과 국제입찰 표준화 정책에 대하여 제시하겠다.

III. 한*중 FTA와 국제입찰 표준화 정책

1. 한*중 FTA 정부조달분야 예상 쟁점 (광동성 정부조달 법 중심으로)

1장에서는 한국의 LED조명기업의 對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LED조명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정부조달시장에서 LED 조명이 우수 조달제품으로 경쟁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 조달시장에서 LED 조명 품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한 중국 기업의 한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대비한, 국제입찰 표준 경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조달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LED조명이 중국 광동성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경쟁우위가 있다.

그렇다면 한*중 FTA에 따른 광동성 정부조달 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종우(2013)⁶)는 광동성 정부조달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GPA의 규정과의 상이함이다. 광동성의 입법목적은 청렴한 정부조달제도 수립에 따른 정부조달자금 이용 효율의 향상 이외에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사회적 목표실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반면 GPA가 다루는 내용은 국제무역자유화의 확대실시 및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실시 등이다. 둘째, 광동성 정부 조달 최저 한도기준이 쟁점이 되고 있다. 동 기준은 중국이 GPA에 가입한 이후 중국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중국의 정부조달은 외국 다국적 기업에 개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광동성 조달법의 입찰기한이 GPA 규정과 상이하다. 광동성 정부 조달 작업규범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응찰인이 입찰문서 제출을 종지한 날까지 20일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기한요구는 정부조달협정의 40일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한의 요구보다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조달협정 만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광동성 정부조달법과 GPA 규정과의 상이함이 거론된다. GPA 규정에 따르면 파산, 허위보고에 따른 수입, 동 기업의 상도외에 어긋나는 직무태만 및 독직 등에 관하여 동 기업을 배제할 수 있으나, 광동성의 법률책임부문에서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죄질

6) 김종우, "WTO 정부조달제도(GPA)로부터 바라본 중국 정부조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경영법률」, 제23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pp75-79 필자 요약정리

이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허위 및 악의적인 담합, 뇌물수수, 불공정경쟁행위 등의 정형에 부합하는 경우 낙찰 및 거래가 무효 처리된다. 반면 파산, 수입의 허위신고, 세금탈루 등 기업의 정부조달활동자격을 박탈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 된 것이 없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제입찰 표준 경쟁을 위한 기업의 역할

광동성 정부조달법을 통하여 LED 조명의 광동성 진출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관세청 수출입품목 통계자료를 통하여 LED조명 가로등의 對 중국 수출이 상당히 저조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 정부조달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중국의 對 한국 LED 조명 수출이, 한국 정부조달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도출해야하는 성과는, 한*중 상호간 국제입찰 표준 경쟁을 위한, 상호 동등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2장에서는 국제입찰 표준 경쟁을 위한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IV부에서는 정부의 전자정부 싱글윈도우 전략을 통한 국제입찰 표준경쟁에 대하여 제언하겠다.

한국조달연구원의 연구보고서⁷⁾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조달지역의 강제인증을 사전에 취득한다. 광동성 정부조달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광동성을 예로 들자면, 광동성의 경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사회적 목표실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 진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LED조명은 친환경제품이자 에너지절약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표시인증,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이 권장되며, 조명기기류의 강제인증인 CCC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둘째, 한*중 FTA 타결시 관세를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것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중소기업들은 외자기업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제조 혹은 유통을 할 것인지, KOTRA 등에서 시행하는 공동물류센터 및 지사화 사업 등을 통해 유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조달벤더와 합작을 해 유통할 것인지 등의 여러 접근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투자비용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IV. 전자정부시스템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통한 국제입찰 표준경쟁

1. 한*중 전자정부시스템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정책

현재, 한*중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AEO⁸⁾ MRA⁹⁾이다. 중국 전자정부의 중

7) 한국조달연구원 :중국 정부조달시장 물품·기업 및 국내 우수 물품·기업과 비교조사 P157 필자 요약 정리

8) AEO는 화주,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선박, 항공사,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Supply Chain)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한국 AEO 진흥협회 <http://www.aeo.or.kr>

점 목표 중의 하나가 세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중 AEO MRA와 한국 통관시스템인 UNI-PASS 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입찰 표준 경쟁을 제안 할 수 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인, LED조명의 對 중국 국제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협정시, 국제입찰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기관을 설치한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제를 한국만큼 개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중 기업 상호간 국제입찰을 활성화 하기위한, 정보교류를 위한 한*중 전자 조달시스템의 단일창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가 경쟁우위에 있는 만큼 국제입찰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을 공적개발원조(ODA)¹⁰⁾ 또는 각 부처별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한-미 FTA 제17장 정부조달 협정의 경우, 제17.10조에 정부조달 작업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회부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의 검토, 그리고 각 당사국 내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정부조달 협정시 한-미 FTA의 정부조달 작업반 규정과 같이, 국제입찰 싱글윈도우 기관을 통하여 한-중 중소기업의 국제입찰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의 기회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각 지역별로 정부조달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AEO MRA를 통한 각 지역별 세관을 중심으로, 한*중 국제입찰 싱글윈도우(Single Window)기관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우수조달품목인 LED조명의 對 중국 정부조달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우수 조달 벤더와의 협정이 절실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 세관과 연계한 국제입찰 싱글윈도우 체계를 구축할 경우, 한*중 우수조달벤더 발굴이 용이해질 수 있고, 이 기업들이 AEO MRA 인증 기업일 경우 상호간 수출입 통관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에, 한*중 세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입찰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 FTA 협정시, 전자상거래 협정을 통하여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민감품목의 수출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자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 FTA 제15장 전자상거래의 협정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도 전자상거래 협정을 통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관세청의 유니패스 시스템 등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 전자정부와 협력한다면 중소기업의 국제입찰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향후 한-중 FTA 체결 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상호간의 민감품목을 다루는 중소기업의 국제입찰 지원을 위한 한-중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만 살펴보면, 국제입찰을 위한 정보가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

9)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의 AEO제도를 자국의 AEO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AEO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진흥협회 <http://www.aeo.or.kr>

10)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http://www.odakorea.go.kr/ODPage_2012

보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한-중 FTA 정부조달 협정이,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 조건에 부합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한-중 중소기업 지원 구축망을 통하여 한-중 조달벤더 합작투자, 지사화사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국제입찰 활성화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민감 품목으로 예상되는 LED조명의 경우, 기업의 브랜드, 가격, 유통 등의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 및 각 지역별 정부조달 특성에 따른 진입장벽에 대비한 B2G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 경쟁력을 토대로, 한*중 간 전자정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협정을 구축 한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한국 기업의對 중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더불어 정부입장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전자정부 시스템의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정책을 통하여 국제표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의 우수조달품목인 LED조명의 對 중국 정부조달 진출 시, 과연 경쟁우위 품목인지, 경쟁우위 지역이 광동성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결과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해당 수출 품목에 대한 현지정보 교류를 위한, 국내 정부 기관의 분산된 정부조달 정보의 단일창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내 우수조달품목의 중국 정부조달 진출을 위한 정보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피드백이 되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중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또는 각 부처별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 할 경우,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시스템의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체결 자체에 대한 표준 특허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민감 품목인 LED조명의 광동성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예로 들자면, 각 지역별 정부기관과의 세부적인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체결을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1)TBT협정에서의 전자정부 수출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기회로 삼아, 전자정부를 국제표준의 핵심전략으로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정보 통신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표준 경쟁력 분야에서도 선점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1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의무화한 협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참 고 문 헌

-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Vol. 10, No 1, 중앙법학회, 2008
- 김종우, “WTO 정부조달제도(GPA)로부터 바라본 중국 정부조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경영법률」, 23권 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 박주근, “WTO TBT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국제통상연구」, 15권 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0
- 서창배,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한 연구: 개방에 대한 중국내 시각 분석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1,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 성태경, “표준의 국제무역효과에 관한 고찰”, 「西江經濟論集」, Vol.40 No.2,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1
- 심상렬,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연구”, 「관세학회지」, Vol.7 No.1, 한국관세학회, 2006
- 심상렬, 정운세, “u-Trade 시대의 전자무역 표준화 현황과 추진 전략”, 「貿易學會誌(Korea trade review)」, Vol.32 No.5, 한국무역학회, 2007
- 윤성욱,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제표준 경쟁: 한-EU FTA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 장은정, “한·중 FTA 관련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중국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 연구 및 대응 방안 모색”, 「中央法學」, Vol.14 No.3, 중앙법학회, 2012
- 최의현, 추초 “사례조사를 통한 중국 정부조달 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소연구」, Vol.32 No.2,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 손원국, “조명용 LED 시장의 개발현황 및 사업화 동향” 「서울반도체」P24, 2011
- “중국 정부조달시장 물품, 기업 및 국내 우수 물품, 기업과 비교조사” 한국조달연구원, 2013
- <http://www.fnnews.com> 07 Oct., 2013
- <http://www.index.go.kr/potal/main>
- <http://blog.daum.net/ppspr/1750>
- http://www.unece.org/cefact/recommendations/rec33/rec33_ecetrd352_e.pdf
- <http://www.ajunews.com/view/20130923000238> 09., Sep 2013
- <http://www.standard.go.kr/code02>
- <http://www.index.go.kr/potal/main>
- <http://terms.naver.com>
- <http://news.heraldcorp.com> 29., Nob 2013
- <http://www.seoul.co.kr/news>
- <http://www.etnews.com/news19>., Aug 2013
- <http://www.unipass.or.kr>
- <http://www.etnews.com/news> 19., Aug 2013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제주도 감귤산업의 육성방안

조가혜

- I. 문제제기
- II. 한·중 FTA와 감귤수입
- III. 감귤산업의 육성방안과 분쟁조정방안
- IV. 결론

한국농업은 중국과 유사한 구조와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중국 농업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한·중 간 농업무역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은 급증하는 반면, 한국산의 중국 수출은 미약하게 나타나 일방적인 무역현상이 나타났다. FTA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중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은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 증대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귤은 제주지역의 주요산업이다. 만약 감귤을 초민감품목으로 구성하지 않은 채 FTA가 체결된다면 현행 관세로는 감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많은 양의 감귤의 유입이 예상된다. 또한 관련 연구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제주감귤을 초민감품목으로 구성하여 제주도의 주요산업을 보호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감귤과 중국감귤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해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체결을 대비해 기존의 부족한 법제화, 정부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한·중 FTA와 감귤수입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중국은 1970년대 말 이후로 감귤생산에 박차를 가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증하였다.¹⁾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정해성의 정부나 그 아래 정부가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이다. 10월부터 주로 감귤을 출하하고 있지만,²⁾ 2월부터는 감귤이 많이 생산되지 않아 감귤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한국은 제주지역 농가 중 81%가 감귤 재배를 하고 있다.³⁾ 하지만 중국에 비해 감귤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90%이상이 생과로 소비된 것에 비해 2011년의 경우 생과의 비중이 줄고 수출용으로 많이 전환되었다.⁴⁾ 감귤 가격은 집중출하시기(10월에서 2월)에 가격이 내려가며 중국감귤의 출하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1) 김윤식, 「중국 감귤 산업 실태 및 대 한국 수출가능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39-40.
2) 중국사무소, 「중국의 주요 과일 생산 및 무역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7-8.
3) 강봉석, 「FTA에 대비한 제주감귤의 지역 공동브랜드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p77.
4) 한재환·신유선·이미숙·윤종민·김주혜, 「과일 수출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p28.
5) 채운성, 「감귤농가 경영실태 조사와 감귤산업 발전 방안」,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논문, 2013, p18.

FTA체결 시 중국산 감귤의 수입이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한·미 FTA 체결 후 오렌지 관세인하로 인해 감귤가격이 10.4%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중국은 한국보다 감귤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감귤수입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중 FTA중 감귤산업 주요쟁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중 FTA에서 특이한 점은 모델리티 협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차(농산물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진 뒤 2차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초민감품목 선정은 어느 정도 하느냐가 달려있다.⁷⁾ 한·미 FTA의 초민감 선정절차를 서술해보았다. 초민감품목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검토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그리고 한·중·일 FTA 초민감품목 선정절차를 이용하여 서술해 볼 것이다. 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은 부가가치액(또는 생산액), 재배면적, 고용창출효과, 지역집중도, 가격경쟁력, 관세율, 자급률, 관세 철폐 시 피해규모, 교역 가능성(검역 및 교역비중 등)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다. 또한 장기적인 농업발전 방향으로 구조조정 방향, 환경부하 정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민감품목을 한·미 FTA의 경우 선정하였지만, 민감품목은 일반적인 민감품목군으로서 교역 가능성 및 경쟁력, 협상 상대국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⁸⁾ 또한 타국과의 FTA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넣은 점을 예를 들어 감귤의 초민감품목 선정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감귤산업의 육성방안과 분쟁조정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첫 번째는 한·중 FTA에서의 초민감품목 선정이다. 2012년 4월 17일 정부는 농산물분야에서 12개 작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⁹⁾ 감귤은 제주도 농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은 육지의 쌀 생산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허 제외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감귤산업은 농가의 81%를 차지하며 농업조수입의 49%, 경지면적의 35%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국내 겨울철 과일생산량에서도 37%를 차지한다.¹⁰⁾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귤산업은 한국전체의 농업의 입장, 지역농업의 발전 측면에서 보나 한·중 FTA의 감귤의 양허 제외 품목 최순위 지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쌀의 양허 제외와 다수품목의 초민감품목의 지정을 보장받은 적이 있다. 중국도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자국농업의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50개의 품목의 양허제외를 인정받았다.¹¹⁾ 따라서 한·중 FTA에서 초민감 품목의 선정은 품목수와 수입금액 두 기준을 충족해야 협상이 진행 가능함을 인지하여 감귤과 같이 생산규모나 정서적으로 중요한 농산물의 경우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 이용을 서술하였다. 특별 세이프가드(SSG) 제도는 WTO 농산품 협정에 나타나 있으며 세이프가드는 GATT 제 19조의 긴급수입제한제도(SG)와는 다른 개념으로 SG는 보상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SSG에서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아도 관세인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SSG의 활용은 수입규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에 비해서 SSG의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이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도 SSG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 발동할 수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서 적용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제소신청이 쉽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 다른 농산품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반면,

6) 문한필·이현근·박한울,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3, p20-23.
 7) 강승진, 「한·중 FTA 협상과 제주농업의 과제」, 2013, p93.
 8) 이창수·박지현·권오복,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005, p240.
 9) 우리정부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 등 12개 농산물을 개방 제외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지만 중국과의 분협상과정이 남아 있어 FTA 체결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10) 고재모, 「한·중 FTA 감귤 등 주요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지정 당위성」, 2012, p28.
 11) 고재모, 위 논문, p29.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개방을 지연하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SSG 제도를 도입해야한다.¹²⁾ 한·중 양국의 무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규정은, 보상의 기준과 협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보복조치에 대한 기준이나 활용가능성 및 그 한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감귤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당연히 농가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의 수요와 식품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품표시제도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확대되어 왔으며, 기존제도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한 채로 추진되어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몇 가지 제도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저조하며, 표시가 복잡하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산물 표시제도에는 원산지표시, GMO표시, 표준규격, 지리적표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원산지표시¹³⁾의 적용법규는 국내 유통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출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적용법규의 차이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속반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시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점과 노점상과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의 한계가 문제로 나타났다.¹⁴⁾ 이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산 감귤로 둔갑한 중국산 감귤의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해 감귤의 이미지를 저하시켜, 소비자의 신뢰 하락, 감귤 조수입 하락으로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농산물 표시제도의 어려움에서 언급했듯이 재래시장의 수와 노점상의 수에 비해 단속인력은 많이 부족하다. 감귤 유통을 일원화 시켜 감귤을 사고팔 때 원산지증명서를 배부 혹은 바코드 교환방식으로 감귤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귤이력추적제¹⁵⁾를 도입하여 감귤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한·중 FTA 체결 후 중국산 감귤의 유입으로 인한 원산지 신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대비 하여야 한다.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감귤산업 붕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물량에 품질이 향상된 중국산 감귤이 관세 제한 없이 수입될 경우 이것을 막을 길은 없다. 특히 감귤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한다. 저가의 중국산 감귤이 한국에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제주 감귤산업의 생존은 위태로워 질 것이다. 다시 말해 감귤의 초민감품목 선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제외나 초민감품목 지정 등의 사전조치가 없다면 생산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붕괴 혹은 몰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초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은 감귤육성에서는 아직 많이 연구와 관련 규정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

12) 문희정·여명, 「한·중·일 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 규정방향 연구」, 2010, p129.

13) 농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14) 이계임·최지현·김민정,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2009, p25-26

15)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축산물·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발전시킨 제도로, 2005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산물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종자와 재배방법, 원산지, 농약 사용량, 유통 과정 등이 제품의 바코드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쉽게 알 수 있다. 농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민·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력에 문제가 발견되는 농산물은 리콜된다.

하고 있다. 이것은 감귤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소비자들이 다른 과일을 소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감귤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정부의 규정 및 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감귤산업은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관련 규정이나 법을 개선 그리고 농작물 보호를 위해 힘을 쏟아 감귤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탁, 「무역상기술풍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 김종환, 「한·일 FTA상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한근·장동식, 「한·중 간 농업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2013.
- 채윤성, 「감귤농가 경영실태 조사와 감귤산업 발전 방안」,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논문, 2013.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 연합회, 「2012년산 감귤 유통 분석」, 2013.
- 농촌진흥청,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도 대책 17(감귤)」, 2012.
- 이계임·최지현·김민정,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2009.
- 고재모, 「한·중 FTA 감귤 등 주요 농산물의 초민감품목 지정 당위성」, 2012.
- 문한필·이현근·박한울,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3.
- 강승진, 「한·중 FTA 협상과 제주농업의 과제」, 2013.
- 이창수,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005.
- 김윤식, 「중국 감귤 산업 실태 및 대 한국 수출가능성」,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주요 과일 생산 및 무역 동향」, 2013.
- 국제심포지엄, 「동북아 감귤육종현황과 전략」, 2007.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 연합회, 「2012년 감귤 유통 처리 분석」, 2013.
- 문한필·전형진, 「FTA 추진 동향과 한·중 FTA 대응 방안」, 2013.
- 김윤두, 「농축산물의 품목별 국제경쟁력 분석」, 2011.
- 문희정·여명, 「한·중·일 FTA 체결 시 셰이프가드 규정방향 연구」, 2010.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감귤원 재배환경 개선 연구」, 2011.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제주도 감귤산업의 육성방안

2012년 3월 한·중 FTA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현재 10차 회의까지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규모와 대 중 무역에서 수입량을 보면 한·중 FTA체결은 한국의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귤은 제주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81%이상의 농가가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 높은 생산비 그리고 관리시스템의 부족은 더욱더 감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1970년부터 중국의 감귤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감귤산업이 성장하였다. 품종개량과 생산량 급증으로 중국은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감귤은 전문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중국에 비해 감귤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한·중 FTA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감귤과 중국감귤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해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 감귤산업 현황, 중국 감귤 수입이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협상중 한·중 FTA 감귤산업의 주요쟁점을 진단하고, 초민감 품목선정 기준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 시 감귤산업의 육성방안과 분쟁조정방안을 예측하였다. 이 부분에서 초민감품목 선정,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이용,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관련검색어: 한·중 FTA, 제주감귤 육성방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제도, 초민감품목

ABSTRACT

A Study on the fostering industry of Jeju citrus in Preparation for the Korea and China FTA

When the Korea-China FTA started in the first meeting in March 2012, so far there has been 10 meetings and the recent one was held in March 2014. Upon viewing the production scale and import volume of China, having an FTA agreement with China may lead to severe damage on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citrus is a main agriculture of Jeju island, which has been planted by over 81% of farms. But Compared to China, defects such as high production cost and lack of quality system make Jeju lose some of its competitiveness in the citrus industry. From 1970, Chinese citrus productivity began to develop rapidly while citrus market was enlarged considerably. By improving the species of citrus and developing citrus productivity, China gained an edge in the citrus industry. Comparing with China, Jeju's citrus industry lags behind international average level in technologies, materials and studies which means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still weak. Therefore, Jeju's citrus industry needs a systematic improvement to prepare for the Korea - China FTA.

In this paper, we are aiming to seek for a fostering plan on Jeju's citrus industry by using comparison analysis. First,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status of both Korea and China's citrus industries ,as well as the impact of China's citrus import on Jeju citrus industry. Then, It analyzes the main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standards and cases of highly sensitive track. By doing so we can make a forecast of the Korea - China FTA in order to find a fostering plan for Jeju citrus industry and resolutions of trade disputes. Also, there will be a part in this paper that suggests parts to analyze, which are the selection of highly sensitive track, the selection of special safety guard, and the improvement of origin's indicate system.

Key words: Korea-China FTA, Jeju cirtus of fostering plan, highly sensitive track, special safety guard.

중·한 FTA 체제가 중·한 가전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자오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한 FTA에 대한 중국 전자상품의 현황과 한국시장에 수입된 중국산 전자상품의 경쟁력 및 관세구조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중·한 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의 산업고도화 추구하고 그동안 중·한 전자상품 교역에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 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한 FTA의 조속한 협상과 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협상이 아닌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한 간의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증대와 거대한 중국시장에서의 유리한 입지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약산업 분야의 타격과 선진기술 유출,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우려도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이 중·한 FTA를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얻고 균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중심의 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자, 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의 FTA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중국의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서비스, 관세, 중한 FTA, 전자상품, 중국경제

ABSTRACT

Impacts and Countermeasures on China's Electronics Industry
since China-Korea FTA

Based o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rade relations, competitiveness and tariff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We dig out that it imposes great impact on China's high value -added electronic industry while brings opportunity for China's low value-added electronic industry, and then put out some suggestions.

Key words: China -Korea Free Trade Area; Electronics Industry; Trade Specialty Index; Tariff Structure;

I. 서론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정부가 양국 자유무역지구를 만드는 강력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APEC 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한국 대통령 노무현은 경제무역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선언하였다. 중·한 자유무역지구를 빠르게 만드는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2007년 4월 10일에서 11일 까지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한국의 초청을 받아들여 방문할 당시, 중·한 양국 자유무역지구에 대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방안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과 자유무역지구를 만들기 위하여 기초를 다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 대통령 노무현은 양국 투자보호협정이 하루 빨리 진행되는 것에 기대를 걸었고 적극적인 태도와 성의로 양국 자유무역지구연구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국 상품이 한국시장의 문제를 줄이는 방안이 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켰다.

전자산업이 현재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적 산업인 동시에 신흥 산업으로서, 중국 신행 공업화 도로의 진행과정에서 전통산업 군의 개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조와 기술이 향상되는 주도산업이 된다.

한국은 오래 전에 일본의 전자산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발전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보다 높게 평가된다. 중·한 자유무역지구를 만들고 나면 한국의 경쟁우위가 중국의 수출에 대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중국 전자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한 자유무역지구의 성립은 중국 전자산업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국전자산업의 원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구조를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1. 중·한 전자상품 무역현황 분석

중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상품의 생산대국이다. 2006년 중국전자산업의 총생산액은 세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4위를 차지했다. 발전의 속도를 보면, 중국 전자산업 생산액이 세계 전자산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3%에서 2006년 28.72%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 4.7%에서 7.9%로 다소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이 한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입 무역액을 보면, 중·한 양국 전자산업 수입과 수출액은 각자 수·출입 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허나 양국 전자상품 수·출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동태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변동추세가 보인다. 2001년~2006년, 중국 전자상품 수·출입 무역의 비중은 28.06%에서 35.08%로 오르고 있고, 한국의 비중은 29.74에서 27.55%로 낮아지고 있다. 이로부터 전자산업은 아직도 중·한 양국의 생산과 무역의 중견산업인데 비해, 중국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산업구조의 비중은 상승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중견산업의 지위로서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전자산업의 지위는 하강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
1. 渡边利夫.中国制造业的崛起与东亚的回应 经济管理出版社, 2003年版.
 2. 朴键一, 朴光姬, 中韩关系与东北亚经济共同体 中国社会科学院, 2006年版.
 3. 周茂荣, 杜莉, 中国与美国货物贸易互补性的实证研究, 世界经济研究, 2006年第9期, pp49-50.
 4. 李准晔, 金洪起. 中韩贸易结构分析, 中国工业经济, 2002年第2期.

2. 중한 전자상품경쟁력비교

중국이 수출하는 각 종류의 전자상품의 세계시장 TSI 지수를 보면, 2006년, 중국 각 종류의 전자상품 중 컴퓨터의 TSI 지수가 제일 높았다(0.65). 반면, 반도체의 TSI 지수는 제일 낮았다(-0.63). 가정용 설비와 유선통신 설비의 영역에서 중국은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무선통신 설비, 공업설비와 전자 부품 등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동태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2003년~2006년 중국 각 종류의 전자상품의 세계시장 TSI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한 전자상품 양국 TSI 수치를 보면, 2006년 중국은 자정용 설비, 유선통신설비, 공업설비와 컴퓨터측면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선통신설비의 경쟁력은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0.6). 반면, 반도체, 전자부품과 무선통신설비측면의 수출경쟁력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반도체측면에 중국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0.81).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2003년~2006년 중국은 한국보다 반도체측면에서만 수출경쟁력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다른 각 종류의 전자상품은 한국의 수출경쟁력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선통신설비 수출경쟁력은 강한 상승추세를 이어 왔다.

3. 중한 전자상품관세구조비교

중·한 전자상품의 수입관세의 구조에 대해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 문장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수입관세를 이용하여 HS(1992)상품관세의 기초에서 한 급 한 급 위로 상가평균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다. 한국의 관세 데이터는 WTO Integrated Database에서 나온다. 중국의 관세데이터는 중국해관종합정보망에서 나온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수입전자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보편적으로 한국에 비해 높았다. 중국전자상품의 평균수입관세는 9.54%이며, 한국은 5.74%이다.

II. 중국 FTA 를 가맹하는 현황

1. FTA 소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Free Trade Agreement)은 EU, NAFTA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다른 지역경제를 적용한 공동체물결이다. FTA는 WTO의 융통성이 부족한 특성을 보완하는 산물이다. 각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형성을 통하여 각 성원국들은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반해 비 성원국에게는 어느 정도 불공평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2007년 4월 2일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 1대 경제실체로서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과 이익공동체 국가 간의 FTA 회담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FTA를 추진하는 실천가이다.

5. 矣志雄, 从美国市场看“中国制造”的实力-以信息技术产品为中心, 国际经济评论, 2002年第7-8期.
6. 林钰, 中加双边贸易国际竞争力分析与比较, 世界经济研究, 2007年第1期, pp81.
7. 张玉和, 中韩贸易模式的变迁:从互补到竞争, 南京财经大学学报, 2005年第5期.、
8. 毛日晟, 陈敬, 中国工业制品贸易竞争力及结构转型分析, 东部经济评论2004年第2期第2卷.

2001년 11월 10일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장관급 회의에서의 심사와 표결을 통하여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정식적인 세계무역기구 성원이 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중국-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제출하고 실천에 옮겼다. 현재 중국은 FTA를 체결하는 전략의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아세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많은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동시에 호주 등의 국가와도 무역협정의 담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가맹현황

중·한 양국의 산업구조, 시장, 기술 등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국교를 수립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은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제일 중요한 경제협력동반관계가 된다. 중·한 양국 간의 관계는 무역대상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투자대상국이다.”

1992년 한중 국교를 수립한 이래 양국의 경제교류가 신속하게 발전할수록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한국경제가 회복될수록 2002년 양국경제협력은 신속하게 발전해왔다.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무역수출액은 27억 달러에서 695억 달러로 증가했고, 총 수출액은 3.5%에서 2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수출국으로 볼 수 있다.

III. 중-한 전자산업경쟁력현황

중·한은 1992년에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이웃나라로서 문화, 역사적 배경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구조의 접근 및 산업분포의 보완성이 필요하나, 양국 간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은 한국 제일의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제일의 수입국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제 3수출국과 제 2수입국이다.

중·한 양국의 무역액이 끊임없이 오를수록 자부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중·한 양국의 무역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李圭澤(2003)논문에서 귀납한 후,

- 1단계는 1992년 국교 정상화에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까지 그 동안 양국의 간접무역이 직접무역으로 전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의 규모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 2단계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까지 그동안 한국은 심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겪어 왔다. 또한 중국도 경제의 불경기 시기가 존재하였었다. 그래서 양국무역이 정지불변의 상태에 처해 있다.
- 3단계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 성장한 기간까지 한국이 중국에게 비약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양국의 무역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었다. 무역제품구조도 고급적 첨단 기술위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

1. 관세영역(단기영향)

- 수출에 관해서: 중·한 양국의 기술적인 차이가 매우 크지만, FTA가 가격경쟁력이 작은 중

소가전제품이나 가전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된 부속품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가전기업 생산자가 계속해서 중국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가전제품 등 사용된 부속품의 수출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부속품영역에서 가격 우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수입에 관해서: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가격우위가 있는 중국의 저렴한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완성품을 조립한 후 재수입 완성품의 추세도 가속화 되고 있다. 첨단기술 부분에서 보면 많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2. 비관세영역(장기영향)

현재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낮은 부가가치, 노동집약적인 생산단계에 처해 있다. 낮은 가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서의 경쟁우위로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다수의 한국기업과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그중 한국에서 더욱 민감한 부분은 소형가전, 조명시스템과 부속품 등이다.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 국내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적응성이 강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잇달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실업)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시장에서의 외국기업들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제조업 공동화의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의 저렴한 인력자원은 한국 국내전자기업의 생산 공장을 중국 국내시장으로 옮기게 하고, 이것은 한국이 이러한 인력자원과 시장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

1) 중국전자상품의 경쟁력

2006년 09월 15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走向世界的中国电子企业>>의 보고에 의하면 하이얼(海尔)냉장고 등 한국시장에 진출된 중국 가전제품은 가격경쟁우위가 분명하다고 한다.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지수가 100이면, 중국산입식 이문 냉장고는 140, 소형냉장고(250L 이하)는 130, 벽걸이 냉장고(13제곱미터~34제곱미터의 거실)는 120, 소형세탁기(4킬로그램 이하)는 115이다.

중국산 소형냉장고와 세탁기의 품질, 디자인과 기술수준이 한국 상품보다 약간 뒤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만 가지고는 한국시장을 점유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2) 애프터서비스의 분쟁

2004년 중국의 한 대형가전그룹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보도매체와 산업평론가들은 저렴한 중국 상품이 한국 국내회사의 현지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 브랜드가 소형 저가품 가정용 전기 판매 시장에서 판매량이 더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형 자동식기세척기, 다리미, 전기 포트 등을 비롯하여 하이얼(海尔)의 한국지점은 2007년 2월 노트북 컴퓨터 이벤트 행사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9. 李圭泽-中韩贸易问题研究, 亚太经济, 2003年版.

10. FKI, 韩中 FTA 主要行业别影响和对应, 2008年版.

평론가의 분석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를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애프터서비스문제이다. 이것은 중국기업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큰 문제다. 지금은 하이얼(海尔) 한국지점의 직속 애프터서비스 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비해, LG 전자와 삼성전자의 애프터서비스 센터는 120 여개가 위치해있다.

3) 하이얼 “짜구려 중국산? 아니다!”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하이얼’(Haier)은 지난 2004년 처음 한국에 진출했고, 이후에 미니냉장고, 와인 냉장고 등 틈새상품에 주력해왔다. 이 업체는 올 들어 최첨단 영상가전인 중대형 액정표시장치(LCD) TV, 냉난방 겸용 에어컨, 노트북 PC 등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산물, 의류, 완구 등에 이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산’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4. 중국 가전산업현황 및 문제점

중국기업이 원래는 조방경영(粗放经营, 동일한 토지면적에 비교적 적은 원료와 노동력을 투자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경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높이는 경영 방식) 노선으로 걷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및 WTO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집약경영의 노선으로 바꾸고 있다. 집약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의 고효율, 첨단기술 등의 달성에 목표를 두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배경에서 기인하여 중국기업의 구조는 전변하고 있다.

중국의 전자기업은 아직 가공생산의 단계에 있지만, 핵심기술이 없고 관리감독체계가 불건전하여 바로 국제시장을 진출할 준비는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도와 격려에 따라 변화무상한 외부환경에도 중국의 전자기업은 꼭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중국 가전기업의 대책

중국에서 생산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와 전기면도기 등 7종 가전제품이 세계 62개 주요 가전소비 국가와 지역에서 갖는 시장 점유율은 30%이상이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세탁기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1등을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말한 나머지 가전제품 “중국제조”의 시장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한 FTA를 체결한 뒤 중국은 한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 (一) 중국의 저렴한 인력자원을 충분히 이용함.
- (二) 강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배우고 외국 자금을 유치함.
- (三) 연구개발을 중시함.
- (四) 진정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음.
- (五) 한국 국내에 기업을 많이 설립함.
- (六) 중·한 경제의 장점을 서로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함.

IV.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한 경제 및 구조의 보완은 FTA 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현실적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간대를 갖는 생활권으로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웃으로 함께 해 왔다. 앞으로도 중·한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장 신뢰가 두터운 이웃이 되리라 믿는다. 이 논문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중·한 양국 FTA 를 체결할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가전기업의 기술능력이 상대적으로 선진적이지만 미래에 중국 기술이 발전될수록 FTA 를 체결한 다음 중국의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력자원 원가가 낮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강한 가격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 가 중국에 더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차이가 좁아질수록 한국 가전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 FTA 는 각 국가에게 기회이고 도전이다. 중·한 양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와 경제관계는 적당한 개변과 대책이 필요하다.

-
- 11.《中韩 FTA 的建立对我国电子产业的影响及对策》山东行政学院 关威 2008 年
 12. <http://js1440.blog.me/80026736996>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13. 李哲禧中韩两国的经济贸易结构亟待改变, 2010 中韩国际经济论坛(北京)。
 14. 廖小健-廖新年-韩国的 FTA 推动状况和应对战略 2005 年 6 月

참고문헌

1. 渡边利夫.中国制造业的崛起与东亚的回应 经济管理出版社, 2003 年版。
2. 朴健一, 朴光姬, 中韩关系与东北亚经济共同体 中国社会科学院, 2006 年版。
3. 周茂荣, 杜莉, 中国与美国货物贸易互补性的实证研究, 世界经济研究, 2006 年第 9 期, pp49-50.
4. 李准晔, 金洪起. 中韩贸易结构分析, 中国工业经济, 2002 年第 2 期。
5. 于津平, 中国与东亚主要国家和地区间的比较优势与贸易互补性, 世界经济, 2003 年第 5 期。
6. 关志雄, 从美国市场看“中国制造”的实力-以信息技术产品为中心, 国际经济评论, 2002 年第 7-8 期。
7. 林钰, 中加双边贸易国际竞争力分析与比较, 世界经济研究, 2007 年第 1 期, pp81.
8. 张玉和, 中韩贸易模式的变迁:从互补到竞争, 南京财经大学学报, 2005 年第 5 期。
9. 毛日晟, 陈敬, 中国工业制品贸易竞争力及结构转型分析, 东部经济评论, 2004 年第 2 期第 2 卷。
10. 《中韩贸易问题研究》中国与东亚经济合作 2003·口亚太经济 李圭泽
11. 《中韩 FTA 的建立对我国电子产业的影响及对策》山东行政学院 关威 2008 年
12. <http://js1440.blog.me/80026736996>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13. 李哲禧中韩两国的经济贸易结构亟待改变, 2010 中韩国际经济论坛(北京)。
14. 《韩国的 FTA 战略》经济与法律 外交评论 2005 年 10 月 总第 84 期 廖小健, 廖新年
15. 《“한 기업, 한일 FTA 보다 한중 FTA 더 우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설문조사 2010년 3월 10일
16. 《철레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의 변화》KOTRA 통상 전략 팀 지윤정
17. 《한중 FTA 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2009년 12월 한국경영사학회 “허홍호 정운세”
18. 《한·중 FTA 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대외경제 책 연구원 南英淑·李章洙·池晚洙·郑仁教
19. 《중국진출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태분석과 시사점》국 별 조사실 선임연구원 김주영
20. 马树连, 韩美 FTA 的签订 1 对中韩 FTA 的借鉴意义, 东北亚研究, 2007 年第二期。
21. 朴思一, 建立韩中 FTA 对韩中电子产品贸易效果的实证分析, 成均馆大学, 2009 年版。
22. 《国际区域一体化的经济效应分析理论综述》财经政法资讯 2007 年第三期 李欣红
23. 《我国空调、冰箱等六种家电国际市场份额居首位》中国工业报 2006 年
24. 《区域贸易协议与建立中韩自由贸易区》经贸论坛 沈伯明 2005 年 10 月
25. 《孕育中的中韩自由贸易区》中国与世界专论 刘赛力
《中国 FTA 战略中的国际环境合作: 现状、问题与对策》世界经济与政治论坛 2009 年 余振 沈铭辉 吴莹
27.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总理温家宝: 共同谱写中韩经贸合作新篇章——在中韩经济界午餐会上的讲话, 2007 年 4 月 11 日 韩国首尔。
<http://www.fmprc.gov.cn/chn/ziliao/wzzt/wjbzlcfc200704/zxxxxy/t310601.htm>
28. 詹德斌、石华:“中韩经济交往有多深”《环球时报》2007 年 4 月 27 日第 24 版。
29. 王胜今、于潇:“东北亚地区, 建立自由贸易区 FTA 的现状与趋势”《东北亚论坛》2007 年第 4 期, 第 5 页。
30. 隋映辉:“中韩经贸合作与东亚自由贸易区构建”《东北亚论坛》2006 年第 5 期, 第 14 页。

한·중 FTA가 양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The Prospective Effe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of China-Korea FTA

리평

목차

- | | |
|---------|-----------------------------|
| I. 문제제기 | II. 중한FTA의 양국 농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 |
| III.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체결이 임박한 중한 자유 무역협정이 운영되는 시점에서 양국 간의 농업에 미시적·거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중·한 FTA가 체결되면 중·한 양국 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되는 일정분야의 손실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민감한 농업부문은 광범위하게 파장이 미칠 것 이고 이에 대해 양 국가는 농업 수준의 불균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미리 세부적인 운용과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지리적인 조건이 우월하고 농산물 종류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며, 인가와 노동비용의 상대적 우위로 인해 향후 농산물 가격 경쟁력은 한국에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의 우월성으로 이러한 요소에서의 열세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장점을 살린 자유 무역협정의 운용이 성공한다면,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산업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은 장점인 기술과 자본 면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 제품을 중국시장에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잠정적인 농업 경제력이 중국에 비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중·한 FTA 체결에 부정적인 면은 일면 당연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중한 농업의 현황, 농산물 무역의 현황, FTA체결 후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반적인 현황의 제시와 더불어 중국 농산물의 대내적인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한 FTA체결과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rospective economic effects of upcoming China-Korea FTA. In general , the foundation of China-Korea FTA will bring much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However, the process will be difficult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imbalanced volume of the industry between China and Korea: Traditional volume and variety of agricultural industry in China is more competitive than those in Korea. Main problem is that number and volume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far outweigh those of Korea. The large size of China's agricultural sector will likely dominate the agricultural trade of the two countries when tariff elimination initiates. Also, China has strengths in primary products while the high-tech products from Korean are more competitive. However, the perspective that both China and Koran will benefit from China-Korean FTA cannot be easily disregarded. Through the agreement China will be able to raise rate of market share and Korean will be able to sell more hi-tech products in the bigger market. Systemic approaches will be needed to shape a better China-Korea FTA regime.

I. 문제제기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공업화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서 무역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 무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중국도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중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증강하고 국제경제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FTA체결이전부터 양국의 농산품무역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은 농업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농업의 경영규모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분야가 산적해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경지면적의 한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토지에서는 산지면적의 비중이 제일 크고 경지면적이 제일 작다. 한국 통계국의 수치에 의하면 2010년 경지면적은 171.5만 헥타르이고, 농업농가는 1194715여 개이며, 한 농가의 평균면적은 0.14헥타르이다. 현재 농업 경영은 규모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그래서 이 수치는 한국의 규모 면에서 열세로 보이나, 규모효과의 한정을 통해 소규모생산으로도 식량자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한국농업의 식품영역의 자급률은 곡물은 26.2%, 두류는 17.1%로써, 농업대국인 미국(129.4-128.8%)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도 문제는 곡물과 두류측면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야채와 육류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역사적으로도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입국의 근본으로 여겨왔다. 중국농민들의 농업수준은 긴 역사를 통해 향상되어 온 것으로 지금까지도 민간에서 수천 년의 중국노동자들이 정리했던 기상과 천상 등의 정보는 농업수확에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II. 중·한 FTA의 양국농업에 대한 잠정적 영향력 분석

중·한 FTA의 체결은 현재까지 빈번히 발생하였던 중·한 농산품 무역 분쟁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 중·한 농산품 무역 분쟁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국내 농산품시장의 보호에 있다.

한국은 국내농산품시장에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보호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WTO시스템에서 관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되어 있으며, 한국은 다수의 FTA에서 비관세조치로 인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한국은 주로 검증검역표준 등 기술적인 조치에 의지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왔다.

예를 들어 2005년10월, 한국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16종 김치에서 9종은 기생충 알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적발해 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김치 품목은 상당량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2006년10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별집의 위생관리조례를 공포하여 수입된 별집에 대해 한국 측은 수의사의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

도 발생하였다. 다른 예로 2006년12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당면에서 첨가제를 발견하여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의 당면 수입을 중지시켰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중·한 FTA를 체결한다면 상존하는 중·한 무역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무역 분쟁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무역 규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국의 국토면적은 총 경지면적의 절대치가 크고 다양한 농작물 들이 적응하며 잘 자라는 토지가 있는 강점이 있다. 시차의 간격이나 온도차이, 기후, 수원, 풍력 등 자영자원의 차이가 한국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황에서 보이는 강점과 값싼 노동인구와 맞물려 기본적인 농업생산량의 우위를 보여준다.

현재 중국은 농업생산의 기계생산화, 현대관리화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으며 기계화 발전은 그 중급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중국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중국농업의 기계화 수준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반면 중국 농산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의존성 증가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그 결과는 중국농산품가격과 생산량의 안정에 다소 불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각종 지역무역협정의 당위성을 대변하기도 하므로 중·한 FTA의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중한무역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중·한 FTA는 체결이 아니라 체결 후 실행 및 운용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한다. 2010년 9월 28, 29일 북경에서 진행된 제1차 중·한 FTA 정부 간 형의 <양국민감성산업협의> 통하여 양국은 성실하게 중·한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중·한 FTA가 양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양국에 민감한 농업영역부문의 파급효과라고 할 것이다. 중국은 농산품측면에 큰 우세가 있으나 한국은 농업의 과학기술측면에 매우 큰 우세가 있으므로 중·한 FTA를 체결하여 양국의 우세를 상호 절충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1) 李京梅、贾建扩, 中韩建立农产品自由贸易区经济效应分析, 中国海洋大学, 2008 年。
- 2) 矣秋燕、矣春燕、梁成杰, 中韩两国农产品贸易形式分析, 全国贸易经济类 核心期刊, 2007 年15期, 36-37页。
- 3) 宋立杰、王子柱, 中韩农产品贸易现状及其发展前景, 农家之友期刊, 2010 年6月,53-56页。
- 4) 张岸元, 中韩FTA经济效果分析, 中国宏观经济研究所。
- 5) 张建平, 苗子瑜著 中韩双边自由贸易协定: 必要性、可行性和战略步骤 吉林大学出版社
- 6)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http://www.stats.gov.cn>
- 7) 联合国粮食及农业组织<http://www.fao.org>
- 8) 程伟昊, 建立中韩FTA过程中的农产品贸易安排构想, 东北亚论坛, 2008 年5月第3期
- 9) 陈丰龙, 区域生产网络与中韩FTA:基于引力模型的实证研究, China Academic Journal, 2010
- 10) 魏巍、魏超, 中韩FTA的预期宏观经济效应, 山东经济, 2009年5期
- 11) 赵金龙, 中韩自由贸易区的经济成效预测与分析, China Academic Journal
- 12) 车松虎, 中韩FTA争论的焦点分析, 消费导刊, 2010年4月
- 13) 黄鹏、金佑炳, 中韩两国自贸区战略对比及双边自贸区谈判展望, 国际商 务研究, 2010年第5期
- 14) 성한경, 한·중 FTA 거시효과 분석, 2009
- 15) 최용민, 한·중 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 시 고려요인, 2010, 최용민,
- 16) 어명근, 한·중 FTA추진과 농업분야의 예상쟁점, 2009
- 17) 지만수,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08
- 18) 정지원,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2007
- 19) 시빙,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농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9
- 20) 류명명,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09
- 21) 허흥호, 정윤세,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2009
- 22) 韩国贸易协会 <http://www.kita.net>
- 23) 韩国对外经济政策研究院 <http://www.kiep.go.kr>
- 24) 韩国统计局 <http://www.kostat.go.kr/>
- 25) 韩国贸易振兴公社 <http://www.kotra.co.kr>
- 26) 韩国农林水产食品部 <http://www.mifaff.go.kr/>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방안

Countermeasures for Korean Agriculture in Preparation for Korea-China FTA

박상수 / 박서연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현상 등으로 2017년에는 전체 GDP에서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추진으로 농업분야 시장개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EU, 미국 등 농업대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농업에 더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도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이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칠레, 한·미, 한·EU FTA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간의 농산물 교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도적인 일방무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량작물과 채소류, 과일류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일방무역이 나타나고 있고 상황에서 한국은 가공식품 분야에서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와 무역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로 인한 양국 농업분야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중국내에서 확립되지 못한 국내 농업생산체계를 오히려 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농업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한중 FTA협상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농업의 중요 쟁점을 분석하여 어떻게 발전한 것인지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에 대한 영향과 양국 농업의 위상변화, 농업무역의 구조변화 등을 중심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중 농업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I. 서 론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통합화의 추진으로 세계 각 나라의 경제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추진도 그 발전 속도를 더하여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7차례의 협상¹⁾을 거쳐 2013년 9월 중국(웨이팡)에서 열린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하여 1단계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품목협상인 2단계 첫 협상을 2013년 11월 인천에서 진행하여 양국이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양국간 이해가 상충되는 가장 민감한 분야로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이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한.칠레, 한.미, 한.EU FTA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FTA협상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을 협상하기 위해 양국농업의 중요 쟁점을 분석하여 어떻게 발전한 것인지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에 대한 영향과 양국 농업의 위상변화, 농업무역의 구조변화 등을 중심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중 농업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방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II. 한중 양국의 농업구조 및 교역현황

1. 한국 농업인구의 고령화

한국농업은 1990년대에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²⁾ 한국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2.2%까지 감소하고 있고 농지면적도 약 25% 감소하고 있다. 한편 60세 이상 농가의 비중은 1970년의 7.9%에서 2012년에는 46.1%로 증가함으로써 약 5.8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면서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쌀 등 일부 주요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여 1995년도의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율이 94.5%이던 것이 2005년에는 99.1%로 확대되었고, 쌀시장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이 되면 대부분의 품목은 개방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방화 및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 강력한 보호의 틀 속에서 안주했던 한국농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2. 중국농업의 산업화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農業

1) 1차 협상('12.5, 베이징), 2차 협상('12.7, 제주), 3차 협상('12.8, 웨이하이), 4차 협상('12.10, 경주), 5차 협상('13.4, 하얼빈), 6차 협상('13.7, 부산), 7차 협상('13.9, 웨이팡)

2) 1962년 이후 10년간 한국농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다다랐고, 1970년대에는 2.7% 1980년대에는 1.9%, 1990년대에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최근에는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봉영,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안", CS&J인스티튜트, 2007)

産業化가 중국 농업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영세 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 산업화 개념은 시장화, 구역화, 전업화, 규모화, 계열화, 기업화의 6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 중 계열화가 핵심으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각 단계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통합되는 생산계열화를 의미한다.

중국 농업부는 1998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3중 전회에서 농업 산업화가 중국 농업의 당면과제인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정책적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아울러 농업 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개척 능력과 농산물 심층 가공 능력을 갖추고, 대 농민 서비스 제공 및 농민들의 상품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용두기업(龍頭企業; leading enterprise)³⁾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농가' 유형의 생산 계열화를 통한 농업 산업화 발전 전략을 표방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농업 산업화 경영을 통해 분화된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통합하고 농가 토지 도급제의 토대위에서 규모화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3.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

중국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으로부터 현대 농업으로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으며 공업제품과 비교해 볼 때 대다수 농산물은 노동량이 밀집된 상품으로 동일한 한국의 생산품보다 생산자본과 가격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한중 농업 무역은 신속히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한국은 농업무역 수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가공제품으로서 수출비율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농산물은 일정한 기술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비교우위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또한 중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근래 한중 농업무역의 구조변화를 보면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농산물 중 대부분은 가공제품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집약적 생산품으로서 한중간 농업분야 교역에서 무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Ⅲ. 한중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효과

1. 중국 농업의 전망

중국을 지난 30여 년 동안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온 한편 늘어나는 인구를 성공적으로 잘 부양해 왔다. 중국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도 현행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3) 용두기업의 농민들이 가공, 유통과정의 이윤을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①농식품 가공 및 유통업 위주 ②전업화 생산에 종사하는 농가 연계 ③시장개척 및 기술개발 능력 보유 ④농가의 이익공동체 결성 등이다.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농업부문은 계획경제에서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 체제로 이행되어 왔다. 농산물가격은 과거 지방정부에서 결정되었으나 이러한 관행은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다. 중국에는 현재 4,300개가 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며 그 중 950개가 넘는 도매시장이 연 수익 1억 위안(CNY)⁴⁾ 이상을 올리고 있다.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시장정보의 역할의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농림부는 2012년부터 생산자, 도소매에 이르는 가격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⁵⁾

2. 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 FTA 추진이 변화되고 있는 한중 양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인 농산물 수입국으로 한중 FTA는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중국의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산 농산물의 對한국 수출은 추세적인 차원에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對한국 농산물 수출은 한중 FTA의 추진이 아니더라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핵심문제는 중국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한국농업의 생산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은 중국과의 FTA 체결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IV. FTA 활용한 대응방안

1. 시장개방에 대비한 법.제도의 개선

한중 FTA로 인해 양국의 농업분야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법제도와 규범의 정비와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는 농수축산물의 교역과 직결되는 농식품 검역제도에 대한 정비와 활용 강화를 들 수 있다.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고 제고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이나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절차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요구하고 이와 관련되는 수입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제도개선을 위하여 한중 FTA의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숨은 규칙을 찾아내어 이를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국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한국과는 다른 체제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규칙이 많다. 중국은 행정 권력을 활용한 시장장벽인 행정성 장벽과 지방보호주의 장벽, 지방 국영기업의 장벽 등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중 FTA 추진과 더불어 이러한 숨은 규정을 찾아내어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2013년 12월9일 매매기준을 한화 약173억원(1위안=173.40원)

5) 윤병삼, "OECD-FAO 중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2013-2022년)", 세계농업 제15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pp.3~9

2. 한국농업의 구조조정

시장개방은 진전되고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의 힘에 의해 유능한 선진 농가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 60세 이상인 경영주의 65퍼센트는 10년 안에 자연 은퇴하여 선진농가로의 생산 집중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를 맞아 이지역의 고소득 계층 5퍼센트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수출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가 있는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지 등을 대규모 생산 농가에 매도하거나 경영을 이양하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를 낮추어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영농구조를 가급적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기계화 및 자동화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가들이 그들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규모 확대, 품질 고급화, 작목전환 그리고 은퇴 혹은 전직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출은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농수산 식품 수출 총액은 80억 달러로 2007년 38억 달러에서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대중국 농수산 식품 수출은 가공식품이 7억 6천만 달러, 수산물이 3억7000만 달러, 신선 농산물이 1억 5천만 달러로 가공식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로 신선 과실류, 신선 육류, 수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한국간 신선농산물의 가격차이가 큰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중국산과 한국산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식품 제조기술 및 디자인 등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앞선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 대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대비 경쟁력이 뛰어난 가공식품과 신선농작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신선농작물을 원료로 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을 대폭 확대해 가공식품의 수출이 국내생산농가의 수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생산과 가공 및 포장 디자인 등 모든 측면에서 수출상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⁶⁾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13억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충분히 선진농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이 치즈에 맞들이면 우유를 먹기 힘들어질 것이란 수세적 발상에서 벗어나 국내 낙농업자들이 한중 FTA가 발상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좋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정부 보조금은 물류, 수출 지원 등 생산적 보조금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자면 파프리카는 국내에 들여온 지 15년도 안 돼 연간 수출액 1위 농산물이 되었고 선인장도 세계시장을 주름잡는다. 21세기 효자산업이 바로 농업이다.

6) 김혜원, “한중FTA-우리농업의 대응전략은?” 아시아경제, 2013.9.21

4. 농식품의 수출마케팅 전략

우리나라 농식품을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launching)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도시의 수입 농식품 시장 주요 소비층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중국 소비자 농식품 인식조사에 의하면 중국 도시인들의 농식품 구입 빈도가 매일 혹은 2~3일에 한 번 구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87.7%에 달해 1회 소비를 위한 소포장 상품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식품은 중국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가 구매할 확률이 높는데 고소득 소비자의 구매채널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임을 고려할 때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농식품의 대형마트 진입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⁷⁾

한편 우리나라 농식품의 이미지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현재 한국제품과 패션문화 등이 갖고 있는 청결, 안전, 스마트한 이미지를 농식품에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 포장에 성분 및 안정성 관련 표시를 강화하여 공략대상 소비자층의 선호에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소비자는 신선도 재료 및 첨가물의 안정성에 대한 니즈(needs)가 크기 때문에 포장재 성분의 안정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프리미엄 소비형에 해당하는 고객층은 위생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포장 고급화에도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중 FTA에서 가장 민감한 업종은 농업이다. 농업은 한국경제의 개방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에서 자유화 원칙을 농업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보다는 농업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민감한 품목을 선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에 커다란 피해와 손실은 크게 다가올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근본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역할도 한다.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붕괴는 한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 공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중 FTA는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어떤 FTA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무조건적 불이익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판단해선 안 되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중국 13억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해 한중 FTA가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유통과 가공, 관광과 식품까지 더해지는 대표적인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에 IT와 BT를 융합⁸⁾하여 창조경제의 훌륭한 본보기로 만들고 유통비용을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Focus(2013.3월호), 중국 소비자 농식품 인식조사 및 유제품 수입시장 동향 p5~6

8)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의 융합으로서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을 생명체 현상과 접목하여 생물학적인 원리와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IT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응용 IT 기술

줄이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농업 분야도 새로운 경쟁력 갖추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희옥 외4(2009)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 전형진 외2(2011)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문한필, 전형진(2013) “FTA 추진 동향과 한·중 FTA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 손창수 외2(2013) “중국 소비행태와 한국 농식품 수출마케팅 전략” 학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36권
- 윤병삼(2013) “OECD-FAO 중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2013-2022)”, 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2013, 제154호
- 전형진(2013) “중국 농업산업화 정책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2013. 11월호
- 윤병삼(2013) “OECD-FAO 중국 농업의 전망과 과제(2013-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54호
- 전군중(2010) “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곤(2013)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 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 곤, 장동식(2013) “한·중간 농업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CHINA 연구」 제14집
- 아시아경제 기사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서 '양허초안' 교환” 2013.11.22
-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분야별지표/경제/농업
- 농업통계 “한·중 농림축수산물 수출입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 2013 여름호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Focus(2013.3월호), 중국 소비자 농식품 인식조사 및 유제품 수입시장 동향

Countermeasures for Korean Agriculture in Preparation for Korea-China FTA

<ABSTRACT>

Agricultural production of Korea is expected to be reduced to 1.2% of total GDP in 2017 due to decreased productive population and aging phenomenon, while pressure on market opening is higher than ever in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with Korea-China FTA being progressed.

Korea has signed FTAs with major agricultural powers including EU and the USA, and FTA negotiation with China, which is expected to bring more extensive damage to domestic agriculture, is also about to be concluded. Agriculture is one of the areas wher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conflict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and it's the most sensitive area for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which has a comparative disadvantage. It is because China is very close to Korea geographically, it has an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similar to ours, and price competitiveness is high for almost all agricultural products, thus it's highly likely that the impact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opening would be stronger compared to FTAs with Chile, US and EU.

Under these circumstances, one-way trade is dominant from China to Korea in terms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ne-way trade of China prevails in the area of food grain, vegetables and fruits, while Korea is considered to be equipped with certain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he sole area of processed food.

Impact of Korea-China FTA would be very strong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of both countries, considering agricultural structure and trade of them. For China, effective application of Korea-China FTA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ir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which hasn't been established yet domestically, while such FTA might lead to the contrary results in Korea.

Therefore, countermeasures for Korean agriculture will be researched against the rece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impact of Korea-China FTA on the agricultural industry, changes in agricultural status of both countries and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al trad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agriculture of Korea and China and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agricultural issues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reasonable Korea-China FTA negotiation.

COLLOQUIUM

전체사회:김대중(동아대, 학회이사)

2 세션

메가 FTA와 동북아의 미래

연번	발표자	발표주제
1	백외숙	한·미 FTA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전략----43
2	김병규	국제통상에서 미국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과 국제분쟁 잠재성 증가-----51
3	문기욱	일본의 TPP 교섭현황 연구 및 시사점-----59
4	하훤나래	국제상사분쟁조정을 위한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68

한·미 FTA 품목분류와 원산지사후검증 대비전략

- 섬유·의류 분야에 대하여 -

백외숙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섬유·의류분야의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품목분류오류 사례를 분석하여 품목분류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섬유산업은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감한 분야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효자산업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생산기술이 세계5위로 한·미 FTA의 활용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FTA 활용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의 품목분류에 있다. 미 관세청(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사례가 48%를 상회하고 있어 품목분류가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알 수 있다. 특성상 생산 구조가 복잡한 섬유·의류의 품목분류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분야이며 품목분류담당 전문가와 품목분류전문 국제분쟁조정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FTA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원산지검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주요어: 한·미 FTA, 섬유·의류분야, 품목분류오류, 사후원산지검증

목 차

- I. 서론
 - II. 섬유·의류분야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분류기준
 - III. 섬유·의류제품의 품목분류 오류사례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첫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 함)¹⁾를 시작으로 거대·선진 경제권인 EU 및 미국 등 9개의 협정에서 46개국과 동시다발적 FTA가 발효되어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원산지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스파게티 보울 효과”²⁾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FTA는 협정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규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품목에도 협정 마다 원산지규정이 달라 원산지결정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섬유·의류 산업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국의 산업과 무역을 보호하기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검증 방식도 간접검증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섬유·의류 부분을 집중관리 대상(Textile PTI)³⁾으로 선정, 2011년 미관세청 보고서에서 의하면 9개국 165개 공장을 분석한 결과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가 48%로 가장 많으며 국제분쟁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의 섬유·의류 분야의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품목분류오류 사례를 분석하여 품목분류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WTO 원산지위원회에서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자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의 품목분류담당전문가와 품목분류에 관련한 국제분쟁조정전문가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보고서와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섬유·의류분야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분류기준

1.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 한다⁴⁾. 이러한 원산지는 FTA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품의 생산지를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아주 민감한 문제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일반기준과 각각의 해

1)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다.
2) 바그와티(Bhagwati)가 경고한 복수의 FTA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상이한 관세율 및 원산지규정적용이 오히려 무역의 흐름을 저해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3) Textile PTI(Priority Trade Issue)는 전략적 산업보호품목으로 미국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는 분야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해당된다.
4) FTA 관세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 함.

당품목에 적용되는 각칙 “별표”규정인 품목별기준으로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 기준은 완전생산품과 직접운송원칙을 전제하고 원산지재료로 생산해야 하며 불완전생산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별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별표”에서 규정하는 형태로 HS 협약 품목분류표⁵⁾에 따라 일반 주와 부·류·호의 주(Note)를 기준으로 한다.

2. 한·미 FTA의 섬유류제품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기준

섬유류제품의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은 특성상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도 엄격하고 검증 절차도 까다롭다. 원산지결정기준의 미소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공공정기준은 당해제품의 주요한 제조공정이나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역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섬유류의 품목별기준 구조는 실을 만드는 섬유원료부터 모든 공정이 역내산이어야 하는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Rules)과 직물을 만드는 원사부터 역내산으로 모든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s) 그리고 역내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제품으로 공정하고 섬유원료는 역외산을 허용하는 직물기준(Fabric Forward Rules)으로 구분한다.

섬유의 종류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천연섬유는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로 분류하고 인조섬유는 합성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무기질 섬유로 분류한다(국제 원산지정보원 2013).

한·미 FTA의 섬유류는 제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2조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타 FTA에 비해 규정이 더 까다롭다(외교통상부 2011a). 한·미 FTA와 한·칠레 FTA는 의류의 공통 기본원칙으로 원사기준을 채택하여 사를 만드는 공정부터 직물, 제단·봉제 공정까지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EU FTA의 직물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규정되었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가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일반 주해를 요약하면 4단위 세번의 구성 체계로 제11부에 분류 제50류 건, 제51류 울 및 기타 동물성, 제52류 면, 제53류 마 및 기타식물성, 제54류 인조 필라멘트, 제55류 인조 스테이플, 제56류~제59류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제60류 편물로 섬유원료-섬유사-섬유직물의 순으로 분류되며, 제61류 내지 제63류에는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이 분류되고 있다.

Ⅲ. 섬유류제품의 품목분류 오류사례 분석

1. 한·미 FTA 섬유류제품의 품목분류 오류사례 분석

벨벳생산기업 A사는 품명 VELVET(Ground Fabric: 00% Cotton, Pile: Rayon, Width: 58", Dyed Cut)을 HSK 5801.27.2000으로 미국에 계속 수출하였으나 FTA가 발효되면서

5) 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품목별번호’ 또는 ‘신국제 통일상품분류기호’라고 부른다.

컨설팅을 의뢰, 이견이 제시되었다. 동 물품은 면제이지만 파일직물로 HS 규정상 특수직물⁶⁾에 해당되고 파일부분이 레이온⁷⁾으로 인조섬유벨벳으로 판정되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재질 구분에 따른 품목분류의 오류사례로 만일 동 물품이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라면 면제벨벳(HTSUS 5801.27.50)은 기준세 18.30%을 적용하고 인조섬유제벨벳(HTSUS 5801.37.50)은 17.20%적용되어 미국 바이어가 1.10%의 관세를 더 내게 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큰 품목분류 오류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FTA 활용의 핵심 사항이며 사후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3).

품목분류의 오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섬유류제품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며 소재와 용도가 다양하고 재질 및 중량에 따라 HS 품목번호별로 적용 협정세율이 달라서 품목분류로 인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미국 관세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무려 48%에 달했다. 이처럼 원산지증명에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고 한·미 FTA 발효 후의 원산지검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분쟁이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전략이 시급하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과연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제정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2. 한·미 FTA의 섬유류제품분야 원산지검증 대비전략

한·미FTA 원산지규정은 NAFTA 유형의 모델을 따르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율증명 방식으로 유효기간은 4년이다.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섬유류제품은 간접검증방식⁸⁾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FTA에서 섬유류기업의 수출 활용률은 70%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기획재정부(2012)에 따르면 미세관의 사후 원산지검증 요청건수는 129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해당 기업은 첫째,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섬유생산기업 등록’을 완료하여 한다. 둘째,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할 전문가 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⁹⁾를 적극 활용하거나 역량있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은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사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진 품목분류담당 전문가와 국제분쟁에 대비한 분쟁조정전문가¹⁰⁾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가 동시다발로 체결되면서 그로 인한 ‘스파게티 보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비전략이 나오고 있지만 실수출입 기업들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가 않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5801호 해설 (A) 파일직물 참고 함.

7) 관세율표 제54류 주1에서 정의 함.

8) 한·미FTA 협정문 제6.18조 (검증) 조항 및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조항 참고.

9)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 시행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는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10)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1년 'HS 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FTA의 특성상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다관세율과 다원산지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FTA의 특혜원산지규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략적 방안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WTO원산지위원회와 세계관세기구는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려 하지만 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섬유류제품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공정이 복잡하며 소재와 용도가 다양하고 재질 및 중량에 따라 HS품목번호별로 적용 협정세율이 달라서 품목분류로 인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제통상분쟁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어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FTA 활용의 핵심은 품목분류이다. 오류사례에서 보았듯이 섬유류분야의 품목분류는 매우 까다로운 특성으로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분야이며 품목분류담당전문가와 분쟁조정전문가의 양성은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FTA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후원산지검증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품목분류 오류와 관련된 원산지검증사례 및 국제분쟁사례에 대하여 심층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및 연구보고서>

- 관계부처합동(2012), 『한·미 FTA 주요내용』.
- 국제원산지정보원(2013), 『품목분류실무』.
- 김병수(2012), 『FTA 원산지관리론』, 한국학술정보.
- 김의기(2012), 『WTO에서 답하다』, 다른세상.
- 외교통상부(2011a), 『한·미 FTA 협정문 국문본』.
- (2011b), 『한·미 FTA 협정문 영문본』.
- (2011c), 『한·미 FTA 설명자료』.
- 외교통상부(2010a),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
- (2010b), 『원산지 의정서』.
- 윤영호(2009),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 이영달(2012),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4), “섬유패션산업 동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3), “섬유패션산업 동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12), “섬유패션산업 동향”.

<국내논문>

- 강오현·박명섭(2011),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4), 191-216.
- 김만길(2011),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2011-8, 181-208.
- 김석오(2011), “우리나라 FTA 원산지검증사례와 시사점”, 한국관세사회, 통권161호, 19-32.
- 김세영·조국형(2012),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69-91.
- 김희열·곽근재(2012),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4호, 499-522.
- 이명수(2011), “한·미 FTA 발효대비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검증사례연구”, 한국관세사회, 통권160호, 38-49.
- 이영수·권순국(2011),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Vol.49, 493-518.
- 조미진·김민성(2011),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11 NO.20, 3-12.

<국외논문 및 보고서>

- Jeffrey J. Schott(2007),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 Summary Assessm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Number PB07-7.
- Karel De Gucht(2011),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in practice", European Commission for Trade.
- Simon Baier(2011), "The Korea-EU FTA: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Korean and European Competition Law", Yensei Law Journal, Vol.2 No.1, p.39-50.
- Song YeongKwan(2011), "KORUS FTA vs. Korea-EU FTA: Why the Differences?", Korea Economic Institute, May 2011, Vol 6, Number 5.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00,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주요기관 홈페이지>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extile%20Fact%20Sheet%202013>, 2014년 4월 5일 검색.

<http://www.fta.go.kr>, 2014년 3월 20일 검색.

http://kaia.or.kr/board/fta_usa, 2014년 3월 28일 검색.

<http://www.kita.org>, 2014년 4월 3일 검색.

<http://www.kofoti.or.kr>, 2014년 3월 25일 검색.

<http://news.mofat.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479>, 2014년 3월 28일 검색.

<http://www.orgin.or.kr>, 2014년 3월 30일 검색

http://tcc.export.gov/Trade_Agreements/All_Trade_Agreements/NAFTA_Annex_300B_1.asp, 2014년 4월 5일 검색.

http://www.wcoomd.org/en/media/wco-news-magazine/~/_media/8E86989134B34169BBC8DA4FF464824F, 2014년 4월 5일 검색

<http://www.wto.org>, 2014년 4월 2일 검색

ABSTRACT

A Provisional Strategy for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Post Origin Verification and 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 Case of Study for Textile and Apparel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provide a coherent understanding and to discuss effective implication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s commodity classification, which is often regarded as the most incomprehensible concept for a post origin verification i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by analyzing commodity classification-error cases in the practice.

The textile industry is a delicate area which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lives of the public and it has relatively higher custom tariff rate because it can considerably affect the domestic employment creation. Korean technology of textile production is rated as one of top five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utilization of Korea-U.S. FTA has reached 70%. It is speculated that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FTA depends on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ccording to the report from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1), it is the error in those verifications that recorded as above 48%. It i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peculiarity that manufacturing structures are complicated thus it demands a high proficiency in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Therefore, the systematic training program of professionals in association with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is requested in order to maximize the proper utilization of the FTA by offering a concrete, provisional strategy for the post origin verification.

Keywords: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extile-Apparel Industry, Commodity Classification-error, Post Origin Verification

국제통상에서 미국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과 국제분쟁 잠재성 증가

김병규

I. 서론

국제사회에서 국제통상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그만큼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영향력이 전 세계 국가들의 통상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 통상을 주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 없이는 균형적이고 올바른 통상정책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통상 정책이나 조직을 단순히 경제로 한정짓지 않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를 국제통상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변천된 미국의 통상정책 및 미국 정치제도가 통상정책에 깊이 기인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로 인한 국제통상에서 증가될 수 있는 분쟁의 대내외적 원인들을 알아보고 그것의 정치, 경제적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런 분쟁들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자 한다.

II. 역대 국제통상정책과 통상기구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 분석

190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통상조직과 통상기구에서 미국은 정치,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왔다. 미국이 취해 온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공정무역주의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이름만 달리하는 통상정책이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이라는 주 논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다.¹⁾

이런 내용은 국제통상기구인 GATT²⁾로부터 현재의 WTO 까지 미국의 영향력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을 주도하거나 확장시켜왔다. 하지만 통상정책과 통상기구의 설립과 확장도 결국 보호무역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정책도 자국의 경제상향과 여건 그리고 정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무역의 아류라고 이해될 수 있다.³⁾

III. 미국 통상정책의 메커니즘과 조직들의 영향력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따라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제무역의 협상과 수립, 이행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의회는 국제통상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고 그 대신 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감독을 한다.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행정부처는 美무역대표부(USTR), 국가경제자문회의(NEC), 등 대통령 직속기구를 비롯하여,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노동부 등 각 부처가 있다. ⁴⁾

행정부는 대체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국익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상무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업계의 압력으로부터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편 자유무역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도 분명한 것 같다.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통상법이 약화되거나 국내산업을 피해를 보는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⁵⁾

미국 대통령은 통상차원에서 대단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1) 왕상한,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현문사, 2002, pp. 11-14.

2) GATT는 관세에 대해 ①체약국 상호간의 협상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인하고 그 결과를 모든 체약국에게 균등하게 적용하며, ②체약국간에는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3) 정영규, 「국제지역 경제론」, 서울경제경영 2004, pp. 204-218.

4) 김홍률,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2-22: 2002, p.9.

5) 김홍률, 앞의 책, 2002, pp.43-44.

영향력 있는 산업이나 재정적 지원이 큰 집단의 보호무역조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특히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산업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의회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업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입법 제정 위협과 이에 동조하는 일반인들의 정서가 고조될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도 다소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미국 통상정책의 메커니즘과 조직의 연관성을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상정책의 단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최상위 결정자인 대통령부터 최하위 그룹인 소비자까지 미국 통상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이 면밀히 반영된다고 볼 때, 결론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통상정책은 보호주의적 관점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VI. 통상정책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연관성과 통상 분쟁 확산 가능성 증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왜 세계통상시장이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최고 강대국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 해왔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일반 국가와 비교가 불가능한 미국만의 정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의 세계화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패권적 위상을 통하여,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도록 만들었으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장으로 탈바꿈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전 세계에 편재화(遍在) 내지 고정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문화라는 부분은 거친 미국의 정치, 군사, 외교의 틀을 문화라는 고도의 정제된 수단을 통하여 국제 사회 대중들에게 친밀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넷째는 위의 세 가지 기능의 작동을 통해 전 세계가 거시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적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제적 기구, 회의, 제도, 법제가 미국 중심으로 작동되어 왔고 국제사회는 이미 거기에 맞는 국제환경의 틀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미시적 부분으로 네 번째의 요인이 형식적이고 틀(frame)적인 부분이라면 마지막 이유는 미시적 부분으로 구체적인 시스템의 작동을 통하여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실무적 기능의 가동을 이행해 왔기 때문이다.

가. 국가 조직의 특성과 통상정책 메커니즘의 내부 복잡성에 의한 분쟁 증가 원인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그 유지는 대단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복잡한 조직들 간의 연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의회, 로비스트, 업계의 입김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한 내부 복잡성은 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된다.

그것은 첫째,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이성 때문이다. 이런 연방적 국가의 특성은 미국을 구성하는 각 주(州)가 국가 단위의 권위를 소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주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의원 각자가 소유한 막강한 힘만큼 자기가 대표하는 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가 소속한 주(州)의 이익이 최대한의 부합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의원들이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 심하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느슨한 정당과의 관계는 의원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가지역의 이익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정당 이념을 지나치게 추종하여 지역 발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 특유의 정당정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요인은 통상정책과 같이 예민한 분야에서 이익에 대한 더욱 강한 집착성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그 주마다 연고해 있는 그 지역의 대표적 기업들 또는 세계적 기업들 그리고 이익단체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국가 도시의 기업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과 주 의원들의 복잡한 정치 자금에 대한 연결고리는, 각 주 토착 기업들이나 이익단체의 입김을 더욱 막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6) 김홍률, 위의 책(2002), pp.31-33.

7) 최병선,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1999 참조

넷째는 일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합법적 로비스트와 민간 자문 그룹들 같은 배후 세력들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로비스트와 민간 자문 그룹들이 미국 통상정책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중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욱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정치적 특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막강한 대통령제이지만 통상분야에서 의회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이 대통령과 당에 큰 입김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정책의 이런 다양한 대내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국 통상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정책의 변수를 높이며 국제통상시장의 분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⁸⁾

나. 통상 분쟁 잠재성 증대의 포괄적 원인 분석

그렇다면 세계 통상 분쟁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다른 포괄적 원인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포괄적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패권주의 지위의 부재로부터 오는 공백이 그 첫 번째 원인이 된다. 이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던 미국의 급격한 경제적 약화가 미국 중심 일극체제의 진공상태를 만들면서, 통상체제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는 이유에 기인한다. 즉 이런 중심축의 부재는 결정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한 방향으로 리드해가는 리더십이 결여되므로 생기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최근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약화가 역설적으로 각 지역 통상조직의 거대화 내지 단합으로 이어지며 미국이 기존에 가졌던 위상과 충돌하게 되며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증가이다. 이런 좋은 예가 아세안(Asean)그룹과 남미그룹, 그리고 아프리카 그룹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또는 G2에 포함된 중국 또는 미국과 통상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관련업체와 관계자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원인이 또 다른 국제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통상이 갖는 실질적 득실들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일반 국민들의 손익이 더욱 예민하게 부각되면서 업계나 노동자들의 요구나 목소리가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은 그동안 잠재되었던 분쟁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증대될 것이다. 넷째는 정보공유의 양과 질의 가치가 균등해지고 다양화 되면서 국제통상분쟁의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정보독점은 국제통상에 있어 대단히 유리한 영역을 점유하고 특권적 지위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발달은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보공유의 균등화나 평등권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통상분쟁을 자극하거나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통상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으로 이름은 바뀌 왔지만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그 핵심의 논제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현재에 와서 또는 앞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치열한 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V. 국제 통상 분쟁 증가와 그에 대한 대안 및 대응

1. 선진국통상정책의 변수 예측을 위한 시스템적 조직 체계 확대 및 설치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특히 미국을 중심한 선진국들의 통상 분쟁 방어와 공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준비가 미약하거나 국제통상에 있어 불리한 조건들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다각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첫째는 협상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국가적 통상정책의 거시적 관점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통상협상의 결과는 훨씬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약점은 협상 시작 전부터 거시적 관점의 이해보다 당장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득실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추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해를 볼 확률은 증대된다.

둘째는 통상정책결정의 메커니즘부터 협상방법, 동시에 그 나라의 산업구조나 정책, 노동구조, 인구구

8) 김홍률, 위의 책, 2002, p.40.

조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통상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보는 우리 내부의 하드 파워의 상황과 심지어는 남북한 간 통일에서 벌어질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이 부류에서 예측되어야 하며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방법으로는 협상국가들에 대한 대처로 국가군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그 국가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하드파워의 성향 등을 구분하고 미래 그 국가들이 경험하게 될 변수들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그 국가의 산업정책, 차후 인구동향, 자원확보, 노동인구 등을 미리 예상하는 것도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 FTA의 조속한 합의와 지역간 합의체를 통한 집단적 대응 확대

국제통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국가 미국과 유럽과 같은 거대 시장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적인 능력과 대응만으로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분쟁을 담당하는 WTO 내에서도 분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WTO 내에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의 도입을 제시하거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보다 균형적인 다자무역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만큼 통상정책의 역사나, 제도, 법제도, 국제통상기구에서 인력 배분이나 역할에 있어서 개도국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 있어 통상분쟁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제통상조직을 구성하는 인력면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인재풀은 턱없이 미약한 상황이다.⁹⁾

이런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간 통상조직의 연계와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연대적 모색은 거대 시장으로 간주되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역과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며 한국 통상분쟁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최고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조속한 FTA 합의와 동반적인 분쟁 대응은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 분석된다.

중국은 G2 국가로 일본을 누르고 지금은 세계 무역에 있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다방면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남북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세계 최고의 통상국가로 부상된 상황에서 한국과 지리, 문화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활용과 관계는 한국 통상에 큰 이익과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3. 민간 참여 확대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확대 추진

FTA 협상 시 시민사회의 참여는 한 나라의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FTA 협상 전부터 비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민간의 참여와 자문을 제도화하는 사례는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우리나라 역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¹⁰⁾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국제통상분쟁 대응은 관이 주도가 되는 제한적이며, 단편적 대응에 그쳤다. 또한 국제통상에 있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업계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국제통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마저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같이 정부로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적 조직의 부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적 제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 업계, 노동계, 로비스트, 보좌관, 의회로 연결되는 채널의 조직 체계의 미약성과 관과 민간인(업계나 노동계, 소비자) 간의 불신적 요소들이 팽대화 되어 있는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9) 서진교 외,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05, 2008. p.43.

10) 김정곤 외,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자료 11-19, 2011, p.155.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 민간 참여부문에서 업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는 대단히 적극적이며 통상정책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로비스트의 역할인데, 로비스트는 미국에서 합법적이며 다양한 정책의 정부와 민간 간 충분한 고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의원들이나, 행정부관료들, 또는 보좌관들을 교육시키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민의 단절이 심하며, 정부, 업계 노동계의 불신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풍토는 정부가 통상협상 시 제대로 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상 후에도 휴유증이 대단히 오래 남게 된다. 또한 업계와 노동계의 불신은 통상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로 변질되며 다른 중소기업체들은 낙오되거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관 반민의 관과 민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통상협력체가 필요하며, 정부에도 과감하게 현장의 내용을 전달한 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통상정책을 세울 때, 미국처럼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VI. 결론

통상의 역사에서 보면 미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기구의 역할과 권한도 달라졌다. 하지만 미국은 항상 자국의 절대적 국익과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유지해왔다. 그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적 시스템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그런 기반의 하위 도구인 법제, 국제기구, 언어, 제도와 같은 다양한 기제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식 국제통상을 대변하고 일방화하며 압박하는 요인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약화되며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시스템에 있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요인들은 미국의 통상정책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동시에 다양한 정보의 공유 및 확보는 새로운 신흥강대국들과 그 외 중·소국가들 간의 충돌도 불가피하게 만들고, 다양한 통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한국의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며 그것은 협상 국가들의 하드파워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올바른 중국의 활용과 민간인이나 기구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문초록

국제통상에서 미국, 정치, 경제, 외교의 영향력과 국제분쟁 잠재성 증가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위상은 높아졌고, 그 위상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제통상에 있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상정책을 운영해왔다. 미국은 초기, 보호무역주의를 통하여 국제통상을 주도했으나 이후 자유무역, 그리고 공정무역으로 변천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의 핵심인 자국보호라는 명분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조직이나 기구에게도 일률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미국이 주도가 되는 또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 이익에 철저히 몰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미국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그 첫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나 국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통상정책에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이지만,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수성과 각 주가 갖는 국가차원의 권위는 현장의 의견들이 미국의 통상 정책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각 주의 대표되는 세계적 기업의 엄청난 로비력과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로비스트 제도 기업관계자나 노동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입이 미국 통상정책을 주도하는 주 세력이라는 이유에 기인한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미국의 경제 약화는 국제통상시장에서 다양한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단국체제 미국의 위상의 급격한 추락이 그 원인이고, 둘째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정보기재의 발달로 인한 각종 정보의 균일적이고 평등적 확산에 기인한다. 셋째는 개도국들과 일반국가의 현장의 목소리들, 즉 산업계나 노동계의 위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개도국들과 일반 국가의 국민들이 느끼는 통상정책의 득실이 더욱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이전 미국을 중심한 선진국들의 주 무대가 되었던 국제통상에서 개도국들과 일반 국가들 간의 통상분쟁을 더욱 가속화 하거나 증대하는 원인을 만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국제 통상분쟁의 확산을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활용하는 로비스트제도의 도입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나라 통상정책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민간의 단절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관반민의 적극적 조직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정책의 중심이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경제적 약화는 국제통상분쟁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며 확대시키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기인하고 다양한 정보의 국제적 확대에 기인하며 개도국들과 일반 국가들의 노동계와 기업들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일반 국민들이 통상정책으로 나타난 각종 득실을 더욱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도 이런 국제통상분쟁에 대비하여 거기에 맞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Diplomatic Influence of the USA and Subtl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fter 1st War, position of the USA got higher and status of the USA increased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Specially, after 1st world war until current time, on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USA thoroughly applied centered on benefit of own country. After 1st world war, the USA have been applied protectionism to the international trade, and even the policy of international trade were changed by free and fair trade, however, protectionism policy of the USA was kept firmly under protection and benefit of own country. Protectionism policy of the USA was utilized same way like their policy to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Namely,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were consequently controlled under coincide of benefit of the USA.

The reason why the USA to adhere to benefit of own country, first of all, it results from mechanism of trade policy of the USA.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decided and led its policy of trade by government and people are usually follow to nation's trade policy passively. However, the USA had different system as a federal country, each states had power like nation and different suggestions of voices for trade policy of each states are strongly reflected to nation's trade policy. it is because global enterprises, the labor world, and lobbyist have been interfering to the USA's trade policy vastly.

However, a lot of debt and weakened of the USA economy possibly make mor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in global market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The reasons of dispute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sudden status drop of the US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econd, it results from equal information's share and expansion by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ystem(sns), third, the voices and demands the labor and the industrial world of developing countries are expanded and diversified. Fourth, profits and losses to people of each nations are generalized and manifested.

Consequently, these factors should made more disputable situation between advanced and developing nations. Based on upper content, Korea need to prepare against international trade dispute, particularly, Korea need to research on lobbyist system of the USA and to set up the Korean style lobbyist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in Korea, on trade policy of nation, the industrial and labor world's opinion could not reflected to nation's trade policy because all trade was led by government, so Korea needs to set up more efficient organization which could connect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As a result, after 1st world war, trade policy of the USA was pivotal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ntrolled by the USA. However, sudden weakened economy of the USA offer higher possibility to occur mor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in global market. Because of complex mechanism of the USA's trade policy decision, opinion expansion of the industrial and labor world of developing nations, generalization of gains and losses of developing nations and generalization of information which dominated by advanced nation. Based on these reasons, Korea need to prepare more aggressively and positively against international trade dispute.

참고문헌

- 김정곤 외, 2011,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1-19, p.155.
- 김석우, 1998,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한올아카데미, pp. 16-17.
- 담비사 모요(김종수 옮김), 2011, 「미국이 파산하는 날」, 중앙books.
- 리처드 피트 외, 2007, 「불경한 삼위일체: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삼인사, pp. 318-320.
- 박찬옥, 1994,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 미국학17집, 서울대학교
- 서진교 외, 2008,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05, p.43.
- 왕상한, 2002, 「미국 통상법의 허용과 실체」, 현문사, pp. 11-14.
- 여택동 외, 1998, 「WTO와 국제통상」, 을곡출판사, p.21.
- 이호열, 1996,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자들」, 전경련, No. 375, pp. 58-61
- 정영규, 2004, 「국제지역 경제론」,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pp. 204-218.
- 장효상, 1996, 「국제통상법」, 법영사, pp. 21-23.
- 한주섭, 1995, 「WTO분쟁해결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논총 Vol.2, pp. 8-10.
- 최병선, 1999, 「무역정치경제론」, 박영사
- NIC(미국국가정보위원회), 이미숙 외 옮김, 2013,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미래 예측 보고서」
- Arthur M. Schlesinger, Jr., "The Crisis of the Old Order, 1919-1933, pp. 105-106.
- Bary Eichengree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mmt-Hawley Tariff," Research
- Edward S. Kaplan & Thomas W. Ryley, "Prelude to Trade Wars: American Tariff Policy, 1890-1922, pp. 95-130. in Economy History 12, pp. 105-106.
- Franklin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p. 224-225.
- I. M. Destler, "American Trade Politics: System under Street, pp. 219-221.
- Jeffrey A. Frieden and David Lak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rd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1.
- James M. Lindsay, "Trade Sanctions as Policy Instruments: A Re-Examin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0, No.2, 1986, pp. 153-173.
- Judith Goldstein,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1, 1988, pp. 179-218. and "The Impact of Ideas on Trade Policy: The Origins of U.S.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Poli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3, No.1, 1989, pp.31-71.
- John A. Garraty, "The Great Depression" pp. 21-23.
- Joseph M. Jones, "Tariff Retaliation: Repercussions of the Hawley-Smoot Bill, pp.
- John H. Jackson, "Dumping in international Trade: its Meaning and Context,"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pp. 3-5.
- Paul Freedenberg, "The 1988 Omnibus Trade Bill: Issues and Perspectives," Brigham Young U. L. Reo., 1989. pp. 365-368.
- Patrick Low, "Trading Free: The GATT and U.S. Trade Policy, pp. 195-196.

www.usitc.gov

www.dcinside.com

일본의 TPP 교섭현황 연구 및 시사점

문기욱

[목차]

- I. 서론
- II. 일본의 TPP 협정 교섭현황
- III. 일본은 왜 TPP 교섭에 참여했을까?
- IV. TPP 참가의 장·단점
- V. 결론

[요약]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의 불황과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사회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큰 상실감을 가져다주었고, 재난 극복 과정에서 세계와의 상호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경제면에서의 타격을 조기에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강조되었다. 장기간의 내수침체, 거대한 재정적자,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본격적인 도래 등 산적한 현안들을 일본은 앞으로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야 한다. 경제를 회복, 발전시켜 국가의 활력을 회복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지위의 상대적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에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TPP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전략으로 채택되어 국정의 주요과제로 주목되기 시작했으며, 참여 여부를 놓고서는 폭넓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TPP 교섭 참여 여부는 일본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 일본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으로 논란의 표적이 되어 왔고 2014년 4월 현재 일본은 관계 11개국과 함께 공식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

TPP 교섭 참여를 결정한 첫 번째 이유로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성장 저해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들 수가 있겠다. 둘째는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이다. 외교·안보 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미국이 TPP 협상을 주도하며「중국 따돌리기」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이상, 우방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함께 교섭에 참여하여 지역 경제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 중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국제정치적 요인도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본 소논문에서는 애증의 이웃나라 일본의 TPP 교섭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TPP를 둘러싼 현재까지의 경위와 협상과정은 주로 미·일 간의 협상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일본에 자극 받은 우리나라도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고, 2014년 4월 현재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12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일본의 예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 TPP, FTA, EPA, 미일동맹, 중국경제, 국제통상

ABSTRACT

Long recess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at occurred on March 11, 2011 not only brought a big economic hardship to Japan but also emphasized to strengthen mutual partner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disaster. Japan has to overcome domestic long-term recession, huge budget deficits, low birth rate and fully aged society issues from now on. It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struggle against economic hardship and restore the vitality of the country which is increasingly losing its relativ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PP is an extension of the Japanese economy growth strategy. It was adopted by the government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Consequently it gave rise to national attention, whether to participate in TPP negotiation or not. Japan's TPP negotiation with 11 countries in various 24 fields can affect the future of Japan a lot. It has been major controversial issu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 participating in TPP negotiation.

The first reason for Japan to participate in TPP negotiation is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energy of rapidly growing Asia-Pacific region. Japan was aware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Asia-Pacific region to overcome current barriers to the Japanese economy and society. Second, from the na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it is reasonable and effective strategy for Japan to cooperate with the US which is a big diplomatic partner and build a new frame. In terms of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quire closer relationship in pursuing their "China bashing" diplomatic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is already a rival with the US and is expected to strengthen its political, economic power and be potential enemy to US-Japan alliance in the future.

Taking into account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reviews Japan's TPP negotiation process and we will have a couple of implications from its experiences. The focus will be mainly the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because these two countries' economic influences are overwhelming among 12 countries that are participating TPP negotiation.

In November 2013 Korea also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PP negotiation. Up to the present, Korea did not confirm its official intent. However Korea's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12 countries are underway and it is still considering merits and demerits of participating in TPP in the near future. Thus, I hope this paper will be an good example for Korea's future promotion of a big national project, TPP negotiation.

I. 서론

미국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필두로 무역·투자에 관한 장벽을 포괄적으로 제거하고, 상호 경제동반자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교섭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의 불황으로 2010년 일본은 40년 가까이 지켜왔던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고, 설상가상으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사회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큰 상실감을 가져다주었다.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인들은 일본경제가 얼마나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재난 극복과정에서도 세계와의 상호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역·투자, 경제면에서의 타격을 조기에 복구하고자 하는 국내 의견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장기간의 내수침체, 거대한 재정적자,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의 본격적인 도래 등 산적한 현안들을 일본은 앞으로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야 한다. 경제를 회복, 발전시켜 국가의 활력을 다시 찾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지위의 상대적 하락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일본의 미래에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그 중 TPP도 일본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전략으로 채택되어 국정의 주요과제로 주목되기 시작했으며, 참여 여부를 놓고 국회의원, 관계 각 산업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¹⁾ TPP 참여 여부는 일본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 일본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으로 논란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2014년 4월 현재 일본은 관계 11개국과 함께 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 소논문에서는 우선 근래 일본 통상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TPP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참여는 기존의 TPP 교섭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TPP를 둘러싼 현재까지의 경위와 교섭 과정은 주로 미-일 간의 교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지만 시장개방과 같이 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이슈에 있어서도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일본산업의 특성 상 농업 분야에서의 반발이 크나, 일본정부는 각 이해단체들과의 감정적인 대립 보다는 올바른 분석과 정보를 토대로 국익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내조정과 국제협상을 병행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TPP 교섭 참여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통상정책에도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고, 2014년 4월 현재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일본의 예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PP는 일본의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일본의 정치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는 깊이 다루지는 않고 차기 논문으로 미루고자 한다.

II. 일본의 TPP 협정 교섭 현황

1) 아베 자민당정부는 2013년 3월 15일 TPP 참여를 공식선언하였으나 그 이전인 2월 14일 자민당은 교섭참가 판단 기준 6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2)자유무역의 이념에 반대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3)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 (4)먹을거리의 안전·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5)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S 조항은 삽입하지 않는다. (6)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특질 상,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통상협안이 충분한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알맹이 없이 형식에 치우치고 애매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일본식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사무라이 식 힘의 논리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특히 협상 문화와 태도가 상이한 미국과의 대결에서 얼마만큼 상대의 신뢰를 얻어 가며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에 의해 크게 성장해 왔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그 뒤를 이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한계를 노출,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최근 통상의 틀은 양자 간 혹은 지역 간의 협상이 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 (EU)과 환태평양무역투자협정 (TTIP)³⁾을 협상 중이며, 일본도 한중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 지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일본은 12개국 1개 지역과 EPA⁴⁾를 발효하였으며, 5개국 5개 지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터키와는 교섭 개시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처럼 양자 간 혹은 지역 간의 협상이 축을 이루는 이유는, WTO 협상 보다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웃나라들과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여 보다 높은 레벨의 통합 (deeper integration)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⁵⁾ 일본의 EPA의 특징은 상대국보다 자유화 비율 (무관세화 비율)이 낮다는 데 있다. 보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선진국 측의 자유화 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가 관찰되는 곳이 많다.⁶⁾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맺은 FTA(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소위「P4」, 2006년 발효⁷⁾)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5개국이 더해져 총 9개국에서 먼저 협상이 시작되었다.⁸⁾ 그 후, 멕시코, 캐나다와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여 현재는 12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높은 자유화를 목표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7월 회의부터 참석했다.⁹⁾ TPP는「FTA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물품시장 접근(물품관세 철폐나 삭감)이나 서비스무역 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투자, 경쟁, 지적재산, 정부조달 등)에 대한 룰 정립 이외에 새로운 분야(환경, 노동,「분야 횡단적 사항」등)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국들은 21개 분야, 24 항목에 대해 각각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높은 레벨의 무역투자 룰 정립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TPP는 원래 그 성격상 해외수출을 주로 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수출형 산업에는 유리하고, 해외로부터 값싸고 경쟁력 있는 수입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는 대단히 불리한 구조이다.¹⁰⁾ 따라서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농업관계자들의 비판도 주로 수출형 산업과 농업을 대립 축으로 놓고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2)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 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가 상징적인 예이다.
 3) 2013년 2월 13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식으로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 개시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4) 일본은 FTA 보다는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FTA가 관세인하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EPA는 여기에 투자, 노동이동, 지적재산의 보호나 경쟁정책에 관한 룰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포함하는 더 넓은 무역협정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TPP의 교섭 분야는 일본의 EPA 대상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일본의 EPA로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는 환경, 노동, 분야 횡단적 사항 등이다.
 5) 伊藤 (2012)
 6) 石川 (pp.8-9)
 7) P4의 발효는 2006년 5월에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2006년 7월에 브루나이, 2006년 11월에 칠레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8) 2010년 3월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의 4개국이, 2010년 10월에 말레이시아가 각각 교섭에 참가하였다.
 9)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국에 '관심 표명 → 예비 양자협의 → 참여 선언 → 공식 양자협의 → 기존 참여국의 승인 → 국회 보고 → 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가입 절차를 밟으면 TPP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4월 현재 한국은 TPP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10)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도 이 구조는 동일하다.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TPP에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섭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논과 의견 수렴을 통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4년 4월 현재 가장 중요한 관세 분야에서 여러 TPP 참가국들은 미일 간의 합의 수준이 TPP 전체의 자유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¹¹⁾ 현재까지 관세철폐를 둘러싼 미일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¹²⁾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 특별히 민감한 농축산물의 관세에 대해 미일 간의 인식의 차는 여전히 크다. 자유무역협정 교섭에 있어 보통 농축산물은「민감품목¹³⁾」으로 취급된다. TPP 협상의 최대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 농축산물의 관세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쇠고기 수입관세를 한자리수 %까지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간의 협의는 물밑 흥정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¹⁴⁾ 쇠고기는 돼지고기, 쌀¹⁵⁾, 설탕 등과 함께 일본이 국내정치 상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성역」중의 하나이다. 한편 자동차에서는 공수가 바뀐다. 일본도 미국이 일본차에 부과하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조속히 없애도록 요구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철폐할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큰 불만이다.

일본은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 교섭에서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다수의 예외품목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¹⁶⁾ 농산물 분야 교섭에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일본이 얻을 수도 있었던 양보를 협상국으로부터 얻어 내기가 아주 곤란했다. EPA를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아직도 많다.¹⁷⁾

TTP는 2014년 4월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가 가까워져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워진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TPP 협정안의 국회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안의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한다면 2014년 4월이 데드라인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각국이 완고한 태도를 관철하면 협상은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TPP 협상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일하여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2014년 4월 하순 전환점을 맞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14년 3월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을 둘러싼 미일 간의 관세협약에 대해 4월 하순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자 교감을 나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⁸⁾

11) 현재 TPP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의 총 GDP 합계에서 미국, 일본의 GDP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56.6%, 22.1%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 TTP를 사실상의 미일 FTA라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일본은 경제규모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강한 발언권을 TPP 교섭에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日本外務省」<<http://www.mofa.go.jp/mofaj/files/000022863.pdf>>에서 data 재인용.

12) 이 단락은「日本經濟新聞」(2014.1.26), (2014.2.19) & (2014.4.11) 기사를 주로 참조.

13) 해당 국가에 있어 중요한 품목으로, 수입 증가에 의해서 국내경제·사회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을 말한다. 품목의 수나 구체적인 취급, 적용에 관해서는 교섭과정에서 정해진다.

14)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2014년 4월 9~10일 도쿄에서 약 18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중요 5품목”의 관세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5)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일본의 쌀시장 개방은 큰 문제였다. 당시 일본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778%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Minimum Access 방식으로 해외로부터 매년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쪽을 선택하여 난관을 극복하였다.

16) 일본의 경우 EPA에서 관세를 철폐한 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9018개 품목 중에서 929 품목에 달한다. 이 중, 광공업제품은 95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농축산 관련 품목이 예외품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17) 예를 들면, 베트남의 이륜차 관세는 90%,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83%이다.

18) 협의 침체에 위기감을 느낀 두 정상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시점을 목표로, 실무자급 조

TPP의 원점은 세계의 성장센터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규칙 만들기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눈에는「무법지대」에 가까운 나라가 아직 많다. 또한 중국의 국내 개혁을 외부의 세력이 유도하는 의미도 크다. 공유해야 할 이념을 잊고 미일 정부가 눈앞의 이해에 집착한 것이 협상 지연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TPP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2014년 3월 중에도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교섭관을 파견하여 관세협상을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멕시코는 돼지고기, 뉴질랜드는 유제품, 싱가포르는 초콜릿의 수입 관세를 없애도록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고 한다. 모두 일본의 중요 5항목에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관세는 없애지 않지만, 인하 대상에 포함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¹⁹⁾

12개국은 2014년 4월에도 수석협상관 회의를 재개한다. 그리고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차기 각료회의에서 조정에 들어간다.

III. 일본은 왜 TPP 교섭에 참여했을까?

일본의 TPP 교섭 찬성론자들은 일본의 TPP 참여가 불가결했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²⁰⁾ 첫째,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본 경제성장 저해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외로 더욱 문호를 확대하여,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 동안 ASEAN에 한중일을 포함한 ASEAN+3, 그것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ASEAN+6 등 자유무역권의 형성에 주력해 왔으나 가맹국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특히 한중일 사이에는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교섭이 정체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TPP에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면 한국 등에 뒤쳐져 있던 무역자유화 비율²¹⁾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PP에 의해 일본의 수출산업은 큰 시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책입안자나 농업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나, 농산물가격이 떨어진다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져 그 만큼 수요자들의 경제적인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농산물 생산자도 미국이나 EU의 사례처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TPP 이전의 생산량을 유지해 나간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²²⁾ 둘째는 경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이다. 특히 외교·안보 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미국이 TPP 협상을 주도하며「중국 따돌리기」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이상, 일본 입장에서 미국과 함께 교섭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 존재감을 증폭시켜 중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TPP 참가는 부시정권 시대의 중동 편중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전략의 변경으로 보이며, 경제, 군사 면에

정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14년 4월 23일부터 2박3일 간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정해졌다. 일본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을 국민으로 대우하여 아베 신조 총리와 의 정상회담을 24일에 가지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민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이 방일하는 것은 19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만이다. 「日本經濟新聞」(2014.4.2). 한편 미국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일본 측이 어떤 선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서 일본이 미국 측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국제신문」(2014.4.3).

19) 이 단락은 星野 (pp.40-41)를 참조하여 작성.

20) 이 단락은 星野 (pp.40-41)를 참조하여 작성.

21)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11년 11월 TPP 참여를 목표로 참여국들과의 협의개시를 발표하였다. 2012년 3월에 공개된 日本外務省經濟局 자료를 보면, 당시까지 일본의 FTA 비율 (FTA「발효」·서명완료)상대국과의 무역액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7%인데 반해, 한국은 35.2%, 미국은 38.3%, EU는 31.5%를 기록하고 있었다. <http://www.mofa.go.jp/mofaj/gaiko/fta/pdfs/genjo_kadai.pdf>

22) 山下一仁, 他 (pp.18)

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²³⁾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기타 국가들도 참여하게 하여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을 커버하게 된다면, 법의 지배, 자유경제를 기초로 하는 국제통상 룰의 확립을 지향하는 TPP의 완성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²⁴⁾

IV. TPP 참가의 장·단점

TPP 협정의 주요 장점과 지적되고 있는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제품이 TPP 협정 참가국의 제품과 차별받지 않게 된다. * TPP 협정 참가국간에 서로 관세를 없애므로써 무역이 번성하게 된다. * 일본의 기술과 브랜드가 보호된다. * 일본기업이 행한 투자가 TPP 협정 참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 * 무역절차와 사업가의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중소기업들도 해외에서 활동하기가 쉬워진다. <p style="text-align: center;">*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 (FTAAP)의 전초 단계이다.</p>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즉시 전 품목의 관세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결과 농업의 쇠퇴와 자금률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 식품의 안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닐까? * 공적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 * 질 낮은 외국인전문가(의사·변호사 등)와 단순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닐까? * 지방의 공공사업을 해외기업에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닐까? <p style="text-align: center;">* 외국인투자자들의 빈번한 소송으로 인해 일본 국내제도가 변경되는 등, 국가주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ISDS제도)?</p>

(출처) 日本首相官邸 Website, 「TPP協定交渉への参加についての特集」

<<http://www.kantei.go.jp/jp/headline/tpp2013.html>>

V. 결론

본 소논문에서는 근래 일본 통상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TPP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참여는 TPP 전체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TPP를 둘러싼 현재까지의 경위와 협상 과정을 주로 미-일 간의 협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투자분야에 있어서 민감한 항목인 분쟁해결수단 ISDS 조항과 농업²⁵⁾ 분야에서의 일본의 타격, 대책 등에 대해서는 분량 상 깊이 다루지 못하였고 차기 논문으로 미루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TPP 참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나큰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국내경제의 활력을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회복시키고, 또한 우방 미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안보 틀을 구축하여, 언젠가는 세계 제1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23)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질적인 경제대국 중국은 TPP 교섭에 현재 참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앞으로 TPP 중심으로 “중국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국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동맹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TPP와 RCEP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주도권 다툼 구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24) 이 단락은 山下仁, 他 (pp.5-6)를 참조하여 작성.

25) TPP 교섭 참가국은 농산물수출대국이거나 아니면 농업을 거의 영위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농산물수입대국인 일본과 한국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다.

중국을 미리 견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일본은 향후 한국이 뒤늦게 참여하게 된다면 교섭 과정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TPP 타결 후에는 일종의 한일 FTA의 효과를 누리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어, 자동차를 필두로 전통적으로 뛰어난 공업제품들의 비교우위를 내세워 한국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게 된다.²⁶⁾ 세밀한 연구, 분석에 탁월한 일본이 이런 장점들을 가진 TPP를 장래 십분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후발주자 한국도 기존 TPP 교섭 12개국 중 특별히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TPP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향후 교섭에 필사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²⁷⁾ 확고한 전략과 끈질긴 협상술로 미국을 공략해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향후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TPP 교섭은 기본적으로 통상전략이기는 하나 한국은 중국, 북한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장의 정치, 외교적 히든카드 들을 잘 활용하여 벼랑 끝 전술로 교섭에 임한다면 오히려 일본 보다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지도 모른다.

26) 한일 FTA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증가시키나, 장기적으로는 외국투자의 유입 등으로 한국경제에도 장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馬田啓一, 他 (pp.216).

27) 일본은 통상 관련하여 1950년대 섬유마찰부터 시작하여 철강, 컬러TV, 자동차, 반도체, 공작기계 등 미국과 크고 작은 협상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이 점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양희, “일본의 TPP 참여구상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제경영연구』Vol.8 No.1, 대구대학교 경제경영 연구소, 2012
- 김용복, “일본 TPP 참여의 정치경제 : 성장, 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연구』Vol.21 No.1,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3
- 김의기, 『WTO에서 답하다』, 다른세상, 2012
- 김호섭, “일본의 TPP 정책에 관한 국내논의”, 『일본연구논총』Vol.36, 현대일본학회, 2012
- 다니구치 마사키, 『일본의 대미 무역협상』, 한울아카데미, 2006
- 민경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교섭추진과 논점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Vol.7 No.4, 한국무역연구원, 2011
- 박창건·김용민, “일본의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 어쩔수 없는 찬성”, 『신아세아』 Vol.19 No.2, 신아시아연구소, 2012
-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도서출판두남, 2009
- 이동욱, 『FTA 시대의 국제비즈니스법과 분쟁사례』, 도서출판원, 2010
- 최인범, 『미국의 통상정책』, FKI미디어, 2002
- CCTV 경제30분팀, 『무역전쟁』, 랜덤하우스, 2011
- 황기식·김현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Vol.16 No.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 石川幸一, “日本のFTAとTPP”, 『国際貿易と投資』, Summer2012/No.88
- 石田新隆, “TPPと日本の経済連携戦略: 日本はなぜTPP交渉に参加したか”, 『農林金融』, 2013年11月1日
- 伊藤元重, “なぜTPPなのか: 国際通商システムの視点から考える”, 『NIRA(総合研究開発機構) OPINION PAPER No.6』, 2012年1月
- 植田大祐, 他 “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をめぐる動向と課題”, 『国立国会図書館『調査と情報』 第735号』, 2012年2月2日
- 馬田啓一, 他 『日本の新通商戦略』, 文眞堂, 2005
- 金映根, “東日本大震災後の日本経済と通商製作: TPP政策を中心に”, 『日本研究論叢』Vol.35, 現代日本学会, 2012
- 清水徹朗, “国際経済体制の再構築と日本の対応: TPPを超えて”, 『農林金融』, 2011年9月1日
- 星野三喜夫, “TPP参加は日本の優先順位の1つである”, 『新潟産業大学経済学部紀要(40)』, 35 - 60, 2012年7月
- 内閣官報官房, “TPPに関する意見取りまとめ(デメリットとして指摘される点抜粋)”, 2012年5月
- 山下一仁, 他 “TPPの論点(TPP研究会報告書最終版)”, 『キャ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 2011年10月26日

국제상사분쟁조정을 위한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KCAB와 國外 ADR기관들의 운영 사례 비교 중심으로 -

하 흰나래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II. KCAB의 ADR 운영 실태와 외국의 ADR 기관 운영 사례 비교

1. KCAB의 조정제도 운영현황
2. 국외 ADR 기관 운영 사례

III. 우리나라 ADR 제도의 문제점 및 활용증대 방안

1. 우리나라 ADR 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ADR 제도의 활용증대 방안

I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교통과 미디어, 정보통신 수단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국제적 상거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서 품질, 수량, 납기, 매매계약 등의 문제로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일반적이다. 특히, 언어적 문제, 문화.관습, 경제, 법률의 차이로 국내 상거래와는 달리 거래의 성립과 그 이행에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이 발생되기 쉽다. 일단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국제거래는 그 특성상 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거래의 경우와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피해자도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국제상거래상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소송은 소송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인과 집행, 소송 경합 내지는 판결의 저촉 문제등과 같은 소송이 가지는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성격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받아 비교적 쉽게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연구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각국에 있는 분쟁해결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운용되고 있다.

소송이외의 모든 분쟁해결방법을 총칭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 이라고 하며, 현재 이 ADR은 국제무역 분쟁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중재법이 제정 공포되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분쟁해결 전문기관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다시 이를 전문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상설 국제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만들어졌다.

국내기업의 국제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국제분쟁의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중재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로서의 ADR에 대해 살펴본 후, 국외 중재기관의 성공적인 ADR 운용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ADR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ADR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한다.

II. KCAB의 ADR 운영 실태와 외국의 ADR 기관 운영 사례 비교

1. KCAB의 조정제도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정은 법원주도의 법원조정, 각 정부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의한 행정형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일종의 결정부과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정방식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학계

를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부과적인 행정형 조정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미국식 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¹⁾

KCAB는 조정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2012년 2월 28일자로 조정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조정규칙은 UNCITRAL, ICC, LCIA, AAA 등을 포함한 주요 외국조정기관의 조정규칙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정학회의 감수를 거쳐 최종 마련되었다.²⁾

2. 국외 ADR 기관 운영 사례

가. CAMCA (아메리카 상사중재.조정센터)

CAMCA(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 : 아메리카 상사중재 · 조정센터)는 NAFTA(북비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적분쟁 해결기구이다. 이 기구는 NAFTA 역내에서 발생하는 사적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 미국 · 멕시코 3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어 1995년 12월에 창설되었다.

CAMCA의 이사회(Governing Council)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이 4명을 추천하는데 추천시 추천국가 해당 중재기관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CAMCA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 요금 및 절차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CAMCA는 또한 국제무역과 분쟁처리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조정인 및 중재인명부’(Panel of Arbitrators and Mediators)를 유지 · 관리한다. 동 명부에는 각 회원국이 12인씩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CAMCA는 NAFTA 역내의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창설된 다국적 성격을 가진 상설기관으로 통일된 규칙과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가지고 운영된다.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은 CAMCA 창설을 주도한 상기 중재기관의 어느 사무소에서도 접수될 수 있다.

CAMCA의 분쟁처리 주요업무는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이다. 이를 위해 CAMCA는 조정규칙(3장 및 18조)과 중재규칙(3장 및 39조)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절차로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장한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면, ‘중재’는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한 절차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 절차이다.

역내 간 경제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그 대상은 투자 및 무역 · 건설 · 고용 · 금융 · 프랜차이즈 · 지적재산권 · 제조 · 오일 및 가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다.

CAMCA의 조정규칙은 당사자가 동 규칙에 따라 조정을 받겠다는 합의를 하면 적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절차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재규칙도 조정규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CAMCA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면 적용된다. 중재규칙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CAMCA의 중재규칙이 중재에 적용되는 번의 강행규정과 충돌하게 되면 동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NAFTA 회원국의 중재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1) 김지호 (201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제337호, KCAB, 36면.

2) 김지호 (201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제337호, KCAB, 37면.

한편, 중재규칙에서는 소액사건의 신속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재신청(또는 반대신청) 청구금액이 미화 5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분쟁사건도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신속 절차에서는 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구두심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심리를 1회로 제한하며 중재판정도 심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리도록 규정하는 등 소액사건 이용자들을 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제공하고 있다.³⁾

나. HKIAC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에는 각 분야별 분쟁의 특성에 맞게 제정된 총 4개의 조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사조정규칙, 보험조정규칙, 일반상업조정규칙, 건설조정규칙 등이 있다. HKIAC는 조정심의회 산하에 4개의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Commercial Committee, Community Committee, Construction Committee, Family Committee 등이 있다. 이러한 분야별 위원회는 각 분야별 조정인 교육 및 인증을 실시하여 분야별 조정인 그룹을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 조정 규칙을 관리하고, 조정인 추천 요청 시 적절한 조정인이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배정하고 있다. 특히, 홍콩 민사소송법에는 가사분쟁의 경우 1차적으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홍콩에서의 조정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홍콩정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쟁을 법원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는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조정 및 중재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⁴⁾

다.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국제사무국 산하에 지적재산권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의 조정-중재(Med-Arb) 절차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서 제3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동일한 중립적 제3자가 해결되지 못한 남은 쟁점에 대해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WIPO의 조정-중재는 파생적 형태의 다양한 ADR 절차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 조정 후 중재의 경우 조정인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신뢰성을 갖지 못 하거나 동일한 중립인에 의해 진행되는 조정중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과 중재를 각기 다른 중립인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조정인에 대해 어느 일방이 불만이 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무국의 적절한 개입으로 조정 후 중재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⁵⁾

Ⅲ. 우리나라 ADR 제도의 문제점 및 활용증대 방안

1. 우리나라 ADR 제도의 문제점

가. 일반적 조정제도의 비활성화

현재, 국내,외 상사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서 조정에 적합한 사건에 관하여는

3) 김상호, 상사분쟁의 공동해결을 위한 동북아 ADR 협력의 과제 참조.

4) 오현석 (2009), 홍콩국제중재센터연수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2009.7) 참조.

5)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92009), 72면.

KCAB를 외부 ADR기관으로 지정하여 조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다시 “조정예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야 민사조정법상의 효력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KCAB의 경우에 중재판정의 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그 자체 중재법에 따라서 분쟁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⁶⁾ 법원에서 회부되어 온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중재가 되어도 다시 법원에서 그 효력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조기조정예의 형식으로 회부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KCAB의 중재판정이 있으면 바로 중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타당하다.⁷⁾

나. 국제상사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및 확보 미비

KCAB는 전문조정인 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조정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재인 명부, 중재원의 전, 현직 간부, 중재인을 겸하지 않는 변호사 또는 KCAB의 중재 CEO 과정의 수료자 중에서 선정하여 조정인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들 중 특정인원을 위촉하여 조정위원명단으로 보유하고 있다. KCAB와는 다르게 AAA는 온라인상으로 지역, 경력, 조정금액, 분야에 따라 전문 조정인을 검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전문조정인의 역량을 믿고 순전히 조정절차에 매진할 수 있다.⁸⁾ KCAB의 조정교육은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 조정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조정전문가 과정”이 있을 뿐이다. 아직 심도 있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여진 학습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KCAB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다. 국제상사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규칙 미비

국내 조정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KCAB 조정규칙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국제조정을 시행할 경우 조정규칙에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조정의 개시시점에서의 서류제출의 언어, 조정 진행시의 언어, 조정장소, 조정절차 등에서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되어야 할 규칙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상사조정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 조정규칙에 개선을 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⁹⁾.

2. 우리나라 ADR 제도의 활용증대 방안

가. 국제상사 분쟁 조정을 위한 통합적 분쟁조정기구 운영

우리나라에서 ADR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설기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모든 ADR기관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홍보하는 등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 ADR기관을 통합하거나 종합 ADR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설치해야 한다.

AAA의 산하기구인 ICDR이 세계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다. 예컨대, ICDR의 싱가포르 지역사무소에서는

6) 중재법 제 35조.

7) 박하운 (2013), 국제거래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법적협상에 관한연구

8) 박하운 (2013), 국제거래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법적협상에 관한연구

9) 한송희 (2007),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아시아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사분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질 높은 AD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ADR 기관이 중재 뿐 아니라 조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ADR 통합센터의 설립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한 센터 설립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이 함께 더해진다면 우리나라가 ADR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¹⁰⁾

나. 법조계와의 협조체제 강화

재판제도와 ADR제도가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중재의 활성화에 대한 법원의 원조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ADR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법조계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분쟁당사자들을 돕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분야의 조정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와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ADR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ADR 법규에 대한 연구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ADR법의 제정,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모델조정법 수용여부 결정, 중재법의 개정작업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사법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다. 국제분쟁조정 전문가 양성과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우리나라의 ADR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또 하나 절실한 문제는 ADR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이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노력으로 많은 유능한 중재인을 확보 및 양성하여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타 유사분쟁해결기관은 이러한 중재인에 갈음하는 전문가들을 조정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과 조정인은 분쟁해결절차에서 역할이나 테크닉이 매우 다르다. 어떤 면에서 조정인은 중재인보다 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분쟁 해결 면에서도 전문가이어야 하는 것이다.¹¹⁾ ADR 전문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ADR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와 ADR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은 단순히 대한상사중재원 내의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계획·지원되어 져야한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각 대학의 국제통상 관련학과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연계시켜 인재 배출 과정에 있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무실습기간을 두어 실제로 국제분쟁조정 실무전문가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ADR을 특성화 하는 로스쿨이 없다. 현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0개 대학원 예컨대, 고려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소송대체분쟁해결론, ADR, ADR 실무 등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ADR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ADR특화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ADR 특성화전문대학이 필요하다.¹²⁾

라. 조정의 국제성 제고를 위한 조정 효력, 집행력 강화 및 조정규칙의 보완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의 이용 촉진이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이점 또한 널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국민이 아직 ADR의 유용 및 장점을 잘 이해하지

10) 김대환 (2013),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1) 김대환 (2013),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2) 김대환 (2013),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재법과 같은 하나의 통일된 법률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여 조정 집행력에 대한 신뢰감이나 파급효과가 소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ICC나 AAA(ICDR), WIPO, CPR, CCPIT¹³⁾ 등 주요 중재기구들은 모두 조정규칙을 두어 조정과 중재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바, 국제상사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KCAB의 조정규칙에 국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KCAB의 조정규칙은 국내조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여겨질 만큼 그 국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AAA의 상사조정규칙의 경우,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외에서 국제상사 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재법과 같은 통일된 법률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KCAB에서 2012년 7월에 조정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상사조정에 있어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와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기 위한 조속한 움직임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⁴⁾

IV. 결론 및 요약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서 품질, 수량, 납기, 매매계약 등의 문제로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일반적이다. 특히, 언어적 문제, 문화.관습, 경제, 법률의 차이로 국내 상거래와는 달리 거래의 성립과 그 이행에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이 발생되기 쉽다. 일단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국제거래는 그 특성상 해결이 쉽지 않다. 국제거래의 경우와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피해자도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앞서, CAMCA (아메리카 상사중재.조정센터), HKIAC (홍콩국제중재센터),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등 국외 분쟁조정전문기관의 우수 운영 사례를 살펴본바 우리나라의 ADR제도의 현황과 운영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모든 ADR기관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홍보하는 등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유사 ADR기관을 통합하거나 종합 ADR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설치하고, 법조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ADR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교육시키는데 힘을 쏟는다면 우리도 국외 우수 ADR기관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ADR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1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미국의 공공자원분쟁해결센터(Center for the Public Resource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 CPR),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CCPIT)

14) 김대환 (2013),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김재명, “무역클레임과 ADR”, 도서출판 두남 2011.

2. 국내논문 및 기타 자료.

한송희,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2
박하윤, “국제거래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법적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6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노형, “WTO분쟁해결제도의 운영사례분석.”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_____, “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연구.” 법제저 2008.
박노형, 이로리,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법제저 2007 12.
고재경,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고찰”, 「경영경제」 제31집 제1호,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8.
고범준, “국제상사중재법 해의”, 대한상사중재원, 1991.
김갑유,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방안”, 「중재」 제31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
-----,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2005년 2월.
이규진, “미국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
이영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인형, “중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정인,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미국ADR중심으로”, 「동아법학」 제26호, 1997.

조광래,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병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방향”, 「변호사」 제32집, 2002.
최장호, “알선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 제30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2.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이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제337호, KCAB, 2012.
박노형, “조정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계간중재」 제329호, KCAB, 2009.
전병서, “조정절차에 대한 국제적 동향”, 「변호사」 제35권, 2005.

2. 외국논문 및 기타 자료

Valerie A. Sanchez, "Towards A history of ADR : The dispute processing continuum in Anglo-saxon england and today," Th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ume 11, NO. 1, 1996.

3. 웹사이트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co.kr>
미국중재협회 조정분과 <http://www.aaamediation.com>
미국중재협회 <http://www.adr.org>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외교부 <http://www.mofat.go.kr>

Abstract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Kore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djus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KCAB and the abroad ADR institutions-

In these days,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ed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which are actively happening. As international trade market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 be more complex and specialized than before. For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se complicated kinds of disputes there's a reasonable and professional way to resolve them which is calle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can prepare for various sor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gainst claims with ADR. Since litigation has been used as the basic resolution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disputes experienced lots of inconveniences like legal expense, time delay and so on. Therefor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appeared as its substitute.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resolution system is not only a low cost but speedy procedures. Although ADR has many effective aspects it has to be changed and developed more because of its own problems.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and activation plan of Korea's ADR comparing between the KCA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abroad ADR institutions.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huge gaps between countries, such as differences in commercial practices, languages, races, and national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all the differences, ADR has to be developed with advanced procedures, specialists of this field, and the an effective activation plan. As disput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ich happen frequently can be resolved easily with ADR, this study would promote the successful utilization of Korea's ADR.

COLLOQUIUM

전체사회:김대중(동아대, 학회이사)

3 세션

한통상,국제거래,문화의 교차점

연번	발표자	발표주제
1	이진환	수입대두의 용도제한에 관한 연구
2	김미희	국제경제시장의 경쟁력을 겨냥한 지역특산물의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을 위한 사전평가모델 연구
3	정희영	FTA가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4	박미용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 구
5	최한나/최원석	국제거래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지위와 적용 가능성
6	진욱음/이점순	The effective way to achie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수입대두의 용도제한에 관한 연구

- 수입규제성격을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

이진환

I. 서론

우리나라의 대두산업은 국민전체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으로 그 규모도 상당하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수입을 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국내 콩의 자급률은 1970년대 후반 70%, 1986년 22.5%¹⁾ 생산량은 2008년도 기준으로 11만 4,000여 톤이며 자급률에 대한 통계는 부족하나 5%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생산량으로는 식용소비량의 공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1960년대부터 대두를 수입하여 오고 있어 대두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의식은 다른 농산물의 개방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대두 수입의 증가원인은 사료용과 가공용의 증가가 원인이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수입대두의 전량은 유전자변형처리를 한 유전자조작 콩이라는 점과, 대두의 수입량이 많은 만큼 종자콩으로의 부정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환경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한·미 FTA협정 중 '농업생명공학 양해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양해서는 '한국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할 때,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²⁾와 위 협약에 가입한 후 이에 따라 발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³⁾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각국은 WTO, FTA협정 등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의 거센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자국의

1) 한국농업민신문, 1997. 2. 13.자.

2) 유전자 조작 작물(GMO)의 교역에 관한 첫 국제 규정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라고도 한다. 2000년 1월 29일 5년간의 협상 끝에 세계 1백40개국 대표단에 의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다. 의정서는 5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은 뒤 발효되는데, 태평양 도서 국가인 팔라우가 50번째 의정서 비준국이 됨에 따라 90일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3년 9월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에 대해선 반드시 유전자 조작 사실을 표기하는 명찰을 붙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70여 번째로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2007년 10월 의정서를 비준하여 2008년 1월에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3)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산업 중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업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II. 대두의 수출입과 동향

1. 세계의 대두 생산 및 수출과 수입현황⁴⁾

1) 대두 생산 국가 상위

국 가	브라질	미 국	아르헨티나	중 국	인 도	파라과이	캐나다
생 산 량	9,000	9,000	5,500	1,200	1,100	1,000	500

(단위, 만톤)

중국은 자국의 생산량만으로는 소비와 가공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 외에는 북·남미국가들이 생산량의 상위에 있다.

2) 대두 수출 국가 상위

국 가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캐나다
수 출 량	4,500	4,100	750	600	400

(단위, 만톤)

중국은 콩의 원산지임을 자부하지만 그 생산량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2009년 이후 수입국가로 바뀌었다. 또한 콩은 북·남미국가들의 생산수출액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공급처가 되었다.

3) 대두 수입 국가 상위

국 가	중국	EU	멕시코	일본	대만	태국	한국
수 입 량	6,900	1,100	400	300	250	200	180

(단위, 만톤)

위 통계에 의하면 한때 콩의 최대생산국가 이던 중국은 최대 수입국가로 바뀌었다. 중국이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생활향상과 가공품의 생산 수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의 대두 가공 국가 통계에서는 최상위로 약6,800만 톤을 가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현황과 용도

4) 위 통계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미 농부부추청치를 표로 작성. 통계의 출처, 에코 캐피탈, USDA, ECO, Monthly, report, 3월호, 인터넷판.

1) 대두의 수입량 추이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대두는 1998년~1999년에 대부분으로 18,348kg과 53,932,217kg이 각 수입되고 1998년 신선, 냉장으로 322,800kg이 수입되는 등 일부 수입되었으나 대부분은 건조대두로 1998년 1,345,468,224kg, 1999년 1,407,397,752, 2000년 1,461,614,909kg, 2001년 1,396,810,152kg, 2002년 1,418,135,353kg, 2003년 1,513,258,820kg, 2004년 1,311,548,664kg, 2005년 1,130,341,430kg, 2006년 1,130,241,634kg, 2007년 1,266,532,516kg, 2008년 1,204,033,962kg 등 1998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⁵⁾

2) 대두의 용도⁶⁾

구분	용도	콩나물용	사료용	채유 및 탈지 대두박용	기타
HS코드		1201009010	1201001020	1201001010	1201009090
2010년		5,848	1,935	501,015	223,327
2011년		6,488	4,385	347,094	198,910
2012년		289			2,821

(단위, 톤)

위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입 대두의 용도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이고 기타, 콩나물, 사료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대두제품관련 무역에 관한 협정

1. 한·미 FTA협정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협정이 발효되면서 대두품목과 관련하여 더 이상 기존의 농가보호를 위하여 취하였던 487%의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행관세를 통한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대두의 경우 세 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앞의 표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두의 생산에 있어 세계2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과 가공능력도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식용대두에 관하여는 세 번을 분리하여 현행관세를 유지

5) 통계청, 통계자료 2011. 10. 17.현재(조회일자 2014. 4. 10.)

6) 관세청, 통계자료 2014. 3. 30.현재(조회일자 2014. 4. 10.)

하기로 하였으므로 가공용 대두에 관하여 다른 생산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선례로 하여 식용대두에 관하여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대두 생산 수출 국가들과의 FTA협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의 선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 GMO 대두에 대한 용도제한

1) SPS협정 제2조 제2항

우리나라는 수입대두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영무역사업⁷⁾을 통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물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간접적인 수입제한규정으로 WTO의 SPS협정 제2조 제2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의 위반은 아닌지 살펴본다.

즉, GMO처리된 수입대두에 대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공용, 콩나물용, 기타, 사료용도의 수입대두는 전량 GMO(유전자변형)처리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GMO처리를 이유로 대두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즉 GMO처리된 수입대두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식용, 가공용)이 WTO의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그리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이다.

2) SPS협정 제5조 제7항⁸⁾

SPS협정 제5조 제7항은 SPS협정 제2조 제2항 규정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그리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해 채택,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검토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잠

7) 농가를 보호하여야 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일괄수입하여 공매등을 통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하여 수입한 후 공매하여 수입대두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8)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재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GMO처리된 수입대두에 관하여 GMO처리의 위험성이 검증될 때 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SPS협정 부속서

SPS협정 부속서1의 제1항 제나호에서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⁹⁾

이 부속서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SPS협정 제2조 제2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GMO처리된 대두는 위 부속서1의 제1항 제나호규정이 정하고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즉, GMO 대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다.

SPS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로 예외조항을 들어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

III. 결론

국영무역사업을 통한 수입량의 조절과 수입대두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대두산업의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SPS협정은 무역장벽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므로 정부기구, 비정부기구를 통한 일체의 수입 장벽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기관,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비정부기구도 시민단체 등의 수입규제와 관련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영무역사업을 통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며, 대두의 경우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 오래전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 저항은 적은 편이다.

다만, 국영무역사업을 통한 독점적 수입이 국내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것을 넘어 수입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나 가격통제의 수단으로 수급을 조절하며 수입량을 제한하여 국내의 농

9)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2012년부터 일본8개현(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지바현, 이아테현, 아오모리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49개품목(잉어, 붕어, 쥐노래미, 홍가자미, 서대, 돌가자미, 불볼락, 망상어, 물가자미, 누루시볼락, 흑대기, 조피볼락, 감성돔, 삼세기, 홍어, 송어, 양볼락, 명태, 농어, 민어, 강도다리, 찰가자미, 졸복, 넙치, 성대, 범가자미, 봉장어, 문치가자미, 양태, 대구, 개볼락, 도다리, 비너스백합, 동근성계, 날개줄고기류, 돌대구류, 노랑가자미, 장갱이, 별상어, 뱀장어, 매리복, 학공치, 산천어, 곤들매기, 홍어, 파슬리, 황어 감성돔)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2013. 9. 5.위 49개품목외에 모든 수산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이 위 부속서1의 제1항 제나호규정의 적용예로 볼 수 있다.

가 등의 저항을 줄이는데 집중하게 되면 대외무역에 있어 수출 국가들로부터 SPS협정위반으로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

수입대두의 용도제한은 국내 대두관련 산업과 공급의 안정, 그리고 수급조절에 따른 가격의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기능은 분명 수입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대두라는 제품의 품종을 기준으로 세번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한·미 FTA 협상에서와 같이 수입대두의 용도에 따른 세번을 변경한다면 향후 대두생산 및 수출국들과의 통상협상에 있어 대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협상이 가능하고 국영무역사업을 통한 수급조절기능에 대하여도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중 FTA협상에서도 곡물류의 수입에 관한 협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협상기술과 설득력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곡물 중 쌀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많은 품목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데 이러한 곡물 중 대부분이 가공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옥수수과 대두, 밀의 수입량이 곡물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곡물은 사료용과 식용으로 이용되고 식용은 식물성 유지로 가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수입용도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수입제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통상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대두에 대한 TBT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GMO검사를 통하여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WTO S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연구하였다.

Abstract

Many of grains have low self-sufficiency except some items such as rice. So most of grains are imported and most of them are imported for processing. Corn, soybeans and wheat imports are accounted for most of grain imports except rice. These grains uses for feed and food and foods are processed to vegetable oil. But some of them are uses for out of import purpose. I studied if restrict use can bring to restrict import and can developed into trade dispute. And those are studied if restrict use through GMO inspection which doesn't violated the TBT Agreement for soybean imports violated WTO SPS Agreement or not.

참고자료

- 이양기, '국제식품안전규범의 연구 동향과 한중 연구과제', 『중국연구』, 제16집, 2014.
- 김승호, WTO통상분쟁판례해설(Ⅰ),(Ⅱ)
- 전정기,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무역학회지』 제36권 제4호.
- 박성용·김석철, '통상정책과 GMO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7권 제1호.
- 최혜선,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3호.
- 이탁·윤기관, 'WTO/TBT.SPS협정중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제37권 제1호.
- 전정기·이성형·이대풍,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37권 제1호.
- 정민정, '한국의 일본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국제법학회논총』제58권 제4호(통권 제131권).
- 최정순, '식품안전에 관한 민간표준 연구', 『구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 최월목, '개방화된 환경 속에서의 우리 식품안전정책의 방향', 『서울국제법연구』제15권 제2호.
- 이재민, '최근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논총』, 제55권 제4호, 통권 119호.
- 외교통상부, 『한.미FTA협정문』.
『한.EU FTA협정문』.

국제경제시장의 경쟁력을 겨냥한 지역특산물의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을 위한 사전평가모델 연구

A Study on Pre-Evaluation Model
for National Br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Local Specialty Products
Aimed at The of International Economic Markets

김미희

《 요약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FTA 타결로 인해 세계 각국의 농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와의 국제경쟁을 피할 수 없고, 국내외의 각 지역은 환경변화와 경제침체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쟁력을 위해 지역특산물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에 힘쓰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은 그 지역의 환경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벽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 없이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에 있어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평가모델을 제안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에 있어 성공적 관점을 정의하여 국내외 통합내셔널브랜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의 문제점과 성공 관점을 각각 체크한 항목별로 연결하여 사전평가모델의 check list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check list를 통해 평가되는 model은 6가지이며,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의 우수사례인 모동백화명산포도 사례검증을 통해 check list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결과물인 사전평가모델의 check list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수준을 개관적으로 평가하여 개발방향과 목표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제 및 국내경제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통합내셔널브랜드로서 지역의 자존감이 깃들은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색어 : 국제경쟁력,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사전평가모델, 지역특산물

《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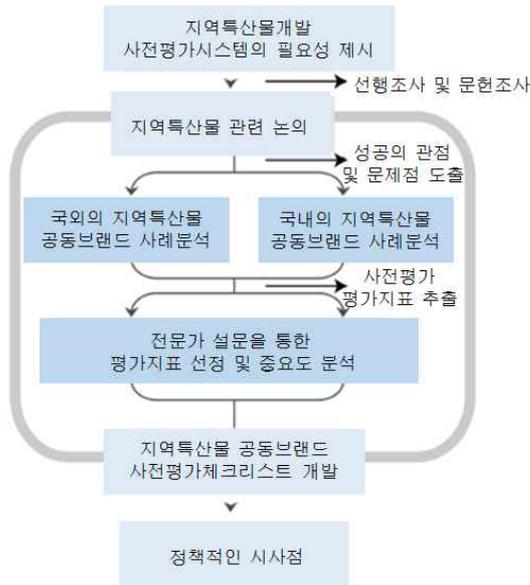
I. 서론	IV. 사전평가모델 개발
II. 국제경쟁력과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1. 사전평가 정의 및 필요성
1. 국제경쟁력 및 브랜드 정의와 기능	2. 사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2. 내셔널브랜드의 결정적인 요인	3. 사전평가모델 진단방법 및
III.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사례	체크리스트 검증결론
1. 지역특산물 브랜드전략 성공 사례	V. 결론
2. 지역특산물 브랜드전략 실패 사례	

I. 서론

1. 연구 배경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지역특

1) Pierre Berthon, James M. Hulbert, Leyland F. Pitt, 1999, 재구성



<그림 I.1> 연구흐름도1)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산물 내셔널브랜드 개발의 전략을 위한 사전평가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외 지역특산물 내셔널브랜드 개발 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인 최종 사전평가 모델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개발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발방향과 목표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전평가모델을 통한 지역특산물 내셔널브랜드개발은 중복연구나 목표 설정의 부재로 인한 미비한 성과로 인해 낭비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균일한 내셔널

산물 내셔널브랜드의 영향력은 점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과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FTA 타결 및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브랜드가 급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역농산물 브랜드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개발에 있어 초기의 뚜렷한 개발 목표와 개발수준 정립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중복사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 없이 소멸되는 브랜드로 이어져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²⁾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 관리가 가능하여 국내외로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내셔널브랜드로서 긍정적 지역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국제경쟁력과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1. 국제경쟁력의 개념과 브랜드 전략의 이론

1) 국제경쟁력 개념

국제경쟁력은 "재화 및 용역을 국내 및 국외시장에서 경쟁기업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거나 같은 비용이라면 보다 우수한 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란 국내외 경쟁자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낮은 비용의 상품과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OECD(1998)에서는 국제경쟁력이란 국가의 수준이 개방된 시장상황에서 국내의 실제 소득을 유지·확장함과 동시에 외국의 경쟁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국제무역에 있어 특정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주는 수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으로 구분되며 가격경쟁력은 한율, 임금, 금리, 재무구조 및 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비가격경쟁력은 품질, 디자인, 마케팅 능력, 상품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 Axelrod, I.N. 1993.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Brand Equity" ARF Brand Equity Research Day The New York Milton.

2)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란 특정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과 식별·구별·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술어·구호·문자·상징·도안 등 또는 이것들을 조합한 것이다³⁾. 또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식별시키고, 경쟁자들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고객들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독특한 이름과 상징물들과 의미의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상표법에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3) 브랜드의 기능

마케팅 전쟁은 바로 브랜드의 전쟁이다. 브랜드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신속한 도움을 주어 제품 탐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 상품은 물리적 존재로서의 대상물에 소비자의 주관적 이미지, 기대감, 만족감이 결합된 유무형의 복합체로 상품식별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으로서 브랜드를 통해 생산자는 자기의 것을 타인의 것과 비교시켜 우수성 내지 특이성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여러 가지의 동종 상품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⁵⁾

4) 내셔널브랜드전략의 유형

기업이 수출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의 발전비전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OEM브랜드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지역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는 기업의 여러 가지 내부 상황과 여건,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브랜드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를 의미한다. 기업이 지역브랜드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마케팅 수행능력과 적정수준의 재정규모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 조사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감하고 지속적인 R&D투자, 그리고 해외마케팅 조직의 확보도 필요하다.

<표 II.2>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의 정의⁶⁾

구 분	내 용
공동 브랜드	지자체와 생산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조직이 참여하여 시·도·군 단위 이상의 범위의 브랜드 -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생산자조직 공동브랜드(지역통합 공동브랜드)
개별 브랜드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조직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브랜드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개별로 사용하는 브랜드

OEM브랜드 전략은 제조능력에 우위성을 가진 기업과 판매능력에 우위성을 가진 개별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시킴으로써 각자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전략이다. 주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해외마케팅 능력과 신제품 개방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최저원가 OEM생산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마케팅 및 판매활동을 구매자에게 이양하고 생산설비를 최적규모(optimum size)로, 원가는 최대한 절감하려 할 것이다.⁷⁾

5) 지역브랜드의 문제점

현재 국내 브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통합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과 관

3) 미국마케팅협회(1960)에서의 브랜드 정의,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4) Leslie de Chematony and Dall'Olmo Riley, F(1998), "Defining A Brand: Beyond The Literature with

5) Pierre Berthon, James M. Hulbert, Leyland F. Pitt, 1999, 재구성

6) Leslie de Chematony and Dall'Olmo Riley, F(1998), "Defining A Brand: Beyond The Literature with

Expert Interpretation",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4,

7)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국제브랜드 전략', 조원길, 2003.

리체계가 미흡하다. 둘째, 통합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부족하다. 셋째, 우수 공동브랜드의 육성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정부의 통합브랜드지원정책이 육성 단계별 차별적 지원이 아닌 통합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통합브랜드가 개발되더라도 브랜드의 사용실태 및 품질관리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다.

6) 지역통합브랜드 성공에 대한 관점

지역특산물의 무엇을 성공 브랜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개발 주체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 본다. 첫째, 소비자의 시점은 서비스나 상품의 질에 대한 만족감의 여부로 정해진다. 둘째, 지역특산물 브랜드의 시점은 지역의 매력으로서의 가치 창출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정해진다. 셋째, 개발 주체와 지역주민의 성공의 시점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효과의 여부로 정해진다.

2. 내셔널브랜드전략의 결정요인

1) 기업특성요인

내셔널브랜드전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능력이나 지배력이 증가하며, 이용한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여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지역브랜드전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재무자원의 부족, 전문가의 결여, 기술경험의 부족, 시장에 대한 약한 영향력과 유통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타사제품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지역브랜드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해외시장에서 수출경험, 시장개척경험, 경영관리경험, 지역브랜드 부착제품의 생산경험 등이 수출기업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험요소가 많은 기업일수록 해당시장 내에서 형성된 경쟁상의 우위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

2) 마케팅 특성요인

내셔널브랜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제품개발 및 혁신능력이며, 제품특성에 따른 시장형성과 판매전략, 유통관리 등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경로의 개입정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자사브랜드의 선택비율이 높아지고, 활발한 광고활동을 통해 브랜드 자산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제고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그 기업의 고유 브랜드 사용 가능성을 보다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수출활동이 객관적인 기반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외시장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Ⅲ. 내셔널브랜드개발전략 사례조사

1. 국내외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 성공관점에 따른 분석

국내외 우수 공동브랜드 중 프랑스의 브레타뉴, 뉴질랜드의 Zespri,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동백화명산포도를 선정하여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의 성공관점에 따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국내외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 성공 사례 분석

국내외 통합내셔널브랜드 성공요인 분석									
구분	소비자의 시점			상품의 시점			지역, 주민의 시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품질점검	상표권등록	신상품개발	품질향상연구	운영의 효율성	조직화 및 규모화	경제적향상
브레타뉴	○	○	○	○	○	○	○	○	○
Zespri	○	○	○	○	○	○	○	○	○

8) 기업의 규모와 유명도에 따라 브랜드전략을 결정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변수이다,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국제브랜드 전략', 조원길, 2003.

백화명산포도	○	○	○	○	△	○	△	○	○
--------	---	---	---	---	---	---	---	---	---

2. 국내외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 실패관점에 따른 분석

통합내셔널브랜드의 실패사례인 영암군 ‘氣 @young-am, 경기 용인시 ‘ACE YONG-IN’, 성동구 자체 브랜드인 ‘소레인(Sorain)’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Ⅲ.2>와 같다.

<표Ⅲ.2> 국내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 실패 사례 분석

구분	소비자의 시점			상품의 시점			지역, 주민의 시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품질점검	상표권등록	신상품개발	품질향상연구	운영의효율성	조직화 및 규모화	경제적향상
ACE YONG-IN	○	○	○	x	x	x	x	x	x
氣@young-am	○	○	○	○	x	x	x	x	x
소레인	x	x	x	○	x	x	x	x	x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우수통합브랜드를 분석해 보면, 완벽한 브랜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및 재료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자 조직을 규모화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브랜드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 추진 체계가 조성되어있다. 그 반면, 국내 브랜드는 브랜드화 추진 및 개발, 브랜드 positioning과 가치구축, 브랜드 마케팅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브랜드 확장 및 유지측면에서 계획 및 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IV. 사전평가모델(Pre-Evaluation)개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에 있어, 사업초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금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개발목표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사전평가모델이 필요하다. 사전평가모델은 사전평가모델개발 부분과 적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전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사전평가라는 개념과 적용범위 및 사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연구하여야 한다.

1. 사전평가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전평가¹⁰⁾는 환경 및 과학 기술에 따라서 초래되는 악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하고, 그 범위 중에서 효용가치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폐단과 손해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적용에 있어 기술이 인간·자연·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사전평가모델(Pre-Evaluation Model)에서의 사전평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지역특산물 개발전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통합브랜드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개발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 방향 수립 및 전략에 필요한 대책을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지역특산물 통합브랜드의 개발함에 있어, 이러한 사전평가라는 개념이 적용된 사례가 잘 없어 이제까지의 통합브랜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한 브랜드들은 생산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면서, 오히려 브랜드 난립으로 지역 활성화의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 초기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목표 및 방향 설정한다면 중복사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9) 산업정책연구원(ISP), 브랜드가치형가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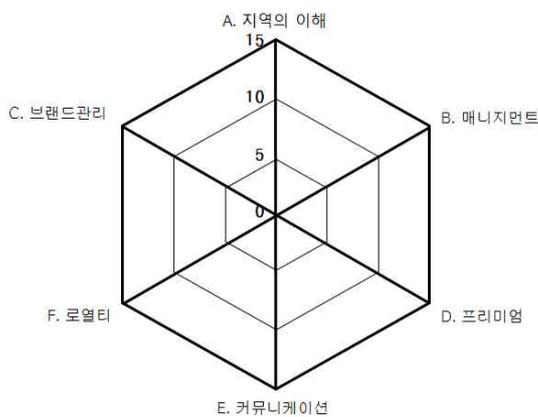
10) 기술 개발 및 적용할 때 기술이 인간·자연·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이 방향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전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결과모델이 도출된다면 그에 따른 개발전략 확립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2. 체크리스트(check list) 개발

사전평가모델은 사전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출된 모델 결과에 맞게 프로세스(process)를 적용하여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를 개발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체크리스트¹¹⁾는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에 맞는 개념을 도출, 문제점을 인식하여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그에 맞는 평가리스트이다. 사전평가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평가지표 추출 방법으로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의 성공관점과 전문가 집단, 이해관계자 집단, 사용자 집단의 연관 매트릭스를 통해 평가영역을 분류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추출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국내외 통합내셔널브랜드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에서 평가지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지표들을 평가지표 선정에 위한 평가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사전평가모델 평가방법



<그림IV.1> 지역특산물 Hexagon chart¹²⁾

선정된 체크리스트¹³⁾의 A-G의 합산점수는 100점으로 하였으며, 진단평가모델 상황 기준표에 따라 조직구축모델(Constructed Organization Model), 실천우선모델(Priority Action Model), 상품우선모델(Priority Products Model), 지역이미지구축모델(Local-Image Building Model), 균형적인전략모델(Strategic balance Model), 초기개발모델(Primary Development Model)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그 모델의 결과에 의해 분석 평가할 수 있다.

1) 조직구축모델(Constructed Organization Model) : 육각형 중심이 위에 있는 모델

조직구축모델은 통합내셔널브랜드전략에 대처하는 조직으로 진행되고 있어도 브랜드프리미엄, 커뮤니케이션 등의 실천 부분에서의 대처가 떨어짐을 평가할 수 있다. 통합내셔널브랜드 전략에 대처하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 실천우선모델(Priority Action Model) : 육각형중심이 아래에 있는 모델

실천우선모델은 특산물개발 및 선전 등 지명을 붙인 상품에 관한 대처가 선행되고 있으나 조직 및 계획 등의 관리가 떨어짐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매력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

11) 경남발전연구원(2008). 일본 브랜드전략연구소가 지역브랜드 평가하기 위한 틀을 활용

12) '도시브랜드지수 재구성' Simon Anholt, 2007. Simon Anholt는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1998년 처음으로 '국가 브랜드'란 용어를 만들었다. 그가 창립한 '안홀트-GMI'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며, 2005년부터 해마다 50여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가 브랜드지수(NBI) 와 도시 브랜드지수(CBI)를 발표. 저서로는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Brand New Justice)' 'Competitive Identity' 등이 있다.

13)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의 평가지표 항목은 개인, 대상, 관념, 현상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30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로서 적합함의 기준인 4 점 이상 선정된 것은 55개 지표 항목 중 총 30개 지표로 분석되었다. 점수가 높은 항목은 대처가 진전 되고 있지만, 반대로 점수가 낮은 항목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된 모델결과를 개발 단계별 로 재배치하면 개발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목표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 지역특산물의 이미지가 우선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 상품우선모델(Priority Products Model) : 육각형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

상품우선모델은 소비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및 농산품 등 현지 산 상품개발이 많은 상태라 평가할 수 있다.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나 지역 이미지와의 연결이 부족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소비자의 태도 변화요인에 대처하는 준비 및 가치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지역이미지구축모델(Local-Image Building Model) : 육각형중심이 왼쪽에 있는 모델

지역이미지구축모델은 지역자체에 강한 브랜드이미지를 주는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 브랜드의 평판을 좋으나, 상품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새로운 브랜드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부해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균형적인전략모델(Strategic balance Model) : 육각형중심이 중심에 있는 모델

통합내셔널브랜드전략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6가지 전략이 균형감각을 유지한 채 실천되고 있어 이상적인 모델이다.

6) 초기개발모델(Primary Development Model) : 육각형중심이 한 중앙에 있는 모델

초기개발모델은 통합내셔널브랜드전략을 생각만 하고 있는 모델로 실행을 잘 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발초기 정확한 개발목표와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선 전담자와 조직 만들기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지속적인 강제성장과 다변화로 인해 시장구조는 세분화되고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는 제품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소비욕구의 변화, 시장 경쟁의 다양화, 국제적인 시장경쟁에 대응하여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통합내셔널브랜드전략을 구축하여 파워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개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처럼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이 형성됨에 따라 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의 포화상태 속에서 통합브랜드와 경쟁브랜드를 구별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한 Brand Identity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파워를 증가 시켜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평가모델(Pre Evaluation Model)의 check list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의 현황과 문헌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국내외 우수 및 실패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전문가집단, 이해관계자집단, 사용자집단의 Likert scale를 활용한 설문을 통해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check list를 통해 평가되는 모델은 총 6가지이며, 조직구축모델(Constructed Organization Model), 실천우선모델(Priority Action Model), 상품우선모델(Priority Products Model), 지역이미지구축모델(Local-Image Building Model), 균형적인전략모델(Strategic balance Model), 초기개발모델(Primary Development Model)과 같은 결과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check list의 신뢰도를 위해 사례조사에서 우수 및 실패사례로 분석되었던 '모동백화명산포도'와 '소레인'의 사례검증을 통하여 check list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평가를 통한 지역특산물 통합내셔널브랜드의 개발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균일한 Brand Identity 관리가 가능하여 국내외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Brand로서 긍정적 지역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동브랜드의 효과적인 Brand Image 개발은 전체적인 시대에 따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브랜드개발전략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온 국내 통합내셔널 브랜드개발사례와 Brand Image 연구가 디자인전공자(소비자)로 제한하여 연구되어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 또는 지역단체가 통합내셔널브랜드개발 시 참고가 되어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에 견줄 만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김기평(2010).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이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권기대·허무열(2003).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선택이 고객가치 및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정책연구 Vol. 30 No. 4 pp. 718-742
- 김번욱·이광희(2007) "강화인삼의 세계 명품화 추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박경애·허순임(2004). "지역 공동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매릭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Vol. 28 No. 2.
- 박봉래(2006).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정훈(2006). 장소브랜드 모형구축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6 No.11, 경기개발연구원.
- 안광호 외(2008). 전략적 브랜드관리-제3판, 학현사.
- 윤경구(2009). Aaker, Keller, Kapferer Brand Workshop, 유나이티드북스.
- 위남량(2008). 우수브랜드 쌀의 브랜드자산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소영(2008). 지역브랜드 활용 시대와 실행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TRA, 일본의 국가브랜드 육성전략, 2007.
- 경남발전연구원(2008). 지역브랜드 그 성공의 조건은?.
- Aaker, David.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 Kevin Lane Keller(2002), Strategic Brand Management : Building, Measuring, and Managing Brand Equity: Person Education, Inc.
- Farquhar. P. H(1990), Managing Brand Equit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 Axelrod, I.N. 1993.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Brand Equity" ARF Brand Equity Research Day The New York Hilton.
- Broniarozky, Susan M, Joseph W. 1994. "The importance of the Brand in Br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 Farquhar. 1992. "Strategies for Leveraging Master Brands." Marketing Research
- Green, Paul E, V. Srinivasan. 1990. "Conjoint Analysis in Marketing Research : A Review of New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 Haigh, David. 1998. "Brand Valuation: Understanding, Exploiting and communicating brand values." *Financial Times Retail & Consumer*.

Abstract

Today, With the rapid increase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 brands as the settlement of FTA is in progress, local governments are unavoidable to compete with various farm product brands from Korea and every country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vitalize regions that are sinking due to suc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and economic crisis, the current trend is that local governments are developing new brands every day including regional specialties, regional name and local handcraft. But thoughtless development of National Co-Brands for local specialties is acting as a huge barrier on improving local image by using good regional specialties, which is lead to the brands dissipated without any distinct results and causes the waste of national budgets.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study suggested the advance diagnostic model as a measure to reduce failure rate when developing National Co-Brands for regional specialties for regional vitalization, also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ational Co-Brands by defining the perspective of success for National Co-Brands of regional specialties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composed the Pre-Evaluation Model with valuation items of the check sheet by connecting problems of National Co-Brands with the perspective of success for each check item. In the results, there were total six types diagnosed through the check shee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heck sheet was confirmed for the reliability through case verification of 'Modong Baekwha grapes(case of excellence)' and 'Sorain(cases of failure)' that were analyzed as an element defined as the perspective of success for National Co-Brands of regional special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check sheet of the Pre-Evaluation Model(final result) that can be usefully used by local governments for objectively diagnosing their own development levels and establish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create positive local images and vitalize regional economy as competitive and differentiated brand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Keyword : Local Brand, National Co-Brand, Pre-Evaluation Mode, Check List,

FTA가 한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EU FTA와 EU수입제품의 국내소비자가격 변화에 대한 이해)

정희영

목차

I. 서론

II. 대한민국의 FTA체결이후 실물 분야 분석의 미비

1. 배경과 목적
2. 한-EU FTA체결의 대략적 내용 고찰
3. 한-EU FTA체결 이후 수입에 따른 소비자 가격변동: 프랑스 와인과 화장품 사례 연구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14년은 대한민국이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 2004년 4월 1일)을 체결한지 만10년이 되는 해이다. 2014년 3월 11일에는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FTA 체결로 전 세계 4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제는 지난 10년간 49개국과 맺은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과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익계산을 진지하게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많은 수입상품에 있어 수입세 철폐라는 대전제로 당연히 정부의 세금 수익은 그만큼 줄었다. 그러나 그 줄어든 관세의 향방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수익은 수출 기업만의 몫인가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입 및 수출 관세철폐로 인한 경비절감의 수익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왜 15%(EU의 수입주류)관세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샤토 라투르(CH.LATOURE, 프랑스의 고급와인)와 샤넬(Chanel,프랑스 화장품회사, 현재6.7%(립스틱),2014년) 등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제품 가격은 오히려 관세철폐전인 2011년보다 더 비싼가? 아직도 대부분의 제품들의 수입원가와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실재로 몇몇 제품의 소비자 가격들을 통해서는 한-EU FTA체결이 후에 EU국가들의 수입제품들의 소비자가격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다수의 상품들이 그 가격이 오르거나 변화가 없는 현실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이며 그 경제적 효과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살펴보아 일반 소비자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향후 FTA의 운용에 필요한 소비자 측의 필요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주제어: FTA, 한-EU FTA,관세철폐, 제품수입원가, 일반소비자가격

I. 서론

한-캐나다 FTA¹⁾체결(2014년 3월 11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FTA체결 국가를 늘려온 한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 49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써 FTA지배경제영토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 전 세계 3위(1위 국가: EU, 2위 국가: 칠레)를 차지하고 있다.²⁾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의 2013년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의 FTA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3배(46개국)로 늘어났으며 FTA체결국가와의 수출증가율도 FTA 미체결국가와의 성장률인 1.3배에 비해서 그 교역량이 3.5배의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역량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FTA(무역관세철폐협정)를 체결한 국가 간의 수출입 무역교역량은 미체결국가와 비교하여 그 양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팽창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러할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 29일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참여에 있어 그 첫 번째 단계인 “관심표명”을 했고 현재 TPP 참여를 위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다른 많은 국가와 체결한 FTA 체결해야했던 배경과 협상과정 관세철폐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있었으며 그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간 것인지 우리정부와 기업 이외의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대한민국의 FTA체결

1. 배경과 목적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1930년대 이후의 경제대공황 이후 황폐해진 전 세계경제의 재건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방의 선진국들이 모여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1947년의 GATT이고⁴⁾ 미국이 제안한 유럽부흥을 목적으로 한 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에 만들어진 경제개발협력기구가 OECD다.⁵⁾ 또한, 1995년에는 WTO가⁶⁾ 1994년에는 NAFTA가⁷⁾ 출범했으며 2002년에는 미국, 유럽국가의 지역

1) FTA(Free Trade Agreement,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에 관세양허 및 철폐를 통하여 무역촉진과 교역량 증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2) KBS 2014년3월11일 9시뉴스(산업통산자원부, 2013, 자료제공)

3)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의 환태평양 지역의 10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 2015년까지 회원국 간 농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하고 있음. 최근에 일본과 캐나다도 이 협정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참여 첫 단계인 “관심표명”을 밝혔음.(2013년 11월 29일)

4)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47. 세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5)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력기구. 1948. 대한민국은 1996년에 가입함.)

6)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1월 출범,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설기구와 분쟁의 해결절차를

적 무역협정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무역증진을 1967년 위한 ASEAN이⁸⁾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한국-EU FTA⁹⁾ 한-칠레 FTA¹⁰⁾를 위시하여 한국은 10여개의 FTA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몫인 FTA협상체결과 그로 인한 상품의 비관세 수출입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소비재를 이용하면서 겪는 FTA이후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FTA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FTA가 우리의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한-EU FTA체결의 대략적 내용 고찰

대한민국은 국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국가라기보다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여러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해 편승해왔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7-18세기에 유럽 강대국은 자국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을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 정책을 펼쳐 약소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했다.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겪은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들어서 또다시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규칙들 (Tool & Rule)을 짜고 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나 현재 155개국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WTO는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고 주요통상국들 간의 이견노출이 심해 어떤 의제에 대한 협상과 타결이 불가능하고 지연 될때가 많아 최근 10년 사이에 FTA와 같은 지역주의/양자주의 무역특혜체제의 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TA의 단점은 양국가간의 무역협정이므로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엄청난 피해손실로 산업의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¹¹⁾ FTA는 각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¹²⁾ 반면 대한민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미 FTA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무역절차 간소화와 관세철폐로 무역거래 실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늘고 그로인한 수출교역, 생산, 고용과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입품들의 가격인하로 국민(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으로 인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GLOBAL

가지게 된 국제무역기구,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현 155개국의 회원.2013)

7)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994 체결,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로 묶는 북미지역자유 무역협정)

8)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③ 경제·사회·기술·문화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이다.)

9) EU & EU-FTA(Europe Union & EU-Free Trade Agreement, 유럽경제통합, 1951년 프랑스와 독일을 시작으로 발전한 유럽국가의 관세동맹으로 지난 2000년에는 12개국의 화폐통합으로 발전 현재 2014년2월 28개국이 가입국이고 유럽국가간의 경제협력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0)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지역적인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는 지난2004년 칠레와의 협정을 시작. 현 2014년49개국과 체결)

11)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72-73P

12) 변재용.이로리 2012, 한.EU FTA특수문제연구. 17-18p

STANDARD가 우리 시장에 정착하여 여러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들은 FTA 운용이후 산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한-EU FTA체결 이후 수입에 따른 소비자 가격변동: 프랑스 와인과 화장품 사례 연구

캐나다와의 FTA체결 시 한국 자동차의 캐나다 수출증가를 가장 먼저 언론에서 보도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현재 캐나다보다 열세인 경쟁력을 가진 많은 중소기업/중소산업들을 위한 보호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각 국가별 FTA협정조건에 맞추어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TA는 세계 메가 글로벌화의 트렌드이고 모든 트렌드에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다.¹³⁾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세계적 조류에 합류해야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트렌드의 형태와 방향을 연구하고 그 트렌드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야한다. 또한, FTA체결로 인한 수입세철폐로 인한 기업 세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얻게 될 혜택의 SHARE(사회 환원 및 자발적인정부정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 원가가 인하된 수입상품들의 유통상의 유통업자들의 폭리 단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수입 소비제품들의 소비자가격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연구목적의 일환으로 한-EU FTA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가격의 변화에 대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본다. FTA로 인한 가격변동에 어떤 영향들과 변화들이 있는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가격 결정들의 요인들을 설명한다.

III. 결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흐르는 물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라”

FTA는 및 각종 국제경제무역협정은 20세기에 시작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경제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49개국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각 산업분야에 적용시켜 나아가야하는 과제이다. 이론과 홍보성의 정보만으로 실물경제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오랜 열강들의 둘러싸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한 국민적 특징이다.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이라크전쟁이후에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인 입지가 많이 축소되었으며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사태로 인한 미국 금융경제가 받은 쇼크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20여년 동안 부상한 중국의 세계 정치, 경제적 위상과 힘을 견제하고 미국의 입지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다시 구축할 새로운 경제 전략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선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¹⁴⁾

FTA(Free Trade Agreement,각주10참조) 체결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의 협정체결이 끝났

13)곽수중 2007, *FTA후 한국(FTA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콜로세움. 52-53p

14)곽수중 2007, *FTA후 한국(FTA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콜로세움. 50-51p

다.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앞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각주3참고), RCEP¹⁵⁾등의 가입이 필요하다면 가입을 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좀 더 많은 준비로 최대한의 국익을 위한 협정체결을 이끌어 내야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운용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각 분야의 대책마련과 정부, 기업, 국민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15)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중국,한국,ASEAN 10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등의 16개국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동반자협정)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관세청(KOREAN CUSTOMS SERVICE) 2009, *FTA 달인이 되는길*
곽수종 2007, *FTA후 한국(FTA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폴로세움
노순규 2009, *한-EU FTA와
경제전략*.한국기업경영연구원(www.kbmi.co.kr)
매경이코노미연구소 2013, *2013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변재용.이로리공저 2012, *한-EU FTA 특수문제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외교통상부(외교통상교섭본부) 2011,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외교통상부 2011, *한-EU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2011, *한-EU FTA협정문(영문)*
외교통상부(지역통상국 유럽연합통상과), 2007,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정인교.노재봉편저* 2005, *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도서출판 해남
한국유럽학회 유럽연합(EU)학술용어사전 편찬위원회
(김시홍.방청록.송병준.이선필.이종원.채형복공저)2007,
유럽연합(EU)학술용어사전. 높이깊이

<국내논문>

- 김윤아 2012, *FTA가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성용 & 오동현 2010, *"FTA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 pp. 43-55; 한국어.
변재용 2011, *"FTA 찬반 논쟁"*. 국제학논총, vol. 16, pp. 71-99; 한국어.
변재용 2011,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 30, no. 2, pp. 37-62; 한국어.
변재용 2009, *"한-EU FTA 체결의 산업별 관세효과"*. 관세학회지,
vol. 10, no. 4, pp. 263-282; 한국어.
변재용 2001, *"미국·EU·일본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vol. 26, no. 3, pp. 219-242; 한국어.
변재용 & 정종철 2008,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규제수단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vol. 33, no. 1, pp. 45-70; 한국어.
엄은진 2011, *국내 와인소비자의 구매유형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와
지출금액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윤재만 2011,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입상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성림 2008,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 시장 전망"*.
소비자학연구, vol. 19, no. 4, pp. 41-63.
이제홍 2013, *"FTA 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통상정보연구, vol. 15, no. 2, pp. 365-383.
이제홍 2013, *"미국-EU·칠레와 FTA 발효에 따른 제품가격과 품질 차이에 관한
연구"*. 貿易 研究, vol. 9, no. 7, pp. 21-37.
이제홍 2013, *"통상협상 : FTA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통상정보연구, vol. 15, no. 2, pp. 365-383.
이제홍 2013, *"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통상정보연구, vol. 15, no. 4, pp. 125-145.
이제홍 2013, *"한국소비자의 FTA 발효국 제품에 관한 구매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vol. 38, no. 5, pp. 437-457; 한국어.
이제홍 & 이청호 2013, *"FTA 체결에 따른 수입제품의 소비자 후생척도에 관한
실태조사"*. 貿易 研究, vol. 9, no. 1, pp. 477-495.

- 이종원 & 변재웅 2008, "한-EU FTA 추진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18, no. 1, pp. 187-216; 한국어.
- 장근호(재정경제부관세국장) 2007, FTA 등 전면적 개방에 따른 향후
관세정책 대응방향, 200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정연준 2011, 한-EU FTA 타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 조미진 & 김태황 2012, "한, 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EU학연구, vol. 17, no. 1, pp. 1-28.
- 홍명수 2012, "한·미 FTA 체결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검토",
法學研究, vol. 23, no. 2, pp. 363-389.
- 2012, 와인선택속성이 와인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해외논문 및 자료>

- Hornig, Der-Chin (Taiwan) 2012, *Reshaping the EU's FTA Policy in a
Globalizing Economy: The Case of the EU-Korea FTA*.
Journal of World Trade 46, no. 2 (2012): 301-326. 영어
- FKCCI 2011, *EU-Korea FTA*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011,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주요참조인터넷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kr>(관세청)
- <http://www.fta.go.kr>(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korcham.net>(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fkcci.com>(프랑스상공회의소)
- <http://www.naver.com>(각종 전문사이트 검색을 위한 정보 웹사이트)
- <http://www.google.fr>(구글 프랑스 사이트)
- <http://eeas.europa.eu>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http://www.seoulywca.or.kr>(서울기독청년여성협회)
- <http://www.ftc.go.kr>(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http://www.kca.go.kr>(한국소비자보호원)
- <http://www.dbpia.co.kr>(학술논문검색사이트)
- <http://www.riss.kr>(학술연구전문사이트)
- <http://dalis.donga.ac.kr/lib>(동아대학교 도서관)
- <http://www.kbs.co.kr/KBS> 9시뉴스, 2014.03.11. 일 방송)

ABSTRACT

April, 2014 is the tenth year from the signing in FTA(Free Trade Agreement, April, 1th. 2004) between Chile and South KOREA. FTA agreement has brought literal elimination of tariffs and more cost-effective procedures on international trade.

FTA as a whole brings faster and visible commercial stream on trade than the traditional WTO system.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istence of mutilpe number of FTAs, we may expect huge increase in trade volume and that will eventually lead a better economy of Korea.

As of now, 49countries made FTA with Korea after the recent Korea-Canada FTA.

We need to first calculate practical benefit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companies doing business within FTA frame. However, we should be aware of Korean consumers's practical gain and loss through elimination of customs in the past 10 years.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out how much any importing products prices have been deducted. Also it needs to be examined distributors's margin and loss. Changed prices of some products through the Korea-EU FTA wil draw attention to government and companies. Therefore systemic approach to real economy is critical to further manage with already signed 10 FTAs as well as prospective FTSA in the future.

Key words: FTA, Kore-EU FTA, Tariff Elimination, Import Price, Consumer Price.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박미용

국문초록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기업도 출산율저하, 고령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로 고임금사회로 진입하였고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투자 및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베트남 근로자들과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1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한국기업의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현지화와 문화적응에 있어 한국식관리방식과 현지화 전략의 미숙함을 들 수 있다.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이고 군대적인 한국식관리방식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베트남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한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아류 오리엔탈리즘에 따른 저급한 인식이 결국은 노사분규 및 기업의 경영실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동반자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선제적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기본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이중 언어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등용한다면 대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및 산업의 역군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A Study on the Adaptation to culture
and the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Vietnam**

<Abstract>

As globalization advances,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has undergone many changes. Korea moved in the high wage society due to the change of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low fertility, graying, high level education. And many corporations are looking Southeast Asia for cheap workforce. Vietnam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in Korea's investment and exchange. Also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from Vietnam is reaching 115,000.

Although our relationship is closer, Korea's corporations are the highest frequency of the labor dispute in Vietnam. This brought into disrepute. There are two major causes, Korean style of management and skilllessness of localization strategy. Korean style of management, such as authoritarianism and paternalism, created ongoing conflict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Also, they don't understand Vietnam's culture fully even regard it as lower level because they have a lowbrow awareness according to imitation of orientalism. In the end, it caused labor dispute and managerial failure in Vietnam.

Therefore, Korea corporations heading abroad need to change recognition for collaboration among equals. Above all, attitude to understand and respect the culture of Vietnam is a prerequisite. Also, the bilingual education for internal multicultural children from Vietnam can be one way to solve communication's fundamental language problem. Thereby, they can open the offices to the talented for future societies. Multicultural children will play as a pillar of the cultural exchange and industry. Thus, the future will be bright.

I. 서론

세계가 자본 및 노동, 정보가 교류되고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출산을 저하, 고령화,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서비스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수요의 확대 등 우리사회는 고임금사회로 진입되었고,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용되어 있는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111만 4천명이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35만7천명), 베트남(8만2천명), 중국(5만6천명)순으로 나타났다.¹⁾

베트남은 1991년 우리나라와 수교하였으며 1986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 2002년부터 거의 매년 7~8%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여 왔으며, 1995년에는 아세안에 가입하였고, 2001년에는 베트남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WTO에 가입을 계기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 제15위 교역대상국(수출 8위, 수입 23위)이자, 제6위 투자대상국(누계기준 144억불)이며, 최근 5년간(2006-2011) 전체 누적투자의 76%인 110억불의 대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졌다²⁾. 또한 한-베 FTA 협상개시를 2012.8.6.에 공식선언하며 양국 통상장관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³⁾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의 비율은 18.3%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도 2011년 말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4만 5천여 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11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베 관계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윤충로(2013)는 한국은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해 반공연대 강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이 때 형성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우월감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아류오리엔탈리즘으로 연결되었고⁵⁾ 이러한 저급한 우월의식은 현재 한-베 간의 물질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경·김용민(2010)은 한국은 1995~2008년까지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노사분규 발생률에서 한국은 29.6%로 2위를 차지했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인 경영자가 베트남인 노동자에게 가지는 문화적 우월감이었⁶⁾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가지는 문화사고가 기업 경영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통계청,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결과'-본 자료는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2.8.6.)

3)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에 관한 공동언론 발표문(2012.8.6.베트남하노이)

4) 2012년 다문화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출신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32.1%, 중국21.2%, 베트남18.3%, 일본5.8%, 미국2.9% 등임.

5)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 1945년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역사학회, 사회와역사 제 97집(2013년), 한국사회학회

6) 『베트남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이재경·김용민(2010), 한국노동연구원

II.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통상현황

1992년 한·베트남 수교 당시 약5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2011년 9월 현재 136억 달러를 넘어서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의 교역파트너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고 2008년 상반기에는 77% 증가세를 기록하며 베트남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영국마저 제치고 한국의 10대 주요 수출국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II-1> 연도별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동향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3,927.5 (14.4)	5,760.1 (46.7)	7,804.8 (35.5)	7,149.5 (-8.4)	9,652.1 (35.0)	9,740.1 (44.0)
수입	924.9 (33.3)	1,391.2 (50.5)	2,037.1 (46.4)	2,370.0 (16.3)	3,330.8 (40.5)	3,910.9 (78.4)
무역수지	3,002.6	4,368.5	5,767.7	4,779.5	6,321.3	5,829.2

자료 : KOTIS

베트남 투자계획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총 2,294건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며 뒤를 이어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및 유인정책을 실시하여왔고 그 결과 1991년 이후로 한국기업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규모를 매년 증가시켜 2009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 건수 면에서는 3번째, 투자금액으로는 4번째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선포하면서 베트남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왔는데 이는 1975년 통일 이후 전개되던 사회주의 정책의 전면 종단을 뜻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이머이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베트남에 외국기업들이 설립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들이 등장함으로써 베트남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주의 사회인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체의 노동 분류에 대해서는 문화차이라는 문제에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외국인 기업체의 베트남에 대한 언어무지와 문화 오해가 가장 기본적인 노동 분류의 원인이고, 언어무지와 문화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 분류가 전체 노동문제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베트남인 노동 전문 공무원의 판단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외국에서 기업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언어습득과 문화이해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업 활동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문제 이전의 문제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 또는 외국 투자 기업들에서는 문화차이의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기업 이윤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소위 선진국의 해외진출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Ⅲ. 베트남진출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현지화

“현지화(localization)”란 해외에 투자·진출한 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현지사회에 정착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 진출하여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연구 분야에서 학자들은 현지화(localization)와 관련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회사의 현지화는 본사로부터의 조정과 통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지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자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현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⁷⁾ 이러한 노력들은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현지 특유의 지식은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워 기업의 역량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문화적, 심리적 거리감과 차이가 클수록 더욱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⁸⁾

이에 비해 현지화 요구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는 국가 간 수요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져오고, 이는 상품구매는 물론 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설정에도 다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무역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국가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지화하고 철저한 인사이더화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의 문화적응⁹⁾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지화는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2002)은 한국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한국식 관리방식’이라고 하였다.¹⁰⁾

한국식 관리방식이란 권위주의적이고 군대 적이며 밀어붙이기식의 강압적인 관리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한 한국의 기업은 그동안 위협조의 폭언과 체벌이 일상적이며, 관리직과 생산직간의 차이가 단순히 직업적인 차이가 아닌 일종의 신분적인 차이로까지 확대 되었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식 관리방식의 특성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제조업체들의 노동통제방식은 권위주의적이며 가족주의적이고 연고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화 현황 및 문제점은 베트남 노동부 자료에 베트남의 파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빈도가 높는데, 2003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은 평균 100건 이상, 전체파업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계 기업들도 임금인상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11년 1월~3월 베트남에서는 크고 작은 파업이 220건 보고되었다. 봉재 및 신발, 단순조립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기업의 파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전체파업의 약 68%를 차지한다.¹¹⁾

7) 안종석·백권호 “중국진출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경영리뷰』, 제10권 2호 (2006), pp.213-243

8) 박재석·이동기, “해외자회사의 경영진 현지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경영연구』 제20권 1호 (2009), pp. 81-103.

9)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ion, in A.M. Padilla(Eds.),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Findings, Voulder, Co: Westvies Press: 1-26

10)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 사회학회 연구논문 제36집 3호 pp. 47~77

11) 비나한인 VietNam News.(2011.5.8.보도자료)- 베트남, 파업과 임금상승으로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 우려.- 잦은 파업발생으로 노동자 임금 인상 압박,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임금인상 시 고비용 저효율 구조 불가피 -

이러한 파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임금, 임금체불, 명절보너스, 연장근무, 휴식 무, 공 휴일근무, 노동계약 미체결, 부당해고, 노조 미결성, 작업장 환경, 점심제공, 보험 미가입, 일 자리 불안정, 운전자 몸수색, 노동규약 위반, 연장근무 수당, 유해환경 수당, 외국인 관리자의 학대와 멸시 등 노동 분규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다.

베트남의 국영기업이나 사기업의 노동 분규에 연유된 내용들이 외국기업의 그것들과 크게 달리 나타나는 것은 작업장에서 외국인 관리자들의 대 노동자 멸시 또는 학대 등이다. 이는 한국식관리방식에 기인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규정이나 법은 한 나라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배경으로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 나라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은 모 국의 문화와 상대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해야하고 양자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구 비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베트남 뉴스전문 매체인 '비나한인'(VINAHANIN CO.,LTD)에 소개된 일부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¹²⁾

Q :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실패한 기업들이 있는지와 있으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1 : ..(생략)..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가장 큰 원인은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고의 문제인데도 대다수(실패의 경우) 이를 간과하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출 초기, 현지문화, 관습, 언어 미습득 등 안이한 접근에 의한 소통부재로 서로의 문화(조직문화, 관습)을 이해 못해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크고 작은 충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중략)..

베트남 진출의 성공요인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은 많겠지만, 그 중 첫째는 문화관습에 따른 현지 조직문화 이해와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개인) 그리고 존중일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글을 보더라도 베트남 현지에서의 문화와 관습의 이해는 곧 기업의 존속과 이윤추 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언어습득이 기본적으로 해결 이 되어야 함이 중요한 사안인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세계가 자본 및 노동, 정보가 교류되고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이후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더불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베트남 출신국적의 노동자도 중국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이렇듯 경제적 뿐만아니라 월남파병과 같은 역사적사건으로 우리나라

12) 비나한인 인터넷뉴스 (2011.5.6.) -<http://www.vinahanin.com>-지식in

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그들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노사분규로 이어지고 이것이 베트남 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기업의 노사분쟁에서 한국기업이 최다를 차지한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식 관리방식이라는 권위적이며 군대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인 태도에 현지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그들의 느긋하고 수동적인 근무태도에 대해 한국기업들은 서로에 대한 관습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며, 투자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더불어 베트남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능력 있는 현지인을 고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사전달이 되지 못해 일어나는 기업의 갈등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기업이 상생하며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실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언한다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어의 어려움'을 지목하고 있다. 언어는 곧 문화이해이므로 언어를 소통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 16만 8천여 명의¹³⁾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중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어머니 나라 방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언어교육을 함으로써 한국과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체득하여 그들만의 강점을 강화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문제나 학교적응, 취업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국제화, 다문화의 시대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하므로 이들이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및 산업의 역군으로써 교량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13) 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시행계획;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267,727명, 자녀 168,583명이며 결혼이민자만큼 한국인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70만 명에 달함(2012,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행부) 2020년 결혼이민자 약35만 명, 자녀 30만 명, 다문화가족 100만 명 예상

참고문헌

1. 이진규(1995), 동남아시아진출 한국기업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 신영수(1998), 기업현지화와 근로자들의 문화성향,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3. 전경수(1998), 베트남 내 한국계 기업의 노동문제에 관한 문화적 이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4. 한도현(1998), 베트남 내 한국기업의 문화적응에 대한 조사 연구 개황,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5.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6. 김지연(2011), 베트남통상 및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현지화 요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1호 p206~222
 7. 느구엔 티 남 티위(2011)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경영대학원
 8. 현대경제연구원(2012), 현안과 과제: 2013년 주목해야할 신흥시장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9. 윤충로(2013),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이후를 중심으로-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97집 (2013년) p.251~284.
 10. 안종석·백권호(2006),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제경영리뷰 제10권 pp.213-243
 11. 박재석·이동기(2009), '해외자회사의 경영진 현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국제경영연구 제20권1호, pp. 81-103.
 12. 송정남(2010),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이문화 갈등 요인과 유형, 그리고 해결방안 -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pp.251-284.
 13. 따오 티쭝하(2010),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LU JINGYA(2012), 문화적응적 시각에서 본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 삼성과 LG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통계청(2012),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결과
한국수출입은행(2008,2009) 자료
외교통상부(2012) 보도자료
베트남하노이(2012), 한베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에 관한 공동언론 발표문
여성가족부(2012), 2012년 다문화실태조사, 2013다문화가족시행계획
이재경·김용민(2010), '베트남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 한국노동연구원
조선일보(2007.11.1.) 보도자료
비나한인 VietNam News,(2011,5,8.보도자료)-
비나한인 인터넷뉴스 (2011.5.6.)

국제거래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지위와 적용 가능성

최한나 / 최원석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국제거래상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과 한계 |
| II. 국제거래의 확대와 문화보호의 현실 | 1. 국제거래상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 |
| 1. 국제거래상 문화의 특수성 | 2. 문화다양성협약 적용상의 한계점 |
| 2. 국제거래보호의 원칙으로서 문화적 예외 조항 | V. 문화다양성협약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 |
| III. 문화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지위 | 1. 협약의 적용범위와 방법에 관한 기준 마련 |
| 1. 문화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 2. 체결국의 의무 조항 신설 |
| 2. 국제거래규범과의 관계 | 3.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정책 시행 |
| | VI. 결 론 |

국문초록

문화가 곧 국가브랜드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문화가 상품적 가치를 가질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하지만 문화는 보통의 상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정하여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협약'이다. 최고법규가 없는 국제법 체계에서 각각의 국제협정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이들 중 하나인 '문화다양성협약'은 강제력 없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규범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주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관계조항의 해석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협약의 실효적인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국제적 합의로 협약의 적용범위와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두 번째, 체결국의 의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권리에 따른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부는 협약이 인정한 국가주권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문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개별국의 문화교류 및 교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화를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과 엄격한 규제조치 등 문화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문화다양성협약'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본 연구가 '문화다양성협약'의 실효성을 재조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국제거래, 문화교역, 문화다양성협약, 문화산업, 문화정책

I. 서론

오랜 교역의 역사 속에 ‘문화’라는 콘텐츠가 상품성을 지닌 거래의 대상이 되면서 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패권주의는 더욱 심화되었고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 했던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여 문화적 예외라는 무역협정의 원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화적 예외는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에 불과하여 강대국의 제지에 맞서지 못하면서 결국 문화산업보호에 실패하고 말았다.¹⁾ 이후 무역에서의 문화보호뿐만 아니라 인류적 가치 보호의 차원에서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다양성협약’이다. 그러나 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거래관계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또한 다른 국제거래규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필요한 상태이다.

II. 국제거래의 확대와 문화보호의 현실

1. 국제거래상 문화의 특수성

‘문화상품’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는 일반적 법원칙보다 각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경이 되는 국가의 ‘문화’라는 것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상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념을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는 범위로 확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²⁾ 더욱이 국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는 각 국의 사회구성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역량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단순히 상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문화는 창출에서부터 소비까지 한 나라와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전통과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국제거래보호의 원칙으로서 문화적 예외 조항

문화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전 국제거래보호의 원칙으로서 문화적 예외 조항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문화 분야에서의 규제에 관한 첨예한 논의가 다투어졌던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있었다. 이를 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권력을 이용하여 ‘문화교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장악하려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MAI가 국가의 문화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MAI에 문화적 예외 조항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보호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제안하였던 ‘문화적 예외’는 수동적 차원에 머물러 자유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를 취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강대국의 제지에 맞서지

1) 최영재, “자유무역협정(FTA)과 문화협약”, 진보평론, 제23호, 2005, pp.32-35.

2) 권현호,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11, pp.45-46

못하였고 결국 문화적 예외는 몇몇 선진국들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며 문화산업보호에 실패하였다.³⁾ 이렇듯 문화적 예외조항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제재를 위해 협상으로 만든 것이 문화다양성협약이었다. 문화적 예외의 원칙이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Ⅲ. 문화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지위

1. 문화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 대두되었던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1998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났다. 이를 계기로 무역거래에 있어서 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문화다양성연대(CCD)·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등의 비정부기구가 결성되었고 문화수호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문화다양성협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으로서 문화다양성협약은 세계 각국이 서로의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며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제거래규범과의 관계

GATT 제3조 제10항⁴⁾이 영화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4조⁵⁾에서 영화 필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GATT 제20조는 GATT상의 주요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f)호에서 각 체약국이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인 국가 보물(national treasure)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GATS 협정이다. GATT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고 인정되어 자유무역의 예외가 인정되었었는데, 이것이 WTO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문화상품은 GATS 협정에서 적용되게 되었다. 즉, 문화산업과 관련한 국제통상의 문제는 GAT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WTO 각 회원국은 무역거래를 할 때 어느 분야를 개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방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과 조건하에 개방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문화상품은 재화

3) 최영재, 앞의 글, pp.32-35.

4) Article III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

10.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establishing or maintaining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s relating to exposed cinematograph films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IV.

5) Article IV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

If any contracting party establishes or maintains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s relating to exposed cinematograph films, such regulations shall take the form of screen quotas which shall conform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WTO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상품에 관련된 조치가 재화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함에 따른 논란은 개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⁶⁾

IV.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과 한계

1. 국제거래상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

국제법상 조약이나 협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규범들 간의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조항’을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 제20조는 모순되는 규정을 1항과 2항에 규율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체약 당사국은 기존 통상법적 협정에 종속되지 않는 상호 지원적 관계를 형성하므로 문화다양성협약을 고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2항은 기존 통상법적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천명하여 절대적인 기존법원칙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2항을 원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GATT/WTO 협정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지금처럼 관계조항이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원칙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정부의 외교사안과 정책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다양성협약 적용의 한계점

문화다양성협약은 적용상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문화다양성협약은 협약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가진다. 즉, 문화다양성협약 그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며 이에 반하는 국제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당사국이 동의가 있었다면 그 거래는 유효한 것이 된다. 둘째, 당사국의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으로 각 국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책 범위를 알려주지 않는다.⁷⁾ 협약 제5조⁸⁾는 국가에 문화주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부의 문화정책조치들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있어 과도한 폐쇄적 문화보호도 가능하게 되어 보호무역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비판의 근거가 된다. 셋째, 제20조 ‘관계조항’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어떤 조항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협약 적용 유무가 달라지므로 강대국으로부터 문화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해야 실제 국제거래관계에

6) 김기영, 앞의 글, pp.67-68

7) 서헌제, 앞의 글,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연구, 제15집 제2호, 2005

8) 제5조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반규칙

1.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및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문화조치를 채택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있어서 문화다양성협약이 더욱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V. 문화다양성협약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

1. 협약의 적용범위와 방법에 관한 기준 마련

문화다양성협약이 다루고 있는 “문화” 영역은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다. 그렇지만 문화다양성협약의 체결 목적으로 미루어보아 문화다양성협약 상 “문화” 개념을 추론하면 결국 문화란 특정 그룹 및 사회가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 표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축적하여 온 일체의 유무형적 상징물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⁹⁾ 그리고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범위는 이러한 당사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문화의 해석은 당사국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화’ 개념을 축소하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분류를 통하여 해석에 있어서의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또한 관련규정의 해석에 제한이나 조건을 두어 통일성을 마련하여 협약 적용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체결국의 의무 조항 신설

문화다양성협약은 체결국이 협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약의 목적에 관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회원국이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이러한 국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문화다양성 협약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여타의 국제 협약에 좌우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다양성 협약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제거래에서 적극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면 체결국이 가지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협약이 문화다양성의 표현과 증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 권리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정책 시행

문화다양성협약은 체결국의 문화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채택한 문화정책과 조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문화 주권을 인정하고, 문화 약소국들이 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문화정책과 조치를 취

9) 이재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 2008, p.3-4

할 수 있게 된 체결국은 자국의 외교능력을 고려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 조치의 합법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자유통상원칙에 반하는 보호무역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협약의 문화보호의 목적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우선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대상이 되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체결국의 협의를 통해서 문화보호를 위한 각국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권리만 존재하는 협약은 사실상 국제관계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규범이긴 하나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협약의 이행은 결국 체결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협약 비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은 자국의 문화보호 및 개도국의 문화 융성을 돕기 위한 목적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결국은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양성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문화다양성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 거래 및 문화산업 육성의 관점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협약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면 국외적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문화가 융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최근 들어 문화를 융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가 가지는 힘은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이다. 대외적인 문화콘텐츠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광로처럼 문화를 녹여서 융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그들이 문화를 수호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도 앞으로의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이 세계 사회 속에서 문화의 수호자이자 문화 융성의 디딤돌로써 활발하게 미칠 영향이 기대되는 바이다.

<Abstract>

The Status and Applicability of Unesco's Cultural Diversity Agreemen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The culture is nation brand in the global era. So the power of the culture is out of all knowledge. The Culture can either be seen for its financial value or its sentimental value. And when the culture have the commercial value, the economic impact is huge. But the culture have a different characteristic to ordinary product. S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was adopted in by the Unesco. But when the culture was international transaction target, the problem came up. Because countries are producer and exporter of culture like the both sides of the coin.

There is international agreement within international law system as equal status. Therefore,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is just a proclamatory and exhortative norms. Also the scope of national sovereignty is unclear and this agreement leave room for interpretation about relation clause. So, this study propose several options for effective application. The first, it is important to set clear criteria for method and scope of application of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sultation. The second, this agreement need to lay down the mandatory clauses. The third, the government must do aggressive cultural policy with the national sovereignty.

In future,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 will emphasize in world community of nations. Besides, the cultural exchange, the cultural trade, the cooperation for creating a further culture and the strict regulation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will continue to find middle ground related to culture.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will take a central role. And I hope that this study help to review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Key words : International Transaction, Cultural Trad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Cultural Industry, Cultural Policy

<참고문헌>

- 권현호 (2011),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국제경제법연구』제9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35-68.
- 김기영 (2012), “WTO규정과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제12권 제3호, 61-80.
- 나낙균 (2006), “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FTA)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3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36-86.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박경신 (2008), “문화다양성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정립을 위하여-관계정립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과사회』34권, 법과사회이론학회, 395-426.
- 박덕영 (2005), “‘문화다양성 협약’ 초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 타조약과의 관계와 분쟁해결조항을 중심으로”, 국회세미나자료집, 15-26.
- 박병도·김병준 (2009), “문화다양성과 국제법”, 『일감법학』16권, 377-413.
- 서헌제 (2006), “문화다양성협약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연구』제15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129-147.
- 서헌제 (2010), “한미 FTA와 문화법제”, 『법학논문집』제34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07-137.
- 윤지원 (2008),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제20권 제19호 통권449호, 정보통신정책학회, 34-38.
- 이재민 (2008),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지위”, 『법학논총』25권 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9-67.
- 이주형 (2013), “문화정책상 규제와 국제투자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제27집 제2호, 31-54.
- 정갑영 (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한승 (2008),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409-428.
- 최영재 (2005), “자유무역협정(FTA)과 문화협약”, 『진보평론』제23호, 24-37.

The effective way to achie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a focus on establishment of China-Japan-Korean Free Trade Zone-

진옥음 / 이점순

Abstract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phere in Northeast Asia,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economic recovery of Russia consolidate the regional status of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economy of Japan begins to recover after a long period of long stagnation, Korea researches new economic development direction, and other ideas to establish 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push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get more stable economic growth, which also contribute a lot to raise the regional status of Northeast Asia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owever, the course of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is rather backward comparing with the regional economy in the world, especially the EU and North America Free Trade Zone.

With the conceptions above, I wrote the thesis themed by the ideas how to expedit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appropriate ways that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Key-words: FTA. Free Trade Zone. EU. Regional economic Intergartion.

I . Introduction

Since the 1990s,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become two major features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and have more and more profoundly affected the global economy.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civilizational history, it was expected that Asia, especially Northeast Asia countries¹⁾ would be the region which achieves most dynamic developments all over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Moreover, as a part of possible ways to implement this scenario, it will be possibly necessary that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also try to enter into an agreement on regional integration equivalent to European Union (EU) in the future.

Thre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3 countries of Northeast Asia have decided to actively promot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s with one another.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phere in Northeast Asia,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economic recovery of Russia consolidate the regional status of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economy of Japan begins to recover after a long period of long stagnation, Korea researches new economic development direction, and other ideas to establish 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push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get more stable economic growth, which also contribute a lot to raise the regional status of Northeast Asia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owever, the course of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is rather backward comparing with the regional economy in the world, especially the EU and North America Free Trade Zone.

With the conceptions above, I wrote the thesis themed by the ideas how to expedit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appropriate ways that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the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1) There are different geographical definitions of Northeast Asia. The broadest definition would include China, Japan, North and South Korea, Mongolia, Hong Kong, Taiwan and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In this paper, we will concentrate on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economies i.e.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I. Chapter Two

It is necessary objectively to achiev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interior demand of the local regional economy development, also the necessary demand of intense economic regional integration competition in the world, where the expansion of trading and investment scale, establishment of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emergence and prosperity of IT electric information industry lay an objective base and the objective conditions to promote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re formed.

Since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conomy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the developed countries, dips into recession, where the consumption demand keeps decreasing and trade protection measures prevail. In view of the increasing uncertain factors of global economy, it will only enhance the overall immunizing power by the internal cooperation by establishing a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o weaken risk and crisis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o enhance mutual trust. Althoug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for basic social system and ideology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re is still the common character for the basic system, IE: the market economy system. Whichever it is China, Japan or Korea, the market restriction and value law could not be surpassed, this is the maximum common character among the three countries. Furthermore the common character will surpass the difference in social system and ideology and form the system base to establish the CJK FTZ.

For the three biggest econom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are the members of WTO, APEC and "10+3"; the triple frame provides economic cooperation platform for all countries, but also the negotiation mechanism for top management of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the "10+3"²⁾ mechanism is preferred for a special concern.

2)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Asian currency crisis have created a strong impetu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and have provided Asian countries with a common interest, which has led to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agreement (May 2000) on bilateral swaps and discussions of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monetary union among the ASEAN+3 as a long-run objective. More recently, at the informal ASEAN+3 Finance

Since the year of 2002, the annual meeting between heads of China, Japan and Korea under the “10+3” frame has become a fixed mechanism, which has profound effect on eliminating differences and frictions, enhancing politics and security trust, as well as the strategic goal to establish free trade zon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held in Tokyo on 13 November 2002. Korea made a proposal to discuss regional bond market development under the ASEAN+3. Further to the initiation, Japan presented a comprehensive approach to foster bond markets in Asia,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t an ASEAN+3 informal session held in Chinag Mai on December 2002.

III. Chapter Three

The difficulties to establish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re not the insufficient driving force of economic integration, but the obstructions from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pending issues of disputes on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on the territorial seas, attitudes toward the invasion history, Korea nuclear issue, strategic conflict and other international politic issues. Furthermore, the economic integration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not realize equal distribution of benefits³⁾.

Korea shows active attitude toward the foundation of CJK FTZ, but the key problem lies between China and Japan. As China and Japan has improved and heated up politic relation recently, China and Japan shall pay more attention to engage in establishing bilateral free trade relation by taking advantage of system frame, which will be good to launch negotiation for foundation of free trade zone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expedite the FTZ formation process. In 2002, the annual meeting of heads of China, Japan and Korea under the “10+3” frame became a fixed mechanism, and th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were active to make top meeting and dialogue to make up difference, establish mutual trust and reach consensus. In Oct., 2006, the representatives of China, Japan and Korea signed a joint statement at “the 5th China-Japan-Korea Business Forum” to show it is an important choice complying with the common benefit on economy among three countries by establishing CJK FTZ as early as possible and launching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

3) Northeast Asia is now at a crossroads. One road leads to the removal of political impediment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ventual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egion's growth potential. The other road is that of continuing political and economic disunity and growing disparity between the Asia-Pacific on the one hand and Europe and North America on the other, in terms of production, living standards, and global influence.

V. Conclusion

All in all, there are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mong all three countries and to establish free trade zone. The formation of China-Japan-Korea Free Trade Zone will not only promote the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 but also improve the overall level and strength of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China-Japan-Korea Free Trade Zone will be beneficial to enhance competitiveness with European Community, America-Canada- Mexico Economic Circle and ASEAN economic sphere, improv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nhance economic strength of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Meanwhile, the foundation of China-Japan-Korea Free Trade Zone will become a new growth point of the global economy and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whole global economy to develop.

In the future development, the key focus will be centralized on the opening-up strength of coastal areas,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traffic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cooperation, foundation of international transport channel across the Northeast Asia Economic Zon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ir-port logistic channel, construction of cross-border economic zones and formation of multifunctional economic zones by packing of investment, trade, export processing and international logistics.

Additionally,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hould enhance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field and promote biological construction of multinational national reserves and wetlands and other significant areas. For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industrial cooperation park zone,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have vast cooperation space.

Reference

- 趙汀陽 (2005), 『天下體系』世界制度哲學導論.
- 梁峰 (2012), 『东北亚区域经济发展与合作』中国财经出版社.
- 閻學通、徐進 (2009), 『王霸天下思想及啟迪』世界知识出版社.
- 谷口誠 (2010), 『東亞西亞共同體』岩波書店, 日本.
- 李立、李荣镐 (2007), 『东北亚合作模式与发展路径研究』经济科学出版社.
- 赵传君 (2006), 『东北亚三大关系研究: 经贸. 政治. 安全』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方浩范 (2011), 『儒学思想与东北亚“文化共同体”』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宋群 (2004), “東亞經濟合作的新發展及我國的對策研究”, 『經濟研究參考』, 北京.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Peter Robson,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Routledge), 1998
- Lyou, Byung-Woon (2004),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 Andrew MacIntyre (2004), “Politico-Strategic Dimensions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ANU

SEMINAR

전체사회:강준하 교수(홍익대,학회 연구이사)

1세션 [제1주제]

FTA체제하의 국가와 기업의 위기관리전략

-한미 FTA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학춘 (동아대)

토론자 : 박언경 (경희대,학회총무이사)

한·미 FTA 체제하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관리전략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 학 춘

Tel. 010 2318 9855

I. 문제의 제기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과 일본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다수의 국가와 FTA 체결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도 극동지방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등 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이 과연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막연히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경우 잘못 대비하게 되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작은 나라의 경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과연 국가와 기업 및 개인적면 면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국가 및 기업의 리스크 분석이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게 되면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특히 법률서비스분야의 전문가가 적은 국가는 FTA 체결로 인하여 국제수지와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비극의 시나리오를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한국정부는 스스로의 국제협상전문가의 태부족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협상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FTA협정을 서두른 결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한·미 FTA 체결에 관련되어 국가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II. 래칫조항(ratchet)

1. 개념

이 조항은 '래칫'(ratchet)이란 톱니바퀴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방향으로 돌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래칫 조항은 한 국가가 협정 상대국에 교역조건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못 박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FTA 협정문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FTA 전체에 다 적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현재유보와 미래유보조항이 있다. 현재유보는 지금의 공공규제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더 완화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후에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성 강화규제를 할 수 없다. 미래유보는 공공성규제의 강화 및 약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나아가 현재유보가 된 부분이라도 스스로 공공정책의 규제를 풀었다면 래치에 걸쳐 다시 공공성을 강화할 수는 없다. 미래유보는 미래의 공공규제 강화까지 래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정부 스스로가 민영화 등 공공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이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협정상 수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협정당사국의 이해당사자는 투자자 국가제소제도(ICSID)에 의하여 제소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2. 래치조항에 의한 국가의 리스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보된 항목 47개 분야,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동산, 자동차 임대, 통관서비스, 고등교육, 방송서비스, 전력, 가스 스크린 쿼터 등은 현재유보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현재의 규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문제를 이유로 공공성 강화조치를 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분야를 민영화 등 우리정부 자체가 규제강화를 풀고 난 이후에 다시 공공성 강화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ICSID에 의하여 제소대상이 된다. 참고적으로 현재유보대상으로 스크린 쿼터의 경우 스크린당 73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를 국내사정에 의하여 72일로 단축했다가 73일로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다.

미래유보의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 분야, 외국인 토지 분야, 취약집단 서비스, 국가소유 국자전자/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방송서비스 철도 운송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원자력 에너지, 전력에너지, 가스에너지,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육상여객(택시, 정기여객), 육상화물, 내륙주문 및 우주운송, 쌀의 저장 및 보관, 우정사업, 방송서비스,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등급판정,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서비스, 어업, 보건의료서비스, 영화서비스 등인데, 이러한 산업분야 중에서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철도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후에 이를 공공성 강화정책에 의하여 다시 국가관리 체제로 환원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ICSID에 의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형 투자자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국가정책에 의하여 이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게 되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국가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유보권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즉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자의 임용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

III. 법률시장과 의료시장개방 리스크

1. 법률시장 개방 단계

가. 제1단계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의 제1단계는 한·미 FTA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아래 미국 로펌이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즉 외국법 자문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 자문회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¹⁾ 제1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핵심은 미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나. 제2단계 법률시장 서비스 개방

제2단계 개방내역은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로부터 2년 이내에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아래 외국법 자문사무소로 하여금 우리나라 로펌과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고용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²⁾

다. 제3단계 법률시장 서비스 개방

이는 한·미 FTA 발표일(2012년 3월 15일)로부터 5년 이내(2017년 3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국의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의 법무회사와 합자투자기업(joint venture firm)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법률시장 개방에 따르는 로펌 및 국가리스크

세계법률서비스 시장 중 최대의 시장이 미국이고, 이를 배경으로 미국은 세계최고의 경쟁력과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로펌이 대단히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양 국가는 합의하였으나 이에 따른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법률시장, 의료시장, 금융시장, 교육시장 등 서비스산업분야는 지극히 국제경쟁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3단계의 법률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한국대학의 로스쿨 시스템으로서 미국로스쿨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으며 따라서 2017년 3월 5일부터 국내외 대형 및 소형 법무법인은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둘째, 특히 현재 로스쿨제도가 과거의 사법고시 시험 과목만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국가별, 산업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양성될 수가 없다. 더구나 한국정부가 총 49개 이상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향후 FTA 국제상사분야의 분쟁은 점진적으로 폭증할 것이며,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변호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로스쿨 교육시스템으로서는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2017년도는 한국의 변호사에게는 재앙의 서곡이 될 수 있다.

IV.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1) 한·미 FTA 협정문, p. 575

2) 한·미 FTA 협정문, 외교통상부, P. 575

1. 의료시장 개방관련 협정서 주요내용

가. 혁신에의 접근 (제 5.2호)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처방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비용부담액 설정에 관련한 절차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은 ①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reimbursement) 처방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절차·규칙, 기준 및 지침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하도록 보장한다. ②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정성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제품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급여신청을 허용한다. 3)

나. 투명성 (제 5.3조)

①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②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 규제협력(제 5.6호)

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제9.8호)에 합치되게 당사국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그리고 복제 의약품의 시판허가에 대한 협정을 교섭하자는 요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 영역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한다.

② 양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가 위원회와 제9.8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그러한 요청 수락의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의 설치(제 5.7호)

① 양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의 적절한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각 당사국의 보건 및 통상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양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매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3) 미국·호주 FTA에는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 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호주 정부로 하여금 혁신적 의약품에 대하여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어서 호주정부는 환자임상실험결과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는 경우에 혁신적 의약품을 한정할 수 있다.

2.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가 및 기업리스크

가) 협정문 제5.2조에 의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적절히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미-호주 FTA 협정문에 의하면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 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호주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직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의약품 가치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⁴⁾

나) 협정문 제 5.3은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에서 미국의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모든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의 이해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협정문 제 5.7조에 의하여 양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 한·미 FTA의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에서 모든 규정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적용된다.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부담은 의약품 못지않게 크다. 그 이유는 검사 및 진단비용이 환자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CT와 MRI만 하더라도 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다.

V.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절차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1. 개념: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⁵⁾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청구인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분쟁당사자

i) 인적대상은 투자자(investor)로서 어느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 자 시도하거나, 투자⁶⁾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

4) 최강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료분야의 대응행동과 성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 학위, 2013, p. 16

5)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가당국과 적용대상 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 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 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 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상 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I)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ii) 발전 또는 배정, 용수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iii)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6) 투자(investment)는 투자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의 특징을 지닌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닌 투자자를 의미한다(협정문 제11.28조).

ii) 피소대상자(respondent)는 국가이다. 즉 ISD의 청구대상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국가(중앙정부)를 대상으로 ISD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iii) 중재청구요건은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협정문 제11.16.제1항)

2. 협정상 의무위반 (협정문 제11.3조)

가. 내국민 대우로서 외국인투자자를 투자유치국 국민보다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나. 최혜국대우로서 외국인투자자를 제3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다. 대우의 최소기준(협정문 제11.5조).

각 당사국은 공정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상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라. 수용 및 보상 (협정문 제11.6조)

수용의 종류에는 직접수용⁷⁾과 간접수용이 있다. 수용의 요건은 ① 공공목적을 위하여 ② 비차별적 방식으로 ③ 신속하고(prompt) 적절하며(adequate) 효과적인 보상(effective compensation)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항) 수용여부의 판단은 I)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행위가 투자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iii) 목적과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등이 기초가 된다.⁸⁾

것이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있는 형태는 ① 기업 ②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③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④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⑤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⑥ 지적재산권 ⑦ 면허, 인가, 허가과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⑧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재산을 의미한다. (협정문 제11.28조)

7)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은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formal transfer of title), 명백한 몰수(outright seizure)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① 개념: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부속서 11-나) 한-미 FTA는 간접수용의 범위가 더욱 제한되도록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당한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예시에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포함시켰다.

② 간접수용의 판단법리: 부속서에 의하면 간접수용의 법리는 투자에 관련된 모든 사안별(case by case), 사실에 기초한 조사(fact based inquiry)에 의하여 결정한다. i)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ii)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닐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분 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인 가능성이 더욱 낮다), iii)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 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마. 보상 (compensation, 협정서 제11. 6조)

① 한·미 협정문 제11. 6조 제1항에 언급된 보상은 i)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ii)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정가격과 동등해야 한다. iii) 수용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해야한다. iv)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한다.(제2항)

3. ISD의 국가 리스크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ISD,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에서 국가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첫째, 피소대상자가 국가이므로 우리정부가 투자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투자당사자로서 투자협정상의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투자자의 투자손실 및 손해액 전액과 이자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 협정문에 의하면 국가는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모든 투자정보와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협정문 제11.16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은 i) 피청구국이 투자보장 관련 의무,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 ii)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툼이 있는 분야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과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ISD 관련 전문변호사가 거의 전무하며 따라서 ISD 중재사건의 경우 한국정부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ISD 규정은 독일법상 행정소송을 없애고 정부 영미법상 민사소송화 하는 의미가 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최대 자산 보유 기관이기 때문에 거액배상을 노리는 소송의 주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

셋째, FTA 체결이후 각 국가별, 산업분야별로 통상분쟁의 폭증이 예상된다. 실제적으로 통상분쟁의 조정은 재판과정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의하여 분쟁이 조정되거나 또는 중재된다. 이를 위하여 FTA 통상분쟁발생에 대비한 국가별 또는 산업별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는 국제통상분쟁사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ISD조항이다. 이에 대비하여 FTA 국제통상분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인바 이 분야는 미국이 세계최고이다. 한국정부는 로스쿨이 2008년도에 도입하였으나 교육체제가 국내법 중심이어서 국제경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간접수용 원칙의 예외: 정부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또는 불균형적인 때와 같이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non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정당한 공공복지목록(lists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는 열거적이 아니다(exhaustive).

쟁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VI. 결론

과연 FTA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인가?

정부는 일관성 있게 대외개방경제를 위하여 최대한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FTA의 체결이 많이 될수록 한국기업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은 관계인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기업구성원의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 혁신성에 근거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FTA 만 체결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면 왜 다른 국가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FTA의 체결국가가 많을수록 국가의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 협상력의 차이로 인한 불리한 협상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중 간 FTA 체결에 있어서 농업분야의 개방을 유예하면 다른 산업분야를 양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산업분야의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며,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지원의 증대로 인하여 적자재정 폭이 증대된다. 나아가 농업분야를 개방하게 되면 역시 농업분야에 한 지원금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재정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적자폭을 FTA로 인하여 이득은 보는 산업의 초과이윤으로 보전해야 하나, 이익을 보는 산업의 초과이윤을 환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적자폭만 크게 되어 향후 국가재정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강대국과의 FTA 체결은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

SEMINAR

전체사회:강준하 교수(홍익대,학회 연구이사)

1세션 [제2주제]

WTO협정과 FTA의 분쟁해결 관할권 경합

발표자 : 이길원 (충남대)

토론자 : 윤성욱 (동아대)

WTO협정과 FTA의 분쟁해결 관할권 경합



이길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론: 문제 제기

- **다양한 국제분쟁해결제도의 출현으로 국제법의 파편화 야기**
 - FTA에서 WTO협정 상의 의무를 단순히 재진술(restate)하는 경우, WTO협정과 FTA 상 분쟁해결의 관할권 경합 가능성 제기
 - ex. Article 2.2.1 of the KORUS FTA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ing its interpre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its interpretive notes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mutatis mutandis*."
- **FTA 하, 분쟁해결의 관할권 행사 유형**
 - ① FTA 분쟁해결절차의 배타적 관할권
 - ② FTA 분쟁해결절차의 선호적 관할권
 - ③ WTO/FTA '법정지선택(choice of forum)조항'에 따른 관할권

서론: 문제 제기(cont'd)

- **Issue 1.**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관할권 경합 해소 가능성
- **Issue 2.** WTO DSB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 **Issue 3.** WTO DSB의 FTA 패널 판정의 고려 가능성
- **Issue 4.** FTA 하 '법정지선택조항' 존중 방안
- **Issue 5.**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의 효율성

Issue 1.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관할권 경합 해소 가능성

- 신의칙(*good faith*) · 금반언(*estoppel*)의 원칙
-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
- 불편의법정(*forum non conveniens*)의 원칙
- 기 타
 -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
 - 구제 고갈의 원칙(*exhaustion of remedies*)
 - 신법(*lex posterior*) · 특별법(*lex specialis*) 우선의 법리

신의칙 · 금반언의 원칙(*Argentina - Poultry Case*)

아르헨티나의 입장	브라질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OSUR 중재 회부 이후, WTO DSB의 연속적 회부는 '신의칙' 위반으로 'estopped'되어야 함 ▪ '금반언'의 성립 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 성명이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경우 ② 성명이 자발적, 무조건적이며, 검증 받은 경우 ③ 성명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신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OSUR 중재와 WTO 패널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쟁점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 단순히 MERCOSUR 중재에 회부하였다고 해서, 동일한 사안을 WTO DSB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신의칙 · 금반언의 원칙(cont'd)

WTO 패널의 입장

- '신의칙' 원칙 위반여부 판단 기준 (*Appellate Body in US - Byrd Amendment*)
 - ① WTO협정의 실제적 규정을 위반하여 하며,
 - ② "단순한 위반 그 이상(*more than mere violation*)"이어야 함
 - 브라질은 WTO DSB에 사안을 회부하는데 있어, WTO협정의 실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
- *EEC - Bananas I* 사건에서의 패널 결정 상기

"[E]stoppel can only result from the express, or in exceptional cases implied consent of the complaining parties"

 - 브라질이 MERCOSUR 하 '법정지선택조항'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WTO DSU상의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지 않음
-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모순적인 행동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종합적으로 패널은 브라질이 MERCOSUR 중재재판 이후, 동일한 사안을 WTO DSB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

- 동일한 당사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 WTO DSB에서 다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움
- **WTO협정 상의 의무위반과 FTA 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 '양 협정 상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 동일하지 않음
 - 판정이행의 확보 수단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구제제도 상 차이를 보임
- ❖ **Brazil - Retreated Tyres**
 - MERCOSUR 중재에서 다른 법적 쟁점은 단순히 "비차별"인 반면, WTO DSB에서 다른 쟁점은 '비차별에 대한 예외'도 포함

불편의법정(*forum non conveniens*)의 원칙

- WTO/FTA 분쟁해결절차 중 관할권 행사를 양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경합과 관련하여 동 원칙의 적용 어려움
 - 국제재판에서 ① 증거의 연원 접근에 대한 상대적 편리성, 또는 ②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 등 재판과 관련된 현실적 요소들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 않음
- 현실적으로 DSU 개정을 통하지 않고 동 원칙의 도입 어려움

기 타

-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
 - 법적 의무로서가 아닌 일종의 '우호적 경의의 표시'
 - 그러나 본질상 '예양'이란 '법원' 간의 예양이 아닌 '국가' 간의 예양 의미
 - 따라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경합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구제 고갈의 원칙(exhaustion of remedies)**
 - WTO 회원국들의 합의 필요
 -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신법(*lex posterior*) · 특별법(*lex specialis*) 우선의 법리**
 -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

Issue 2. WTO DSB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 **Mexico – Soft Drinks에서의 항소기구 입장**
 - WTO 패널과 항소기구는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패널은 "소송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안을 심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그러나 "관할권 행사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jurisdiction has been validly established)," 관할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인용하는 모든 WTO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DSU 제7.2조)
 - 패널이 유효하게 성립된 사안을 관할하지 않는 것은 제소국의 "WTO협정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추구하는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임 (DSU 제23조 & 제3.3조)
- **DSU 제23조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협정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강제적 관할권' 뿐만 아니라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Issue 3. WTO DSB의 FTA 패널 판정의 고려 가능성(*Argentina - Poultry Case*)

아르헨티나의 입장	패널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U 제3.2조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함을 인정한다”)에 따라, 분쟁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관련된 국제법을 고려하여(비엔나 협약 제 31조 3항 (c)), WTO협정을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WTO 패널은 이전 MERCOSUR 중재 판결에 구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U 제3.2조는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규범과 관련된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 (c)도 조약해석과 관련되어 있음 ▪ WTO협정이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interpret)”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적용(application)”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WTO 협정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전 MERCOSUR 중재 판결에 구속될 이유 없음

WTO DSB의 FTA 패널 판정의 고려 가능성(cont'd)

- **WTO 규범과 국제공법의 불가분성**
 - WTO 분쟁해결절차 상, FTA나 FTA 패널의 결정을 단순히 고려하는 것은 회원국의 WTO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혹은 축소시킨다고 볼 수 없음
- **DSU 제13조(정보요청권리)에 따른 외부 자문 요청**
 - 제13조 2항에 따라 모든 관련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FTA나 FTA 판정도 WTO 패널/항소기구의 사안 심리 중 활용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WTO DSB는 FTA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구속 받지 않으나, WTO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검토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음

Issue 4. FTA 하 '법정지선택조항' 존중 방안

- WTO DSB의 FTA 하 '법정지선택조항'의 존중 가능성
 - “Article 1 of the Protocol of Olivos provides that once a party decides to bring a case under either the MERCOSUR or WTO dispute settlement forums, that party may not bring a subsequent case regarding the same subject matter in the other forum. The Protocol of Olivos, however, does not change our assessment, *since that Protocol has not yet entered into force...*” (Panel, *Argentina – Poultry*, para. 7.38)(emphasis added)
- *Argentina - Poultry* 사건에서 패널은 *EEC – Bananas I* 사건에서의 패널 결정을 상기시키며, 제소국이 WTO DSB에 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명백히 혹은 예외적인 경우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WTO DSB가 관할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 분쟁해결절차 상, ‘협의(consultation)’단계에서 WTO DSB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Waiver 제시
 - WTO/FTA 공동 ‘협의’절차 진행 가능성
 - 제소국의 WTO DSU 제23조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표시

Issue 5.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의 효율성

- 제3자(역외국)의 권리 보호 가능성
 - 제3자로서의 분쟁 참여 기회 제공 (DSU 제4.11조 & 제10조)
 - WTO 패널의 병합 심리 가능성 (bargaining-power 향상)
- 투명성
 - WTO 회원국의 지속적인 판정이행 여부 감시
 - WTO website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투명한 관리
- 사법성
 - 항소심리의 제공에 따른 사법적 기능 강화
- 강제성
 - ‘역총의제(reverse-consensus)’에 따른 (준)자동적인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채택

결 론

- 일반적으로 WTO협정과 FTA의 분쟁해결 관할권 경합 시, WTO 분쟁해결에 따른 관할권 행사 불가피
- 다만 제소국이 DSU 제23조 상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waive)하는 경우, WTO DSB의 관할권 불행사 가능
- WTO DSB는 FTA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구속 받지 않으나, WTO협정 상의 권리·의무를 검토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 고려 가능
-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보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SEMINAR

전체사회:강준하 교수(홍익대,학회 연구이사)

2세션 [제3주제]

TPP 환경 분야 논의 동향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발표자: 류예리 (경산대,학회 국제이사)

토론자: 박지현 교수 (영산대,학회 홍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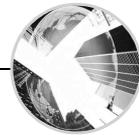
TPP 환경 분야 논의 동향: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2014.4.24

류에리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목차



- I 서론
- II TPP 수산보조금의 주요 내용
- III TPP 수산보조금 규정의 문제점
- IV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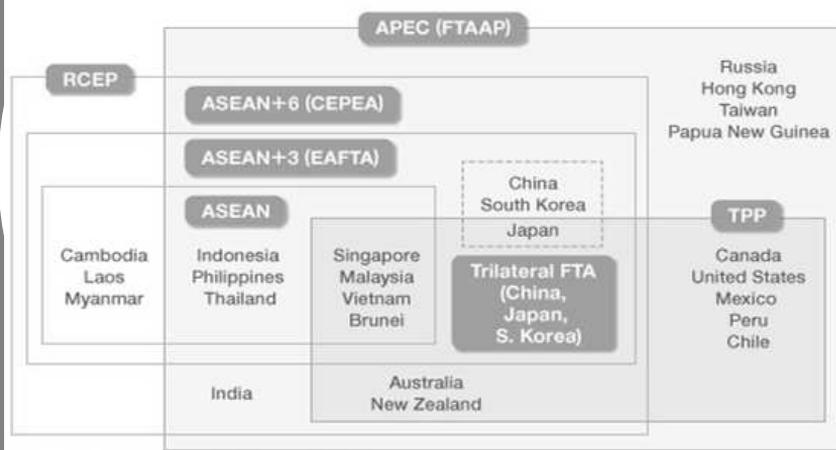
I. 서론



TPP 참여 국가



광역 FTA의 등장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입장 및 우려사항

- 정부는 TPP 교섭에 참가한다는 방침 수립(2013.11.29)
- TPP협상 참여 절차 「관심표명→예비양자협약→참여선언→공식양자협약→기존 참여국 승인」, 우리나라는 현재 예비양자협약 과정에 있음
- FFG(Fish Friends Group)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TPP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면세유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산보조금 정책에 대해 개선 압력으로 작용가능

II. TPP 수산보조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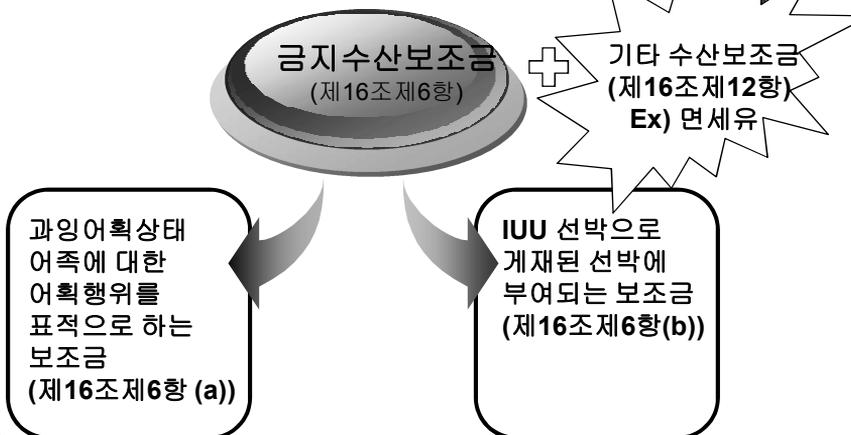
❖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도하 각료선언(2001.11)
 - FFG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vs 우리나라, 일본
 - 포괄적 금지방식 vs 개별적 금지방식
- 홍콩 각료선언(2005.12)
 - “과잉어획/과잉능력에 기여하는 특정 수산보조금 금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수산보조금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
- 의장 초안(2007.11.30)
 - 수산보조금 협정 초안 포함
 - 실질적으로 포괄적 금지방식에 가깝게 작성



❖ TPP 환경 분야 협정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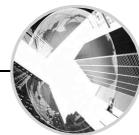
- TPP 환경 분야 협정문 초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해면 포획 어업 등 주요 환경 이슈를 비롯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역과 서비스, 조약체결 후 환경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 포함
-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해면 포획 어업(제16조)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
 - 금지수산보조금의 유형과 기타수산보조금의 통보 의무 포함





❖ 제16.6조 제1문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hat is designed to prevent overfishing and overcapacity and to promote the recovery of overfished stocks must include the control, reduction and eventual elimination of all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overfishing and overcap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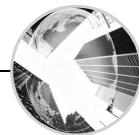
- 일반적 의무로서 어업관리제도의 시행을 요구
- 일반원칙으로 과잉어획 및 과잉생산능력을 방지하고 과잉어획된 어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잉어획 및 과잉생산능력을 유발하는 (contribute to) 모든 (any) 보조금을 통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임을 선언



❖ 제16.6조. 제2문

To that end, no Party shall grant or maintain any of the following subsidies(주석 12)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of the SCM Agreement that are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SCM Agreement:

- (a) subsidies that target the fishing(주석 13) of fish stocks that are in an overfished(주석 14) condition; and



- 모든 당사국(no party shall)은 SCM협정 제1.1항과 제2항의 의미 범위에 속하는 모든(any) 다음의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됨

(a)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의 어획을 표적으로 하는 보조금



❖ 주석 1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subsidy shall be attributable to the Party conferring it, regardless of the flag of the vessel involved or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to the fish involved.

❖ 주석 1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fishing” means searching for,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fish or any activity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attracting, locating, catching, taking or harvesting of f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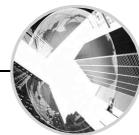


❖ 주석 14.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fish stock is overfished if the stock is at such a low level that mortality from fishing needs to be restricted to allow the stock to rebuild to a level that produces maximum sustainable yield or alternative reference points based on the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Fish stocks that are recognized by the relevant national jurisdictions o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s overfished shall also be considered overfish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의 어획을
표적으로 하는 보조금의 적용요건 및 범위

- SCM 협정 제1.1조상의 보조금일 것
- SCM 협정 제2조상의 특정 보조금일 것
-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어족에 대한 어획(fishing)을 표적으로(target) 지급하는 보조금일 것
- 어획 대상 어종이 과잉어획상태(in an overfished)에 있는 어족일 것



❖ 주요 쟁점

- 어획(fishing)?
- 목표로 하는(target)?
- 과잉어획상태(in an overfished)?

- 면세유 포함 여부
-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조금 포함 여부



❖ 이행기간

- TPP협정 발효 전 수립된 보조금이지만 제6항(a)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협정 발효일로부터 [x년] 내로 동 조항과 부합하도록 해야 함(제16조제7항)
- ✓ 즉 제16.6조(a)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수산물 보조금이 TPP협정 발효 이전에 이미 지급되고 있더라도, X년의 유예기간 내에 모두 철폐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



❖ 제16.8조 기타수산물보조금 채택 및 연장 자재의무

- 제6항(a), (b)에 따라 금지되는 보조금 x → but SCM 협정 제1.1조와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 과잉어획이나 과잉생산능력을 유발하는 보조금 →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 연장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할 노력의무(best efforts) 부과
- 기타수산물보조금의 신규도입, 연장, 또는 강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식량안보와 같은 사회적 그리고 개발적 우려사항을 고려
- 따라서 우리나라는 “면세유”와 같은 기타수산물보조금을 유지 또는 강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식량안보와 같은 사회적 우려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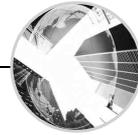
❖ 금지수산보조금 규범 검토

- 제16.9조는 과잉어획과 과잉생산능력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철폐할 목적으로 환경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제6항 금지수산보조금 규범을 검토할 것을 명령
- 즉 제6항 금지수산보조금 규범이 과잉어획이나 과잉생산능력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데 비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규범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수산보조금 통보 의무

- 각 당사국은 TPP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2년마다 SCM협정 제1.1조와 제2조상의 특정성을 충족하는 보조금으로서 어획 또는 어획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지급(**grant or maintain**)하는 보조금을 모든 다른 당사국에 통보할 것을 강제
- 수산보조금 통보의무에서 유의할 점은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획 관련 활동(**fishing related activities**)”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통보의 대상이라는 것임
- TPP초안은 “어획 관련 활동”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이하, 항구국조치협정)에서 발견됨



- 항구국조치협정은 제1조 용어의 정의에서 “어업관련활동”이란 “이전에 항구에서 하역된 적이 없는 어류의 양륙, 포장, 가공, 전재 또는 운송을 포함한 어업과 해상에서 인력, 연료, 장비 및 기타 물자 제공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아주 광의로 정의
- ✓ 어업행위 뿐만 아니라 항구에서 하역을 거치지 않은 어류의 양륙, 포장, 가공, 전재 또는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나아가 해상에서 인력, 연료, 장비 및 기타 물자 제공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활동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주의

❖ 수산보조금 통보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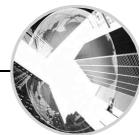


- TPP협정 발효 전 2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WTO SCM협정 제25.3조에서 요구되는 정보 외에 다음의 정보가 통보될 것을 요구(제16.11조)
 - a) 프로그램 명칭 b) 프로그램 책임기관 c) 보조금 표적 어종에 대한 어획 데이터 d) 보조금 표적 어족자원 현황 (예, 남획, 소실, 완전 남획, 회복, 저어획) e) 보조금 지급 어업에 참여하는 어선능력 f) 관련 어업에서 실시 중인 보존 및 관리 조치 g) 어종 별 총 수입량/수출량
- 제16.11조에 따라 다른 TPP 당사국에 통보되는 수산보조금 프로그램의 법적 지위, 효과 또는 법적 성격은 GATT 1994나 WTO 보조금규범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WTO 데이터 보고요건의 보완자료 역할을 함



❖ 연료보조금 정보 제공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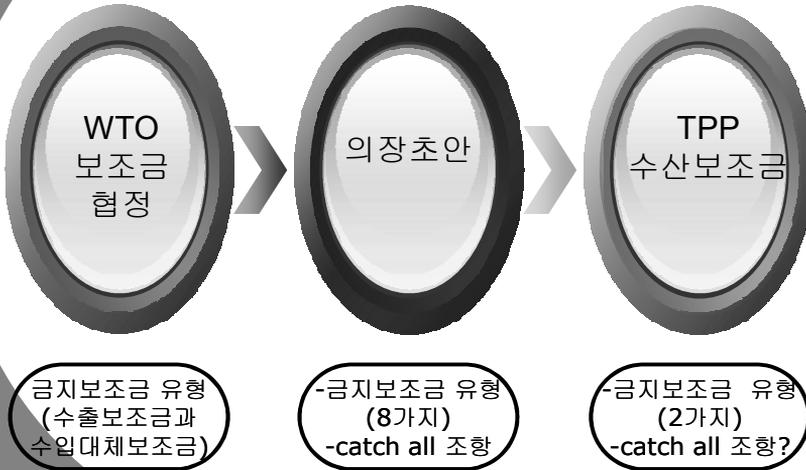
- TPP협정 당사국은 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기타 수산보조금 중 제6조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보조금, 특히 연료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제공
- 제16.12조에 따라 연료보조금은 제16.6조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
- 연료보조금은 제16.6조에 따른 금지수산보조금은 아니지만 기타 수산보조금에 해당되어 제16.8, 16.10-16.13조 적용을 받음
 - 향후 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 시 제6항과의 연계에 대해 확인 필요
- 즉 신규도입 및 연장 & 강화 자제 의무, 타방 당사국에 통보의무, 구체적인 수산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추가 정보 제공 의무 등의 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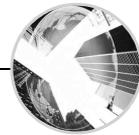
❖ 추가 정보 요청 및 대응 의무

통보사항과 관련 추가적인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그리고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 16.13조)

III. TPP 수산보조금 규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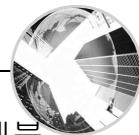
❖ 의장초안 제1.2조



In addition to the prohibitions list in paragraph 1, any subsid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1 the benefits of which are conferred on any fishing vessel or fishing activity affecting fish stocks are in an unequivocally overfished condition shall be prohibited.



- ❖ 금지수산보조금의 개념 및 범위의 모호성
- ❖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과의 괴리
- ❖ TPP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 TPP 분쟁해결절차가 협의단계 자체를 3단계로 세분
→ WTO의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 회피 → 해당 당사국이 가
급적이면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
임
- 제3국의 참여는 TPP 회원국 내에서의 미국, 뉴질랜드, 호
주 등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를 찬성하는 국가와 한국,
일본 등 반대하는 국가로 양분되어 있어 협의를 통한 해결
유리 의문
- TPP 분쟁해결절차는 의무를 위반한 대상국이 향후 조치
또는 계획을 위원회에 고지할 의무만 부여 → 대상국에게
관련 제도를 철폐 또는 보완에 대한 부담은 강제되지 x →
실효성 의문

IV. 결론 및 시사점



❖ 협상에 참여할 경우 vs 가입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의장초안에 대한 우리나라 제안서(2010)

분류	의장제안서	우리나라 제안서
금지보조금	① 선박 권·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면세유 등 운영비 ④ 항구 기반시설 등 ⑤ 소득 보전 ⑥ 가격 지지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① 선박 권·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④ ⑤ ⑥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조치가능보조금		③ 면세유 등 운영비 ④ 항구 기반시설 등 ⑤ 소득 보전 ⑥ 가격 지지
일반예외	◦ 감척 사업 지원 ◦ 친환경적 어구도입	◦ 감척 사업 지원 ◦ 친환경적 어구도입 ◦ 어업활동중단 조건 생계 보조금 ◦ 생계형 어업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감사합니다!

SEMINAR

전체사회:강준하 교수(홍익대,학회 연구이사)

2세션 [제4주제]

Investment Disput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FTA Era

-Investor-State Challenges in NAFTA Chapter 11

발표자: 김대중 (동아대,학회 홍보이사)

토론자: 오선영 교수 (숭실대,학회 국제이사)

*Investment Disputes and
Environmental Concerns in FTA Era
-Investor-State Challenges in NAFTA Chapter 1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BK21Plus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주최
공동 학술대회 2014. 4. 24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김대중 교수
daejungkim@dau.ac.kr

I. Introduction

- 1. The **characteriz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s a violation of investment treaties in FTA, BIT is a recent trend**
- 2. On January 7th, 2014 Wikileaks released the draft Environment Chapter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riticism is about the TPP (1)would lead to an expansion of U.S. liquefied natural gas(LNG) exports without any review, and it would facilitate significant new investment in fossil fuel ; (2)TPP investment chapters would give right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to corporations such as ExxonMobil, Dow Chemical, Chevron (3)TPP includes a chapter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at could limit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put in place new climate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 3. The Korea-US FTA Chapter 20 calls on to enforce environmental law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observ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 However, criticism is on (1)Limited coverage for sub-national measures, state and loc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exempt such as dealing specific source *e.g.* water; (2) Questions about enforcement ; (3) easy access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such as NAFTA Chapter 11

I. Introduction

- 4. Objective of the investment law does not make ethical decision, it focuses on mostly protecting investor so it could potentially weake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regime: Main investment law principles are Direct/Indirect Expropriat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 5.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ratified in 1994 is the first Free Trade Agreement to deal with comprehensive investment regime. In the early 1990s, **indirect expropriation** regarding environment, public sector (water etc.) to be the main concern of investors.
- 6. After that, a remarkable shift towards FET standard; In function, **FET standard is developed as the counterpart of the expropriation clause, in which the investor claims to have suffered harm.**

I. Introduction

- 7. **NAFTA Chapter 11 (investment chapter)** has drawn concerns such as (1) Overly protective investors and, as a result, inappropriately infringes on a state's ability to regulate investment; Others argues (2) positive influenc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y, for example, more transparent arbitration proceedings.
- 8. Representative NAFTA Chapter 11 investment case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matters are: ***Metalclad Corp. v. Mexico* (2000)-Landfill, Art 1105 FET and 1110 Expropriation; *SD Myers Inc. v. Canada* (2000)-Polychlorinated Biphenyl, 1102 National Treatment and 1105 Minimum Standard, 1110 Expropriation, *Methanex Corp. v. USA* (2005)-Methanol, 1102 National Treatment, 1110 Expropriation and more**
- 9. New Area of Environment NAFTA Chapter 11
- ***Glaims Gold Ltd. v. USA* (2009); First Minerals takings-1110 Expropriation**

I. Introduction

-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 *Mesa Power v. Canada* (2013); First Renewable Energy and Feed-in Tariff- 1102 NT, 1103 MFN,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106 for imposing prohibited “buy local” performance requirements
- *Vattenfall v. Germany* (2011); Germany’s decision to phase out nuclear energ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at will affect Climate Change, the investor relied on (although not FTA regime), Energy Charter Treaty (ECT),- Expropriation, FET, Umbrella Clause
- By categorizing NAFTA Chapter 11 representative cases plus New cases of more global environmental matter such as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This paper shows evolving FTA investment disputes (ALTHOUGH, no precedent cases are binding) and tries to show current investment law in FTA era has the potential to frustrate environmental protection (BECAUSE no precedents are binding!).
- It analyzes the way in which investor protection standards have been implemented in awards implicating environmental issues

II. Free Trade Agreement, ISD and Environment

1. Representative NAFTA Chapter 11 cases relating to Environment analyzed through investment law principles

(1) Regulatory Expropriation

- Cases: *Metalclad v Mexico* (2001), *S.D. Myers v. Canada* (2001), *Methanex Corp. v. USA* (2005)
- Terms: ‘indirect expropriation’, ‘measure tantamount to expropriation’, ‘constructive takings’ etc
- Traditionally, no classification on certain kinds of government action
- Often difficult to ascertain where the legitimate governmental regulatory action ends and expropriation has occurred
- (a) *Effects-Based Analysis: Metal Clad v. Mexico (2001)*
- Hazardous waste treatment site in Mexico owned by an American company, Metal Clad Corp.

Regulatory Expropriation

- An ecological decree was issued by San Luis Potosi, Metal Clad initiated ICSID arbitration and the Tribunal held: “*Mexico breached of NAFTA Art 1105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standard.*” “...*Tantamount to Expropriation*”, “...expropriation under NAFTA includes **not only open, deliberate and acknowledged takings of property**, but also covert or incidental interference with the use of property which has the **effect of depriving the owner**,.....of the use or reasonably to-be-expected economic benefit...”
- Metal Clad was awarded US \$16.7million, ICSID Tribunal stated that ‘**effect-based**’ determination, **not intention: may be too broad expropriation standard**
- Actually, Metal Clad is the only NAFTA investment-environmental expropriation case that **admits Government’s Expropriation itself.**

1. Representative NAFTA Chapter 11 cases relating to Environment and their implications

(2) National Treatment

- Terms: guarantees of national treatment within investment treaties accord foreig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host states accords’
- Determination of ‘**like circumstances**’ is a central component
- As such, host state’s attempt to differentiate through regulation or decision-making on these grounds so as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would be at risk.
- (a) **Effects and Justification: Pope & Talbot v. Canada(2001), SD Myers v. Canada(2000, 2001)**
- **Pope & Talbot**: US company contended low Canadian stumpage fees-licensing fees for access to timber constituted a subsidy and had threatened to impose countervailing duties on imports of Canadian softwood lumber.

National Treatment

- Pope & Talbot operated in British Columbia where exports fees and export restrictions applied. P&T argued that Canada violated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by treating investors in non-covered provinces differently from investors. **P&T specifically argued that it was in “like circumstances” to producers in other provinces that were not subject to quotas.**
- As with expropriation, the focus of NT will be on the **Effect** of the domestic measures on the investment rather than the need for any intent to discriminate against the foreign investor.
- As such, regulation of general application can breach NT if it affects a foreign investor to a greater degree than domestic investors.
- Although, the P & T tribunal used there’s ‘rational grounds’ that the host state action can be justified, the tribunal used it with significantly limited scope:

National Treatment

- **A reasonable nexus to rational government policies that (1) do not distinguish, on their faces or *de facto*, between foreign-owned and domestic companies, and (2) do not otherwise unduly undermine the investment liberalizing objectives of NAFTA**
- *S.D. Myers v Canada*: US company resells oils and equipment and destroys the PCBs, which had been used in the past as an electrical insulating material. PCBs degrade slowly and are highly toxic to humans and other animals. Canada prohibited the export of PCBs starting in 1990 to all countries other than US. Canada enacted this export ban in part due to its signing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Despite the US ban on imports and the Canadian policy to dispose of PCBs, S.D. Myers began pursuing contracts to obtain PCBs and export them to S.D. Myers facility in US.

National Treatment

- SD created Myers Canada to arrange contracts for SD. **Chem-Security, a competitor is located in Ontario and Quebec, a thousand miles away where most of Canada's PCB-contaminated equipment was stored.** (like-circumstance??)
- At this time SD lobbied US EPA to open border to imports PCB, b/c Canada had not yet closed the border to exports to US.
- In Oct 1995, US EPA allowed to import PCB from Canada from Nov 1995 to Dec 1997. On Nov 16, 1995 Canada issued an Interim order banning exports of PCB to US and maintained the ban from Nov 1995 to Feb 1997, 16months. In July 1997 US again closed its border to imports of PCB.
- Thus SD could only import PCB from Canada for a five-month periods v/w Feb and July 1997.
- **Although the US had maintained a PCB ban for much longer than Canada, the border was closed by US b/ in a US Court held allowance of the import was wrong**
- SD brought a Cap 11 claim and alleged that Canada did not provide NT b/c Chem-Security was allowed to operate its PCB facilities in Alberta.

National Treatment

- SD also alleged that Canada violated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Chap 11.
- The tribunal first concluded that Canadian ban on PCB exports favored Canadian nationals over non-nationals and that “the practical **effect** of the ban was that SD and its investment were prevented from carrying out the business, which was clear disadvantage in comparison to its Canadian competitors.
- The tribunal also considered, whether the measure, **on its face**, appears to have nationals over non-nationals
- It also concluded that, **despite Canada's signing of the Basel Convention, “there was no legitimate environmental reason for introducing the ban.”** : **What about the NAAEC (environmental agreement) and principles affirmed in NAFTA?**

National Treatment

- 1102 “like circumstances” is open to a wide variety of interpretations in the abstract: between SD and Chem is this really a ‘like circumstances?’
- Therefore, SD Myers tribunal also was not swayed by the justification argument, even though the regulation was enacted to implement Canada’s obligations under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 As such this rational grounds justification do not provide much assistance to host states seeking to enact new environmental regulation.

III. Regulatory Chilling Effect from the interplay between investment law and environmental concern

1. Regulatory Chill

- (1) Regulatory Chill theory i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fear of decreased investment flows, increased capital flows,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leads host governments to reduce or chill environmental standards.
- In the scenario, the use of the environment of the host state and the exposing of its citizens to regulation of a less stringent standard occurs so as to comply with foreign investor requirements.

2. Regulatory Chill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 (1) Potential threat of investor claims against the host state may preclude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otection.

III. Regulatory Chilling Effect from the interplay between investment law and environmental concern

- (2) In practice, the average costs of host states in defending investor claims are US \$1.5-2.5 million, although it can be significantly higher. Damages awards are known hundreds or millions of dollars.
- These are significant sums for developing states.
- Threat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has been used informally by investors lobbying against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
- (3) Case of Indonesia's forestry laws
- **Fact:** Enactment of new forestry laws prohibited open-cast mining in designated 'protection forests'. More than 150 mining companies were affected by the law and they alleged the prohibition violated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These companies threatened the government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that they would resolve the prohibition by the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The Indonesian government subsequently enacted regulation that exempted from the new forestry law the mining companies that already held license.

III. Regulatory Chilling Effect from the interplay between investment law and environmental concern

- **Analysis: (1)** The Indonesian government became awa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ollowing an award made against state-owned oil and gas company, Pertamina, in which it had been required to pay US \$261 million to compensate an American company in a dispute over the cancellation of a geothermal project. The home states of the mining company investors were also applying informal diplomatic pressure on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resolve the matter in a manner satisfactory to investors.
- (2)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d received advice that its exposure to foreign-owned mining companies would be US\$ 31 billion if the forestry laws remained effective against those companies-funds which the Indonesian government did not have available to spend on meeting successful arbitral awards.

IV. New Areas of Environmental Investment Dispute

1. Renewable Ener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eed-in Tariffs: Mesa-Power Group LLC. V. Canada

- **(1) Feed-in Tariffs**
- Through guaranteed electricity purchase prices (set higher than market rates), guaranteed grid access and a long-term contract.
- FiT has also 'local content' or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which make it mandatory for investor to source a certain percentage of materials from local suppliers in order to be 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policy.
- **(2) Mesa Power v. Canada(2011, Notice of Intention): Domestic Content Performance requirements imposed on investors**
- In Canada, Ontario's FiT program requires the 'Minimum Required Domestic Content Level' to be in the range of 25-50% for wind projects over 10kW and 50-60% for solar projects over 10kW.
- **Fact:** In July 2011, Mesa Power Group LLC, a US Company served Canada with a Notice of Intent to Submit to Arbitration under NAFTA Chapter 11 in connection with Ontario's Fit program.

1. Renewable Ener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eed-in Tariffs: Mesa-Power Group LLC. V. Canada

- **Issue:** Mesa Power alleged that the program breaches several obligations under NAFTA Art 1102 and 1103, for providing more favorable treatment, in like circumstances, to a domestic company and to a non-NAFTA party; 1105, for failing to accord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nd 1106, for imposing prohibited 'buy local' performance requirements.
- **First Type Dispute within Fit Renewable Energy:** Domestic content requirement in a **Fit for renewable energy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an investor challenge if the country's investment treaties contain an express prohibition on performance requirements, common in Canada, US and Japan** → clear inconsistencies between the climate-related policy and the investment treaties.
- **Second Type:** **Withdrawal or Modification of the FiTs. Spain, Italy and the Czech Republic are known to face challenge from investors**

1. Renewable Ener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eed-in Tariffs: Mesa-Power Group LLC. V. Canada

- Another challenge could be that withdrawal of price support or cuts in FiT amount to indirect expropriation. Tribunals are relying on 'Effects-based approach', such as in *Metal Clad*, could view a measure an indirect expropriation of it results in significant decline in the economic value.
- However, FiTs merely entitle the operators of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to fixed prices and that these may not be traded independently from the main electricity transaction. Investors will not likely lose control of their installations, any interference with such schemes may not be considered as expropriation.

2. Nuclear Power Plant Phase-Out (to mitigate Climate Change), Energy Charter Treaty and ISD: *Vattenfall v. Germany*

- **2. Nuclear Plant Phase out and Energy Charter Treaty: *Vattenfall AB v Germany***
- **(1) Fact:** In 2009, the Swedish company Vattenfall file first complaint agains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with ICSID, the first known investor-state arbitration challenge against Germany.
- Summer 2011 decision of the Germany to abandon the use of nuclear energy by the year 2022 and Germany amended Atomic Energy Act. The law foresees an immediate closure for the 17 nuclear power plants.
- Shortly after the Act passed into law, several nuclear power plant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file a suit. Swedish energy group Vattenfall brought an ISD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The amount is not known but Vattenfall's lost investments in late 2011 is 700 million Euro and Vattenfall estimated the damages from the nuclear phase-out is 1.18 billion Euro.

2. Nuclear Power Plant Phase-Out (to mitigate Climate Change), Energy Charter Treaty and ISD: *Vattenfall v. Germany*

- The dispute was settled in Spring 2011, with Germany agreeing to a watered down environment permit in favor of Vattenfall.
- **(2)** Possible Basis for Claims: Since all the documents in this arbitration are confidential, the basis for the claims in Vattenfall is not yet known.
- **(a) Expropriation: Article 13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provides that investment may not be nationalized or expropriated to “an action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 **(b)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rticle 10(1) of the ECT** requires that “each contracting party shall...encourage and create stable, equit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10(1) further: “to accord at all tim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However, most importantly, it is possible that the protective provisions in favor of foreign energy companies in the Energy Charter Treaty supercede the protections extended by German law, thus providing Vattenfall, not only with an additional legal remedy, but with additional rights over national German companies.

V. Conclusion

-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FTA era such as NAFTA and Energy Charter Treaty reflects conceptualizations of the environment in two ways
- **1. The non-engag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with the impact of investor activity on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of the host state; and**
- **2. The fram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s a violation of investment treaties.**
- Also,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s indirect expropriation, a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and a breach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tandard, that mechanism effectively operates as a tool with which to neutralize host state attempts to create spa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Approach to Methanex is encouraging: **Intent** rather than Effect
- We need to cautiously monitor continued problems in investment dispute relating to environment to create future more sustainable regime.

